

現行法制改善方案研究 (I)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立法的 對應

研究責任者 : 박영도 (책임연구원)

共同研究者 : 김준호 (체신부 통신기획과 사무관)

김태겸 (총무처 능률기획과장)

박문석 (문화부 저작권과장)

백만기 (상공부 정보진흥과장)

윤성승 (연구원)

이 철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피승환 (과학기술처 기계기좌)

한국법제연구원

*** 分野別 原稿執筆者 一覽 ***

- 박 영 도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제 1 부>
피 승 환 :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기술과 기계기좌 <제 2 부 제 1 장>
박 문 석 : 문화부 저작권과 과장 <제 2 부 제 2 장>
이 철 :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제 2 부 제 3 장>
백 만 기 :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 정보진흥과 사무관 <제 2 부 제 4 장>
김 준 호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기획과 사무관 <제 2 부 제 5 장>
김 태 겸 : 총무처 능률국 능률기획과 과장 <제 2 부 제 6 장>
윤 성 승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정리·편집>
-

(執筆順)

發 刊 辭

科學技術, 특히 정보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國民生活과 社會・經濟活動 전반에 걸쳐 情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社會를 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情報中心의 社會」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變化가 우리 社會에 어떠한 요소를 부여하며, 또한 어떠한 結果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豫測과 判斷을 행하는 것은 현재 情報化가 안정적인 終局段階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情報 및 通信技術의 기능과 적용은 현재 우리 社會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社會를 변모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것은 法의 세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情報化社會로의 전개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은 이제 우리의 法秩序의 가장 내부에 까지 침투하였으며, 우리의 法體系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情報化社會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法現象의 정확한 평가를 행하고, 그 중대한 意義를 간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法과 政策이 이러한 情報化社會로의 움직임에 對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영역에서 情報化社會가 야기하는 영향력을 진단하고 이를 그 고유의 基準에 따라 평가하고 조정함으로써 法秩序의 기본원리에 대한 維持・保護・伸張機能을 완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에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情報化社會가 우리의 현행 法體系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개별 法制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體系의으로 정리함과 아울러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대응한 行政府의 정책과제와 입법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檢討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情報化社會의 전개와 관련한 우리의 現行法制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理論的인 고찰방법과 實際的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기된 課題를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입장으로 부터
진지한 論議와 研究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關係者 뿐만 아니라 一般
人에게도 情報化社會에 대한 理解를 넓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
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共同研究者로서 연구에 참여하여 원고
를 집필해준 科學技術處·文化部·法務部·商工部·遞信部·總務處의 관
계공무원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研究課題의 수행에 많은 수고를 한
관계연구진에게도 勞苦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1992年 2月 29日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李世薰

目 次

第 1 部 情報化社會의 問題狀況과 法的 課題

第 1 章 情報化社會의 問題狀況	3
第 1 節 情報化社會의 意義와 特徵	3
I. 情報化社會의 概念	3
II. 情報化社會의 特徵	5
第 2 節 情報化社會의 評價	7
第 3 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情報化社會의 展開	9
I. 情報化社會의 展開를 위한 政策의 樹立	9
II. 關聯法律의 整備	11
第 2 章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法的 問題	15
第 1 節 情報化社會와 法	15
第 2 節 情報化社會의 法的 課題의 具體的 內容	16
I. 情報의 財産의 價値의 保護問題	16
1. 情報化社會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16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18
(1) 各國의 立法動向	18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19
II. 情報의 安全管理의 問題	24
1. 情報의 安全性確保의 意義와 必要性	24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25
(1) 各國의 立法動向	25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25

III. 情報商品의 去來와 關聯한 問題	29
1. 情報商品의 多樣化와 法的 問題點	29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32
(1) 各國의 立法動向	32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34
IV. 情報犯罪의 問題	35
1. 컴퓨터犯罪의 意義와 類型	35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39
(1) 各國의 立法動向	39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40
V. 情報公開의 問題	43
1. 情報公開의 意義와 必要性	43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46
(1) 各國의 立法動向	46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47
VI. 個人情報의 保護問題	53
1. 個人情報保護의 意義와 必要性	53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56
(1) 各國의 立法動向	56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58
VII. 기타의 問題	61
1. 情報의 勞動法에의 影響	61
2. 情報의 行政法에의 影響	64
3. 情報의 法學教育에의 影響	65
第3節 앞으로의 課題	66
I. 情報關聯 政策의 一元化	67
II. 情報化關聯法制의 體系化	68
III. 情報關聯法學의 學問體系의 樹立	71

第 2 部 情報化社會에 對備한 行政府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第 1 章 科學技術處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77
第 1 節 序 言	77
第 2 節 情報化展開에 따른 政府의 主要政策	78
第 3 節 科學技術處의 情報化關聯政策 推進現況	79
I. 情報產業 技術開發	79
II. 소프트웨어產業育成	82
III. 科學技術情報 流通體制構築	83
IV. 研究電算網構築	84
V. 知的財產權保護	86
VI. 專門人力 養成	87
VII. 컴퓨터마인드의 擴散	87
第 4 節 科學技術處의 情報化關聯政策에 따른 法的 課題	88
第 5 節 結 語	91
第 2 章 文化部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93
- DB產業의 問題와 法的 保護方案을 中心으로 -	
第 1 節 問題의 提起	93
第 2 節 DB概念의 理解	94
I. DB의 意義	94
II. DB의 構成形態	96
III. DB의 構造	96
IV. DB의 製作方法 및 節次	97
V. DB의 特性	98
第 3 節 DB의 法的 保護	98

I. DB의 法的 保護 必要性	98
II. DB保護의 法的 課題	99
III. DB保護의 國際的 趨勢와 判例	99
1. 國際的 趨勢	99
2. 判 例	100
IV. DB의 法的 保護對象과 그 法的 性格	101
1. 法的 保護對象	101
2. 保護對象의 法的 性格	102
V. DB의 法的 保護方法	103

第 3 章 法務部の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컴퓨터 犯罪을 中心으로 —

第 1 節 概 說	109
第 2 節 컴퓨터犯罪의 概念과 類型	110
I. 컴퓨터犯罪의 概念	110
II. 컴퓨터犯罪의 類型	112
第 3 節 컴퓨터犯罪에 대한 現行刑法의 對應	113
I. 데이터의 不正操作	113
1. 文書犯罪의 成否	114
2. 財産利得罪의 成否	115
3. 業務妨害罪의 成否	117
4. 損壞罪의 成否	117
II. 데이터의 不正入手	118
III. 컴퓨터의 無權限使用	119
IV. 컴퓨터의 破壞	120
第 4 節 各國 立法例의 比較法的 考察	121
I. 日 本	121
1. 立法經緯	121
2. 具體的 處罰規定	122

II. 獨逸	125
1. 立法經緯	125
2. 具體的 處罰規定	126
第5節 刑法 改正方向의 檢討	128
I. 文書犯罪의 修正	129
1. 改正試案의 內容	130
2. 檢 討	130
II. 컴퓨터詐欺罪의 新設	130
1. 改正必要性	130
2. 改正試案의 檢討	130
III. 컴퓨터業務妨害罪의 新設	131
1. 改正必要性	131
2. 改正試案의 檢討	132
IV. 데이터損壞罪의 新設	133
V. 컴퓨터스파이罪의 新設	133
VI. 컴퓨터不正使用罪의 新設	133
第4章 商工部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135
第1節 序 論	135
I. 最近 情報產業動向	135
II. 情報化社會와 政府의 役割	137
第2節 商工部의 情報化 關聯政策 推進現況	138
I. 하드웨어產業 育成對策 推進現況	138
II. 情報處理產業 育成對策 推進現況	139
III. 產業情報化政策 推進現況	141
第3節 商工部의 情報化 關聯政策에 따른 法的 課題	142
I. 情報化政策 關聯法規現況 및 問題點	142
1. 現 況	142
2. 問題點	145
II. 지금까지의 立法推進事例 및 檢討內容	146

1. 情報處理産業 關聯立法 推進事例	146
2. 기타 情報化關聯 立法推進事例	147
III. 立法推進課題 및 政策方向	151
第5章 遞信部の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153
第1節 序 言	153
第2節 情報社會와 情報通信	153
I. 情報社會의 特徵	153
1. 産業社會의 問題解決	153
2. 情報의 價値增大	154
II. 情報社會와 情報通信	154
第3節 情報社會와 遞信部の 役割	155
I. 韓國의 與件	155
II. 情報社會의 發展主體로서 情報通信	156
1. 産業의 生産性 增大 및 競爭力 強化	156
2. 새로운 社會間接資本으로서의 情報通信	156
3. 成長主役으로서의 情報通信	156
4. 國民生活의 質向上과 福祉增進	157
5. 社會經濟 衡平性 提高	157
III. 遞信部の 役割	157
第4節 遞信部の 情報化推進政策	158
I.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	158
1. 基本通信施設의 擴充	158
2. 通信網의 高度化	158
3. 綜合情報通信網(ISDN)의 構築	158
4. 事業의 競爭體制 確立	159
II. 國家社會 情報化의 促進	159
1. 國家基幹電算網의 完成	159
2. 産業 및 地域情報化의 擴充	161
3. 情報文化弘報 強化	162

III. 情報通信技術의 開發	163
1. 情報通信技術의 先進化	163
2. 情報通信 專門技術人力の 養成	164
3. 情報通信技術의 産業化	164
IV. 電波利用의 活性化	164
1. 電波利用 環境造成	164
2. 電波利用 技術의 高度化	165
3. 移動通信서비스 高度化 및 擴大	165
4. 通信·放送衛星의 確保	165
5. 放送技術의 高度化	166
V. 電波技術研究 活性化	167
第5節 遞信部の 情報化 關聯政策에 따른 法的 課題	167
I. 遞信部の 所管法律 現況	167
II. 立法的 對應方案	168
第6章 總務處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169
第1節 情報化社會에서의 行政의 役割	169
I. 情報化社會와 行政	169
II. 情報化社會에서의 總務處의 役割	171
第2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法的 對應方案	173
I. 法制定의 必要性	173
II. 法制定의 基本方向	174
III. 法案의 主要內容	174
第3節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法的 對應方案	176
I. 一般的 考察	176
1. 行政情報公開制度의 意義	176
2. 行政情報公開에 대한 社會的 要請	177
II. 情報公開制度의 現實	177
1. 立法實態	177
2. 制度運營實態	178

3. 判例의 動向	179
III. 行政情報公開을 위한 立法的 對應方案	179
1. 法的 對應方案의 檢討必要	179
2. 行政情報公開에 관한 外國의 立法現況	180
3. 情報公開法 制定을 위한 推進方向	181

表目次

[표- 1]	國家社會情報化計劃 分野別 重點推進課題	10
[표- 2]	現行 情報化關聯法制的 現況	12
[표- 3]	情報財産의 保護에 관한 各國의 立法現況	20
[표- 4]	情報財産의 保護에 관한 現行法制的 概要	23
[표- 5]	各國의 컴퓨터시스템 安全對策의 現況	26
[표- 6]	情報의 安全管理을 위한 現行法制	30
[표- 7]	情報商品의 去來와 관련한 爭點과 現行法制的 概要	36
[표- 8]	主要國家의 컴퓨터犯罪關聯法の 現況	41
[표- 9]	情報犯罪와 관련한 現行法制的 概要	44
[표-10]	主要國家의 情報公開法の 現況	48
[표-11]	情報公開와 관련한 現行法制的 概要	54
[표-12]	主要國家의 個人情報保護法の 現況	59
[표-13]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現行法制	63
[표-14]	部處別 情報關聯政策의 推進現況 概要	69
[표-15]	法制面에서 본 所管部處別 情報産業政策業務	70
[표-16]	個別施策面에서 본 所管部處의 情報産業政策業務	70
[표-17]	各 部處別로 마련한 情報化社會基本法(案)의 概要	72

第 1 部

情報化社會의 問題狀況과 法的 課題

第 1 章 情報化社會의 問題狀況

第 1 節 情報化社會의 意義와 特徵

I. 情報化社會의 概念

최근 科學技術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우리는 각종 社會的 課題를 극복 하면서 社會的 經濟的 發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情報 및 通信技術의 발달은 國民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고 있고, 經濟에 있어서도 서비스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는 등의 現象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狀況을 배경으로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情報가 지니는 가치가 物的 資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情報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體制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른바 「情報化時代」 내지 「情報化社會(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Informationsgesellschaft)」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情報通信技術과 電子技術의 발전으로 급속히 초래된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지칭하는 이러한 「情報化社會」가 무엇인가에 대한 概念定立은 현대사회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定義되고 있다.

우선 「情報化社會」를 기계공업에 의한 物質·에너지·서비스가 주류가 되는 工業化社會에서 情報가 유력한 資源으로 간주되어 情報가 중심이 되는 社會·經濟·政治體制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美國의 미래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은 社會를 소유의 축에 의해 封建主義, 資本主義, 社會主義의 각 유형으로 구분하고, 技術 내지 知識의 축에 의해 産業化以前의 社會, 産業化社會, 産業化以後의 社會로 구분한다. 또한 그는 社會를 社會構造, 政治形態, 文化의 세가지 부문으로 나누면서 産業化以後의 社會는 사회구조의 면에서 파악되며 그것은 ① 經濟部門에서는 財貨經濟로

부터 서비스 즉 情報中心의 經濟로의 변천 ② 職業分布面에서는 전문직 기술직 계층의 優位 ③ 中樞原則面에서는 기술혁신과 이론적 지식의 優位性 ④ 將來의 方向面에서는 기술관리와 기술평가의 支配 ⑤ 意志決定의 面에서는 새로운 지적 기술의 創造, 컴퓨터에 의한 意志決定의 다섯가지 要素로 구성된다고 한다. 결국 그는 産業化以後의 社會는 「物質生産을 주로 하는 社會로 부터 無形의 知識, 情報의 生産이 주체가 되는 社會, 즉 有形의 物質의 社會로 부터 無形의 情報, 知識의 社會」라고 파악하고 있다.¹⁾

또한 「情報化社會」의 관념을 人間의 생활모습이나 삶의 目標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人間이 고도의 知的 創造性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畫幅에 미래를 그리면서 個人的으로 價値있는 삶을 추구하는 社會」라고 파악하는 見解는 情報化社會를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價値·文化·政治의 면에서 그 특징을 폭넓게 提示하고 있다.²⁾ 그리고 「情報化社會」를 知識이나 情報의 부가가치가 특히 높아지면서 광범한 知識集約型産業이 등장하여, 종래의 重化學工業型産業으로 부터 教育, 研究開發, 매스미디어, 情報器具의 生産, 情報서비스등이 발달한 知識集約型産業으로 전환한다는 經濟社會로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³⁾

결국 「情報化社會」를 어떻게 파악하든 그것은 컴퓨터화된 社會이며, 정보가 商品化하고 商品이 情報化하는 사회이며, 物質·에너지보다 情報가 높은 附加價値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役割을 거두는 社會라는 점에 대해서는 共通點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情報化社會란 「情報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비약적으로 增大하고, 國民生活과 社會·經濟活動 전반에 걸쳐 情報의 生産·유통 및 이용이 결정적인 重要性을 지니게 되어 人間의 存在樣式과 價値體系에 근본적인 變化를 받고 있는 社會」라고 말할

1)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1973, pp. 117-118.; 서규환 옮김, 다니엘 벨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 디자인하우스 1991, 224面 以下.

2) Yoneji Masuda, 「The Information Society as Post-Industrialized Society」, Bethesda 1981, p. 3.

3) 田中靖政, 「情報化時代の政府」, ジュリスト 第707號(情報化時代の法律問題), 1980.1.1., 25面.

수 있다.⁴⁾

이와 같은 情報化社會가 등장하게 된 背景에는 情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게 되고 그것에 부응하여 既存의 情報媒體의 확대와 科學技術의 발달에 의하여 새로운 미디어·컴퓨터등이 점차 풍부한 情報를 공급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컴퓨터에 의한 情報의 蒐集·處理 및 蓄積을 중심으로 한 情報化로부터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要素를 전체적으로 結合시킴으로써 기존의 制度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要素를 부여하는 必然性을 구비하고 있다.

II. 情報化社會의 特徵

情報通信技術과 電子技術의 급속한 발전으로 빚어진 情報化社會는 종래의 物質生産的 産業社會의 체제에서 주요한 要素로 지적되어 온 物質의 生産·消費·分配으로 부터 無形의 情報知識·情報文化의 重要性이 부각되고 삶의 價値도 知識서비스로 전환하는등 情報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要素로 작용하는 「情報中心의 社會」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特徵을 낳고 있다.⁵⁾

우선 情報化社會의 特徵을 오로지 情報의 領域에 비증을 둔다면 情報量의 증대, 情報慾求의 다양성, 情報傳達媒體의 다양화, 情報나 知識의 陳腐化의 가속, 情報選擇의 확대, 活字媒體에 대한 電波媒體의 우월성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要素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情報量의 증대와 價値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情報量의 증대는 정보의 價値를 상대적으로 低下시키고 또한 選擇의 폭을 增大시키는

-
- 4) 遞信부에 의하면 「情報化社會란 情報自體가 어떤 物質이나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資源이 되며 情報價値의 生産을 중심으로 經濟 및 社會構造가 변화·발전되어가는 社會」라고 한다(遞信部, 通信部門計劃 1987-1991, 95面). 또한 科學技術處가 1989년에 마련한 바 있는 「情報化社會促進法(案)」에 의하면 「情報化社會라함은 情報와 知識이 사회적·경제적 교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社會의 능률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社會福祉가 이룩되고 社會構造가 知識集約化된 고도의 創造的 社會」라고 하고 있다(同 法案 제2조 3호).
 - 5) 社會 각 分野別로 情報化社會의 特徵을 전체적으로 概觀한 것으로는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編), 「情報化社會 - 挑戰과 對應 - », 서울大 出版部 1986 參照.

한편 大衆情報 보다는 個人情報를, 一般的인 정보보다는 專門인 정보가 요구되어 질적으로 충실한 情報를 증대시킨다.

다른 한편 성숙단계의 社會에 도달하고 있는 사회일수록 經濟的·社會的인 면에서 情報의 양적인 擴大뿐만 아니라 나아가 質적으로 충실한 情報를 요구하며, 그에 따라 價値觀의 多樣化現象이 초래된다. 이러한 價値觀의 多樣化는 소득수준의 上昇·여가시간의 增加·직업선택기회의 增加·교육수준의 向上·언론등의 自由化·사회변화속도의 加速化·정보공간의 擴大·사회적 緊張의 增大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價値觀의 多樣化現象은 정보의 영역에 質적으로 충실한 정보, 多様な 정보에 대한 選擇의 指向을 가져온다. 따라서 정보의 「質」과 「多樣性」의 선택지향은 情報量의 증대와 價値觀의 다양화라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情報의 선택지향의 變化는 情報에 의한 새로운 욕구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종래의 情報傳達媒體외에 새로운 類型의 전달매체의 출현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情報化社會의 진전은 無形의 情報生産을 주체로 하는 情報産業이 주도적인 역할을 거둔다. 즉 컴퓨터를 중심으로 그 기구를 生産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情報處理提供서비스산업·컴퓨터프로그램을 開發하는 산업등 각종 새로운 産業이 활발해지며, 나아가 情報教育産業·研究開發産業·情報傳達媒體産業등 종래의 産業群도 많은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情報化社會에 있어서는 情報·知識의 생산이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게 되므로 産業社會에서 생산규모의 정도가 효율성을 결정하던 「規模의 經濟」에서 情報化的 정도가 효율성의 척도가 되는 「情報化的 經濟」로의 轉換이 이루어지게 되면서⁶⁾ 그 영향이 政治·經濟·社會의 각부분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된다.

아울러 情報化社會의 進展은 情報技術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情報의 蒐集·加工·傳達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된다. 즉 컴퓨터와 通信網이 결합하면서 高度情報通信網(INS : Information Network System)등이 구

6) 李景台, 「情報化社會의 展望과 課題」, 國會報 特輯(情報化社會와 그 對應方案), 國會報 1991.1., 59面 以下.

축되어 國家間에 정보의 자유로운 流通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國際社會에서는 新國際情報秩序가 구축되면서 다양한 현상이 제기되고 있다.⁷⁾

第2節 情報化社會의 評價

情報 및 通信技術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은 이제 社會를 「情報化社會」로 변모시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나, 그러한 變化가 社會 및 人間들에게 어떠한 要素를 부여하며 또한 어떠한 結果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情報化社會의 擁護論者는 固定된 作業으로 부터의 해방, 人間의 失手可能性의 제거, 人間의 思考에 대한 補充的 機能, 生産效率性의 증대등을 주장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情報化社會의 形態는 자유로운 情報의 비약적 증대, 個人의 自由의 伸張과 民主的 參與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는 開放된 社會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① 情報量의 비약적 증대는 量의 증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質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 ② 情報化社會는 情報傳達과 情報處理技術을 발전시켜 간접적으로 시민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온다는 점 ③ 情報量의 증대와 傳達速度의 가속화는 과거의 情報에 의하여 얻은 知識內容의 사회적 유통 가치를 減退시키는 속도를 빨리하여 人間들은 생활상 필요한 各種知識을 보다 積極的인 態度로서 흡수하게 된다는 점 ④ 情報化社會의 代表民主主義의 형태는 技術을 통하여 直接民主主義로 확대될 수 있으며, 通信手段의 발달에 의하여 自由, 正義, 安定性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점⁸⁾ 등을 주장한다.

그에 반하여 批判論者는 技術의 발달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이 空洞化되

7) 상세한 것은 甘忠植, 「未來情報化社會와 國際情報秩序」, 前掲 「情報化社會 - 挑戰과 對應」, 230面 以下 및 朴興壽·金永錫(共編), 「뉴미디어와 情報社會」, 나남 1989, 273面 以下 參照.

8) Klaus Haefner, 「Grundrechtentfaltung durch Informationstechnik」, in : Alexander Roßnagal(Hrsg.), Freiheit im Griff. Informationsgesellschaft und Grundgesetz, Stuttgart 1989, S. 38f.

고 일상적인 作業은 사라지며, 개인의 行動 및 社會的 關係에 대한 國家的 統制가 강화되는 社會로서의 형태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⁹⁾ 즉, 情報化社會는 人間이 컴퓨터화된 社會(Human Computeresierten Gesellschaft)가 되면서 ① 情報가 機能的으로 되어 商品으로서의 情報가 人間들의 低俗意識을 조장하여 虛構性을 초래하고 非現實化된다는 점 ② 多情報化社會에서의 情報의 日常化 가운데 人間들은 理性的인 情報選擇能力을 상실하게 되어 習慣의이고 單純化되어 간다는 점 ③ 生産·管理·行政이라는 측면에서 情報處理技術의 高度化는 社會전체로 生産·처리되는 情報總量의 대부분을 管理化하게 되어, 社會와 人間들을 管理化할 우려가 있는 점 ④ 고도의 技術發展으로 情報의 操作 및 管理가 용이하게 되어 自由, 平等 및 國民의 權利保障이 보다 惡化될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지적하여 情報化社會가 가져다 줄 여러가지 肯定的인 要素는 별로 實效性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情報化社會가 社會 및 人間들에게 부여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의 相反된 評價는 앞으로 情報化社會가 전개되면 될 수록 더욱 철저하게 될 것이다. 결국 情報化社會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結果가 人間の 生活과 社會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情報技術이 어떠한 과문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檢討의 토대위에 情報化社會의 도래를 民主的 社會價値와 國家的 利益에 부합하도록 그 方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9) Peter Wedde, 「Verwaltungsautomation und Verfassungsrecht」, in : A.Roßnagal(Hrsg.), Ebd., S. 68.

10) Hans Peter Bull, 「Telekommunikative Traum-Demokratie?. Auswirkungen der Informationstechnik auf die Verfassungsmäßigeordnung」, in : A.Roßnagal(Hrsg.), Ebd., S.48f.

11) 安清市, 「情報化社會와 民主主義」, 前掲「情報化社會 - 挑戰과 對應 -」, 34面. 또한 情報化社會의 문제해결을 위한 對策으로서 ① 情報化社會에 관한 市民教育의 철저 ② 情報知識·情報技術의 체계적 개발 ③ 情報와 技術의 公正한 流通을 위한 政策的 對應策의 마련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金炳瑞, 「情報化社會의 問題와 對策」, 國會報 1991.1., 78面 參照.

第3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情報化社會의 展開

I. 情報化社會의 展開를 위한 政策의 樹立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情報技術이 급속히 진보하면서 情報가 社會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各種 尖端技術開發에 대한 소개와 함께 「情報化社會」라는 用語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1980年代 이후 우리 社會도 컴퓨터의 日常的 利用, 新技術에의 依存등을 통하여 情報化社會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¹²⁾ 나아가 情報產業의 年間賣出額 규모가 4조원선에 달하고, 지난해의 GNP점유율 7.4%, 올해 國內市場規模가 225억달러, 每年 10% 성장예상과 個人用컴퓨터보급대수 150만대등의 統計數値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情報化社會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情報化社會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1983年을 「情報產業의 해」로 정한 이래 같은 해 情報產業의 育成方案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1987年을 「情報通信의 해」로 정하면서 우리 社會는 情報化社會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國家社會의 情報化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情報化政策의 추진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汎國家的인 情報化政策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1989年에 이르러서였다. 즉 「우리나라가 21세기초에 先進國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際競爭力의 확보가 중요하며 情報化가 가져다주는 生産성과 品質의 향상, 新技術競爭力 제고, 市場對應能力의 강화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온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보다 본격적으

12) 우리나라에서의 情報化進展度에 관한 것은 李鳳浩, 「우리나라의 情報化進展度 分析」, 通信政策動向 1987年 봄號, 6面 以下 參照.

13) 「정밀진단 情報化社會 어디까지 왔나」, 서울新聞 1992年 1月1日字 參照. 또한 韓國開發研究院의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총괄보고서」에서도 2000년에 이르러 우리 社會의 모습을 電子產業의 발달과 컴퓨터의 普及으로 情報化社會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同 報告書, 1990, 55面.

로 國家社會의 電算化·自動化·情報化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電算網調整委員會는 「情報社會綜合對策 試案」을 마련하여 國民의 의견을 수렴하는등의 절차를 거쳐 1990年 9 月に 「國家社會情報化 5個年計劃」을 수립하였다. 동 對策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情報化·自動化·電算化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個分野 12個課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重點推進課題를 주관부처가 細部施行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토록하고 있다.¹⁴⁾

동 計劃에서 제시된 分野別 重點推進課題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국가사회정보화계획 분야별중점추진과제>

情報化促進 分野	국가기간전산망확충 지역정보화촉진 중소기업정보화지원 신정보통신서비스개발보급 단말기보급촉진
情報産業構造 高度化 分野	정보산업육성 정보기술연구개발강화 정보통신사업진흥
情報化基盤造成 分野	정보문화확산 정보인력양성 정보기술표준화 정보화에 대비한 법령정비

14) [國家社會情報化 5個年計劃]에 대한 概要說明은 鄭弘植, 「國家社會情報化 5個年計劃과 그 實踐方案」, 情報産業 1991.4., 2-4面 參照.

II. 關聯法律의 整備

한편 위와 같은 情報化社會의 전개를 立法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政府는 1986年 12月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電算網의 開發普及과 利用등을 촉진하여 情報化社會의 基盤을 조성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向上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同法 제1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情報化社會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나아가 1987年의 憲法改正에서 「國家는 科學技術의 혁신과 情報 및 人力의 개발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제127조 1항)라고 규정하여 國家의 情報開發을 최초로 明文化하였다. 한편 科學技術處는 情報化自體의 대상영역이 광범위하고, 이를 지원하는 關聯法律도 다양화·세분화되어 있어서 情報化의 올바른 受容과 社會的 基盤造成 그리고 情報化의 逆機能防止를 통한 올바른 情報化社會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89年 3月 「情報化社會促進法(案)」을 立法豫告한 바 있다.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라 現在 立法化되었거나 立法推進計劃에 있는 主要 法律名을 例示하면 [표-2]와 같다.

[표-2] <현행 정보화관련법제의 현황>

대상영역	법률(안)명	제정연월일	소관 부처	개요
정보화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	전산망보급확장과이 용촉진에관한법률	1986. 5. 15	체 신 부	제4조(정보화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전산망개발 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사회촉진법 (안)	1989. 3. 28	과학기술처	정보화사회의 기본방향 · 추진방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녔으 나, 폐기되었음.
	종합유선방송법	1991. 12. 31	공 보 처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 를 충족시키는 종합유선 방송의 도입·정착을 위 하여 제정
정 보 산 업·정 보 기 술 개 발 육성을 위한 법 제	과학기술진흥법	1967. 1. 16	과학기술처	제10조의 2(과학기술정 보의 진흥)
	기술개발촉진법	1972. 12. 28	과학기술처	제9조(정보기술의 지 원)
	소프트웨어개발촉진 법	1987. 12. 4	과학기술처	제10조(소프트웨어진흥 사업의 추진)
	공업발전법	1986. 1. 8	상 공 부	시행령 제2조(컴퓨터조 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육 성)
	중소기업진흥법	1982. 12. 31	상 공 부	제3조(산업구조의 고도 화를 위한 우선업종의 육성)
	무역업무자동화촉진 에관한법률	1991. 12. 31	상 공 부	제5조(주요무역업무에 대한 무역자동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산업기술정보원법	1991. 1. 14	상 공 부	제7조(정보의 수집·처 리·관리 및 보급에 관 한 표준화연구와 기술개 발)

대상영역	법률(안)명	제정연월일	소관 부처	개요
	전기통신기본법	1983. 12. 30	체 신 부	제5조(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촉진을 위한 전기통신기본계획 수립)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법률	1991. 12. 14	체 신 부	제1조(정보통신산업의 조기육성을 위한 기금설치)
	통신개발연구원법	1987. 11. 28	체 신 부	제1조(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통신정책의 수립)
	기타 관련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1988. 12. 31) 과학교육진흥법(1967. 3. 10) 산업교육진흥법(1963. 9. 19)
정보화사회역기능방지를 위한 법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86. 12. 31	과학기술처	제1조(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보호 및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도모)
	공공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91. 9. 20	총 무 처	현재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 및 수렴중에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1986. 12. 31	상 공 부	제2조의 2(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업정보의 보호)
	저작권법	1986. 12. 31	문 화 부	제2조의 12(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제6조(편집저작물의 보호)

第2章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法的 問題

第1節 情報化社會와 法

法秩序와 現實이 서로 상치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現實이 法秩序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法秩序가 現實에 적응하는 두가지의 可能性이 존재하게 된다. 法規定이 어떠한 規範力을 가지는가의 與否는 그 法規定을 실현시키는 條件에 의하여 좌우된다. 특히 科學技術의 발달은 法秩序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技術이 法秩序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可能性이 매우 많아지게 된다. 法規範은 現實을 변모시키든, 또는 現實에 적응하든간에 변화된 現實에 반응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法秩序의 妥當性은 法規定과 現實과의 乖離를 좁히는데 성공하느냐의 與否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法規範이 사회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보다 包括적으로 파악하면 할수록 社會가 변모할 경우에 法規範과 社會的 現實과의 乖離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며, 法規範은 그 적응에 대한 壓力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이 경우 關聯法規定을 改正하거나 또는 그 法規定의 意味를 變貌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반드시 價値適合的이거나 公正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法規範은 각영역에서의 技術變化가 야기하는 影響력을 診斷하고, 이를 그 고유의 基準에 따라서 評價하며, 나아가 그 결과를 調整함으로써 法秩序의 기본원리에 대한 維持·保護·伸張機能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¹⁾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의하여 情報 및 通信技術은 社會의 중추신경을 형

1) Alexander Roßnagal, 「Technik und Recht-Wer beeinflusst Wen」, in : Ders. (Hrsg.), aaO., S. 11.

성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情報 및 通信技術의 機能과 適用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社會를 변모시키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法의 世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法과 政策이 이러한 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法秩序는 情報化社會로의 개별적인 발전과정을 統制하든지 아니면 이에 適應하든지의 兩者擇一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情報化社會의 전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또한 社會가 情報 및 科學技術을 이용하고 그것에 依存하는 강도가 크면 클 수록 그 利用은 점점 확대되며, 利用을 위한 새로운 영역도 계속 擴張될 것이다. 따라서 情報化社會가 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現在 전개되고 있는 論議와 장래 일어날 수 있는 豫想되는 事態를 최근 주목되고 있는 分野를 중심으로 例示的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問題領域은 대단히 限定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第 2 節 情報化社會의 法的 課題의 具體的 內容

I. 情報의 財産的 價値의 保護問題

1. 情報化社會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현재의 情報化社會에서는 그 情報의 處理技術이 생산성의 향상, 사회의

2) 情報化社會의 法的 課題를 예시하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면 ①情報量の 巨大化에 따른 문제 ②情報流通의 不均衡에 따른 문제 ③情報流通과 人權侵害의 문제 ④情報의 財産的 價値의 평가문제 ⑤國家의 情報政策의 문제등을 지적하는 見解(伊藤正己, 「情報化社會と法」, ジュリスト 第 707號, 1980.1., 13面 以下)와 ①情報過多에 대한 대응문제 ②情報隔差에 대한 대응문제 ③情報集中에 대한 대응문제 ④情報流通 및 處理에 수반한 人權문제 ⑤情報財産의 보호문제 ⑥情報미디어利用 不均衡에 대한 대응문제 ⑦情報미디어集中에 대한 대응문제 ⑧情報化政策立案에 대한 대응문제등을 지적하는 견해(堀部政男, 「ニューメディアと法」, 高度情報社會の法律問題, ジュリスト増刊, 1984.9., 6面 以下)등이 있다.

발전, 국민생활수준의 向上 및 人類의 福祉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電子回路의 발달에 의해서 생겨난 컴퓨터는 확실히 이러한 요청하에 情報社會에 있어서 情報量의 급증에 대응하여 개발된 정보처리기구의 가장 重要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컴퓨터장치 가운데 「하드웨어(Hardware)」에 業務의 手順을 지시하여 그것을 可動시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oftware)」는 하드웨어와 함께 情報處理技術의 中樞를 이루고 있다. 특히 最近에는 情報處理技術의 발달에 수반하여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獨立되어 개발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 하드웨어로 부터 獨立한 財産的 價値있는 상품으로서 去來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컴퓨터의 普及에 수반하여 大量의 情報를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整理한 情報의 集합물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情報處理技術과 電氣通信技術의 발달과 함께 방대한 情報資料 가운데 필요로하는 情報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入手하는 手段으로서 과학, 기술, 정치, 경제, 문화등의 모든 分野에 걸쳐서 그 機能遂行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財産的 價値의 保護必要性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開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構築에는 방대한 時間과 費用 및 고도의 知的인 作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면 그것은 일단 作成되면 他人에 의해서 容易하게 複製되기 쉬운 性격을 가진다. 여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法的 保護의 問題가 발생한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法的 問題는 그 이용 및 기업 비밀 보호의 견지에서 契約法 및 不法行爲法을 중심으로하는 「民法」 및 「商法」·「不正競爭防止法」, 컴퓨터범죄의 견지에서는 「刑事法」, 裝置등과 결합한 發明에 대해서는 「特許法」, 나아가서는 그것이 固定되어 있는 商品의 標識에 대해서는 「商標法」 및 「不正競爭防止法」등에 관한 法律上 등의 檢討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法的 問題는 프라이버시의 保護와 表現의 自由의 견지에서는 「憲法」 및 「民法」, 企業秘密保護의 견지로 부터는 「民法」·「商法」·「不正競爭防止法」, 컴퓨터범죄의 견지에서는 「刑事法」, 또한 情報支配에 의한 企業의 系列化에 대해서는 「經濟法」, 나아가서는 「電氣通信事業法」으로부터의 檢討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컴퓨터 프로그램³⁾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國際的인

保護의 動向, 즉 「著作權法」에서의 保護의 構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1) 各國의 立法動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1971년에 國際聯合으로 부터 그 보호 및 國際協定의 가능성의 요청을 받고 世界知的所有權機關(WIPO)은 1978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에 관한 國內法을 위한 모델條項」⁴⁾을 작성하였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를 위하여 各國 國內法制를 보충하고 아울러 各國 國內法の의 國際的 調和를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著作權法的 接近를 취하면서 이것을 補充的 見地에서 수정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1983년에 WIPO主權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에 관한 第2回 政府專門家委員會(工業所有權條約사이드)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著作權法에 의한 프로그램보호의 傾向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著作權에 관한 베른條約과 世界著作權協約등의 國際條約의 존재와 상응하여 국제적으로도 그 保護가 매우 충족된 것으로서 특별한 國際協定自體의 검토는 당분간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勸告를 행하고 있다.⁵⁾ 또한 1985년의 WIPO와 유네스코가 合同으로 주최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著作權에 관한 專門家會議에서도 대다수의 국가가 프로그램의 著作權法에 의한 保

3)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외에 그 實行에 있어서 파악될 수 있는 全 段階를 圖表나 言語로서 표현한 프로그램技術書 및 그 理解와 適用을 容易하기 위하여 작성된 補助資料가 포함된다. 後者は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著作物로서 著作權法에 의해 보호되어온 범위의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의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자체의 保護가 그 中心이 된다.

4) 「International Bureau of WIPO, Model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1978(814 E)」.

5) 「著作物の 이용 또는 창작을 위한 컴퓨터시스템의 使用으로 부터 발생하는 著作權 問題의 해결을 위한 勸告案(Recommendations for Settlement of Copyright Problems arising from the Use of Computer Systems for Access to or the Creation of Works)」.

護를 적당하다고 하고, 그 方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⁶⁾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WIPO 및 유네스코가 1979년에 作業部會를 소집하고, 1980년 및 1982년의 政府專門家委員會에서 채택된 勸告에서는 그것은 情報의 수집물 및 편집물로서 著作權法에서 보호할 것 또한 그 Input, Output에 관한 著作權法上的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美國」에서는 著作物의 新技術에 따른 이용에 관한 國家委員會(CONTU)의 最終報告書에 의거 1980년의 著作權法의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編輯著作物로서, 그 컴퓨터사용에 관한 著作權法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다. 「英國」에서도 1973년에 설치된 著作權法改正委員會의 1977년의 Whitford Report 및 그 改正에 관한 1981년 및 1985년의 Green Paper에도 美國과 같은 방식이 제기되었으며, 1988년의 改正著作權法 가운데 명문화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984년의 著作權法改正에서 위와 같은 編輯著作物로서 이것을 보호할 것을 명확히하여, 이후 各國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있다. 「日本」에서도 1986년의 著作權法의 一部改正前에는 데이터 베이스는 編輯著作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보호가 고려되었으나, 데이터 베이스에 있어서 創作性은 編輯著作物과 같이 素材라는 情報의 선택 또는 배열에서가 아니라 그 選擇 또는 體系的인 構成에 있는 것이므로 그 특수성에 따라 1986년의 著作權法一部改正에서 이것을 編輯著作物과는 별개의 저작물로서 그 보호를 명확히 하였다. 各國의 立法動向을 圖表로 살펴보면 [표-3]과 같다.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우리 나라에서도 情報의 財産的 價値의 保護라는 국제적 동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를 위한 立法을 추진함과 아울러 1987년 10월에는 世界著作權協約에 가입함으로써 外國人의 著作權을 國內著作權과 동일하게 보호하는등의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고 있다. 그런데

6) 各國의 動向에 관한 상세한 것은 法務部, 「著作權保護의 國際的 動向」, 法務資料 第107輯, 1988, 147-278面; 古澤 博, 「ソフトウエア保護の各國法制」, 法律時報 1983.7., 42-48面 參照.

[표-3] <정보재산의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현황> -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

구명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관련 법률명	· 저작권법 (1980년 개정)	· 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 (1988년 개정)	· 저작권법 (1985년 개정)	· 저작권법 (1985년 개정)	· 저작권법 (1991년 개정)
관련 조문 (개요)	· 제101조(프로그램에 관한 정의규정의 추가 및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언어의 저작물에 포함됨을 명시) · 제117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	· 제3조 1항의 비문예저작물(literary work) 속 에 프로그램이 포함됨을 명시함]	· 제1조 5항(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규정) · 제47조(소프트웨어 저작권소유자의 이용 독점권) · 제48조(소프트웨어 보호기간을 창작일로부터 25년으로 규정)	· 제2조(1) [문예저작물의 예시중 의 하나로 정보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명시함] · 제2조(2) [同法에서 저작물이란 개인의 지적 창작물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en)이어야 한다고 규정] · 제64조(1)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로 규정]	· 프로그램저작물(제10조의 9)· 데이터베이스(제12조의 2)를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규정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한 등록에 관련한 등록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87년 제정)
특정	저작물의 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국가위원회(CO-NTU)보고서 (1978년)	저작권법 개정위원회의 1977년 Wiford Report 및 그 개정에 관한 1981-1985년 Green Paper. 1977년 Wiford Report는	<판례> Cour d'appel de Paris, 2 nov. 1982, GRUR Int. 1983, S. 60ff, IIC Vol. 14	<판례> ① Landgericht Kassel Vom 21. Mai 1981, AKtz 8 0 84/80. ② Landgericht Schlewig-	·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조 사유위원회(1972년) · 저작권심의회 보고서 (1973년)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에 관한

국명	미 국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일 본
특 정		<p>기존의 “문예저작물” 속 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 함되므로 의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말것을 권 고하였고, 1981년의 “Gr- een Paper”도 이에 동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 85년 저작권법 개정. 1986년 영국정부의 백서 중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의 내용중 상당부분을 반영하여 기 존의 1956년 저작권법 및 1985년 개정법의 내용을 흡수하고, 새로이 1988년 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 (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를 제정함. <판례> Sega Enters. Ltd v. Rich- ards, 1983 F. S. R. 73(digested and 1983 C. L. Y. 488)</p>	<p>No. 1, 1983, P. 155.</p>	<p>Holstein Vom 29. Juli 1981, AKtz 2 Sa 705/ 81. ③ Oberlandesgericht Ko- blenz Vom 13. Aug. 1981, AKtz 6 U 294/ 80. ④ Landgericht Mosbach Vom 13. Juli 1982, AKtz KFH 0 35/82, GRV 1983, S. 70f. ⑤ Landgericht München Vom 21. Dez. 1982, AKtz. 7 0 2490/82, GRUR 1983, S. 175ff.</p>	<p>심사기준·마이크로컴 퓨터 응용기술에 관한 발명에 관한 심사운용 지침(1975年) <판례> 東京地裁民事判決 (1982年 12月 6日)</p>

立法方式에 있어서 대부분의 國家가 著作權法을 개정하는 方式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著作權法에 바탕을 둔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이라는 特別法을 制定하는 方式을 취하고 있다.⁷⁾ 이처럼 컴퓨터프로그램保護를 著作權法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례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 그 背景으로는 ①컴퓨터프로그램이 一般著作物과는 달리 人格性보다 技術性이 강하기 때문에 著作權法에 포함하여 一般著作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 ②政府組織上 일반저작물을 文化部가 담당하나 소프트웨어는 科學技術處가 담당하는 二元制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著作權法으로 보호할 경우, 技術的이나 行政的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들고 있다.⁸⁾

어떻든 1986年 12월에 制定된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이 시행된지 4年이 경과하면서 同法 自體에 대한 長·短點도 어느 정도 파악되면서 최근 同法에 대한 改正論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⁹⁾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위의 圖表에서 제시한 것처럼 先進諸國은 한결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編輯著作物」의 하나로 보아 著作權法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特別法形式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하는 見解도 있으나,¹⁰⁾ 현행법상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著作權法 제6조가 규정하는 「編輯著作物」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¹¹⁾

이하 情報財産의 保護에 관한 現行 法制를 살펴보면 [표-4]와 같다.

-
- 7) 宋相現·金文煥·梁彰洙,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逐條解說」, 서울大出版部 1989, 3面. 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은 特別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著作權法으로서 著作權法의 法理를 그대로 따를 뿐 아니라, 이 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著作權法을 準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김우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 季刊 著作權 1991年 겨울號, 11面 參照.
 - 8) 유희열,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季刊 著作權 1991년 봄號, 7面.
 - 9) 유희열, 前掲論文, 9-11面. 또한 韓國知的的所有權學會·韓國情報產業聯合會(主權),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의 改正에 관한 公聽會」, 1992.1.21. 資料 參照.
 - 10) 特許廳,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公開討論會」, 1990.8.29.
 - 11) 金文煥, 「데이터베이스의 法律問題」, 季刊 著作權 1990年 가을號, 11面. 또한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法에 의한 보호에 관한 상세한 것은 著作權審議調整委員會, 「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保護에 관한 研究報告書」, 1989.1. 參照.

[표-4] <정보재산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요>

대상영역	법률명	비고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음. · 현재 법개정논의가 진행중임
	특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한도내에서 컴퓨터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가 가능 · 프로그램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를 보호 · 일정한 기준에 관한 심사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6조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 외국에서도 저작권법에서 명시적 또는 간접적 규정으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저작권법 제101조(편집물이란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선정, 정리 또는 배열하여 얻어진 저작물 전체가 원저작물이 된다) - 일본 : 저작권법 제12조의 2 (데이터베이스로서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II. 情報의 安全管理의 問題

1. 情報의 安全性確保의 意義와 必要性

情報化의 進展에 수반하여 이미 경제·사회등 많은 分野에서 컴퓨터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情報處理技術의 발달과 그 결합에 의한 네트워크化의 전개에 따라 情報化社會는 더욱 광범위하고 깊이 침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自然災害나 人爲的인 要因에 의하여 컴퓨터시스템의 機能이 정지되거나 데이터의 機能停止, 破壞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컴퓨터시스템의 信賴性, 安全性을 확보하는 것은 情報化社會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불가결한 課題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것은 ①火災, 地震, 水害등의 자연적 재해 ②컴퓨터시스템을 구성하는 器具 및 소프트웨어자체의 障害 ③不法行爲등에 의한 시스템의 破壞, 盜難등의 인위적 재해 ④入力上的 錯誤등의 인위적 재난등이다.¹²⁾

우선 ①의 地震, 水害에 대해서는 컴퓨터 내지 通信回線의 設置條件등의 고려가, 防火에 대해서는 防火設備의 충실이 요구된다. 停電, 濕害, 通信回路의 切斷의 문제도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立法, 行政의 규제 특히 그 範圍가 문제가 된다. ②의 경우에는 특히 銀行온라인시스템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立法 내지 行政이 시스템의 二重化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의 安全性이 확보되지 않고, 不測의 사태에 의해 데이터등에 被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被害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라는 問題가 발생된다. 個別法律로서 책임의 한도액을 정하는등 保險制度의 충실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③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進展됨에 따라 데이터가 컴퓨터에 침입하는 者에 의

12) 情報處理開發協會의 「컴퓨터白書(1984-1985)」는 컴퓨터시스템의 事故原因을 ①하드웨어의 障害 ②소프트웨어의 障害 ③回線障害 ④오퍼레이터에 기인한 障害 ⑤災害에 의한 障害등 5가지 項目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鄭鍾學, 「高度情報化社會에 따르는 電算化(Computer)와 法律(犯罪)問題」, 韓國公法學會, 電氣通信法制的 整備方案(88 電氣通信學術課題), 1988.12., 152-156面 參照.

해 파괴되는 것이 社會的 問題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暗號化하여 本人番號의 暗號番號를 採用하여 제3자를 침입시키지 않는 方法이 가장 有効하다.¹³⁾ ④의 경우에는 入力失手에 관해서는 시스템 監査制度의 導入등이 필요하다. 시스템 監査制度는 감사대상으로 부터 독립한 監査人이 컴퓨터시스템을 종합적으로 點檢·評價하고, 관계자에게 助言·勸告하는 것이며, 安全對策의 實效性을 擔保하고 費用效果가 높은 安全對策을 가능케하는데 매우 有効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監査制度는 컴퓨터시스템이 企業經營의 觀點에서 볼 때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評價하는 기능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1) 各國의 立法動向

컴퓨터의 逆機能과 關連한 問題를 해결하기 爲하여 各國에서는 安全性 및 信賴性確保를 爲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1980年 9월에 채택한 「프라이버시保護와 개인데이터의 國際流通에 關한 가이드라인에 關한 理事會 勸告」에서도 「개인데이터는 紛失 또는 不當한 接近, 破壞, 使用, 修正, 開示등의 위협에 對해 합리적인 안전보호조치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고, 歐洲評議會(CE)가 1980年 9월에 채택한 「개인데이터의 自動處理에 關한 個人保護를 爲한 條約」에서도 「우발적 또는 權限 없는 破壞 또는 우발적 紛失 및 權한없는 接近, 改廢 내지 流布로 부터 自動處理데이터파일에 축적되고 있는 個人데이터를 보호하기 爲한 적당한 安全保護措置를 취한다」(제 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各國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爲하여 그 國家의 實情에 따라 規則 또는 基準을 설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圖表로 제시하면 [표-5]와 같다.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우리나라에서 컴퓨터安全에 對한 對策, 구체적으로는 自然災害對策, 不

13) 高石義一, 「네트워크社會におけるセキュリティのあり方」, ジュリスト 増刊(ネットワーク社會と法), 1988, 121面.

[표-5] <각국의 컴퓨터시스템 안전대책의 현황>

구명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법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법 컴퓨터안전법 컴퓨터정보자원시스템보안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처리·추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데이터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법 제3조 e 10(기록의 안전과 기밀보장을 위한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설비적 방어조치의 확립의무를 규정, 법시행을 위한 안전 대책 가이드라인으로서 물리적 보호조치·정보 관리 조치·시스템안전조치설정) 1987년 컴퓨터안전법 제 759 조(연방컴퓨터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의 보전과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법 제 2 조의 [별표 1] 데이터보호원칙 제2절 8에서 개인데이터에 대한 불법적 근 또는 개인데이터에 변경, 개시 또는 파괴와 개인데이터의 우발적 손실 또는 파괴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규정. 또한 제6절에서 개인데이터에 저장장소, 관련장치에 당해 명령어가 입력된 보안조치, 당해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9조(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거나 지시하는 자는 그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정보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고 특히 그 정보를 변조·훼손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에 전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기술 및 조직상의 조치)에 관한 별표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데이터 종류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관리 이동관리 추적장치관리 이용관리 악세스관리 데이터체공관리 입력관리 위탁관리 수송관리 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행정기관이 개인정보의 전자계산기처리 또는 전송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거나 또는 자기 테이프 등의 보관을 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누출, 멸실, 훼손의 방지 기타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 전자계산기시스템안전대책기준(1991년

국명	특징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p>컴퓨터안전 및 요개</p>	<p>미 국 기준 및 컴퓨터안전을 위한 혼련을 규정) · 컴퓨터정보자원시스템보안대책(연방노동부 혼련)에서 안전조치, 물리적·기술적 부문, 사생활보호등을 규정</p>	<p>영 국 에 접근하는 요원을 신뢰성보장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을 규정</p>			<p>일본 통상산업성 고시)에 서 ①설비기준(95개 항목) ②시설기준(19개항목) ③운용기준(48개항목) 등에 관리하여 상세하게 규정 · 컴퓨터바이러스대책 기준(1990년 통상산업성) ·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1978년) 제20조 · 시스템감사기준(1985년) 및 시스템감사기업대장에 관한 규칙(1991년) · 자기테이프에로의 기록, 그 이용 및 자기 테이프와 그에 관련된 하는 시설, 설비의 관리방법에 관한 기술적 기준(1986년 자치성 고시)</p>

法行爲對策, 內部要因不正對策, 시스템障害對策등을 살펴보는 경우 그 기술면, 설비면, 운용관리면등에서 만족할 만한 狀況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¹⁴⁾ 따라서 시스템의 障害에 초래되는 諸要因에 대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컴퓨터시스템의 設置 運營者에게 제시하고, 普及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現行法上 정보의 安全性確保를 위한 對策을 규정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 제22조에서 電算網의 안전성 및 情報의 信賴性을 확보하기 위한 保護措置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施行令 제28조2항에서는 그 保護措置로서 ①電算網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制度的·技術的 裝置의 설정 ②情報의 불법한 破壞 또는 操作을 방지할 수 있는 制度的·技術的 措置 ③電算網事業者가 취급중 知得한 重要정보의 漏出을 방지할 수 있는 措置 ④기타 保安業務規程이 정하는 필요한 措置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遞信部에서는 1989年 「電算網技術基準에 관한 規則」을 마련하여 이를 施行하고 있으며, 나아가 1991年 8月에는 國家基幹電算網의 安全信賴性基準을 규정한 「電算網安全信賴性基準(案)」을 마련하여,¹⁵⁾ 安全技術面의 대책내용을 제시한 安全技術基準(제4조-제6조), 運用管理面의 대책내용을 제시한 運用管理基準(제7조-제17조), 施設面의 대책내용을 제시한 施設基準(제18조-제2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民間部門에서는 韓國情報產業聯合會가 科學技術處와 연합하여 業界의 실무가의 의견을 綜合·調整하여 1988年 9月에 「컴퓨터시스템 安全管理基準」을 마련하여 그 活用을 권장하고 있고, 1991年 10月에는 그 基準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스템 安全管理指針(제2차)」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¹⁶⁾

14) 자세한 내용은 情報通信振興協會, 「情報通信安全體制研究」, 1989.11. 및 方碩皓, 「情報化社會에 대비한 프라이버시 保護對策에 관한 研究」, 通信開發研究院 研究報告, 1989.12., 100-104面 參照.

15) 동 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情報化社會 1991年 9月號, 40-41面 參照.

16) 자세한 내용은 韓國情報產業聯合會, 「컴퓨터시스템 安全管理基準」, 情報產業政策情報 31, 1988.9 및 同, 「컴퓨터시스템 安全管理指針(제2차)」, 情報產業政策情報 51, 1991.10. 參照.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은 그 利用分野, 用途, 形態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安全對策을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곤란하며, 각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費用과 效果面을 고려하면서 균형있는 安全對策을 실시할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각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安全對策의 實施狀況이 시스템이 취급하는 業務內容, 設備環境등에서 보아 적절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評價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매우 유용한 시스템 監査制度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시스템 監査基準」을 策定하고, 시스템 監査를 행하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能力 認定試驗」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시스템 監査의 도입, 定着化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 安全對策을 최대한 강구하더라도 컴퓨터시스템의 기구상의 障害나 데이터의 破壞, 變質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시스템의 대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오늘날 일단 事故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被害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安全對策을 보완하고,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不測의 事故에 대비하는 「情報化保險制度」를 정착시켜 安全性確保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情報의 安全管理을 위한 現行 法制의 主要 內容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Ⅲ. 情報商品의 去來와 關聯한 問題

1. 情報商品의 多樣化와 法的 問題點

分業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他者로부터 제공되는 情報에 의거하여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래에는 情報 그 자체가 去來의 대상이 되면서 情報商品이 급격히 증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多樣化하고 있는 情報商品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개별적 法的 性質에 관한 검토는 물론 현행 實定法規定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컴퓨터시스템의 발달과 보급에 의하여 商品의 去來와 契約에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각 개별 시스템이 通信網에 의하여 접속되어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화에 의한 거래에서는 端末機를 통하여 규격화된 電磁的 信號가 데이터로서 유입되어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행법제〉

[표-6]

제 목	근 거 법 령	주 요 내 용	비 고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규 칙 - 체신부령, 1989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및 통신센터의 환경조건 마련(제13조) ·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대책의 수립·시행(제14조) · 손상 및 기능장애방지조치(제15조) 	· 일본의 「전자계산기시스템안전대책 기준」(1991년)에서는 설비기준(95 개 항목)·운용기준(48개 항목)으 로 되어있음. 또한 「컴퓨터바이러 스대책기준(1990년)에서는 이용자 기준(19개 항목)·시스템관리자기 준(27개 항목)·소프트웨어 개발관 리자기준(13개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 그리고 「시스템감사기 준」(1985년)도 마련되어 있음.
전산망안전신뢰성기준 (안) - 체신부령, 1991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안전기술기준으로서 장애감지 및 조치기능(제4조) · 성능관리기능(제5조)·보안기능(제6조)규정 · 전산망운용관리규정으로써 운용관리조직(제7조)·구성관 리(제8조)·위험분석(제9조)·접근제어(제10조)·단말기 무단사용방지(제11조)·자료관리(제12조)·유지보수(제 13조)·비상대책(제14조)·사용자지원(제15조)·교육훈 련(제16조)·컴퓨터바이러스대책(제20조)을 규정 · 국가기간전산망에 대한 세부안전·신뢰성기준의 마련(제 21조)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 체신부령, 1986년.	전기통신기 본법(제 28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검색 및 처리설비의 파괴방지 보호조치(제32조) · 정보처리기능의 보호(제33조) 	
	과학기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 16조에서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 문화 등 제부문에 대한 편익증진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 에 평가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제정·시 행토록 규정 	

제 목	근 거 법 령	주 요 내 용	비 고
컴퓨터시스템안전관리기 준 - 1988년	전자계산조직의도입 및이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규정 제 9조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자계산조직의 이용 • 보급에 따른 사고예방과 보안유지를 위하여 안전대책기 • 준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를 전자계산조직의 사용자 및 • 공급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기준으로서 입지·설비시공시 사전 및 사후검토·권 • 축물·컴퓨터실·데이터보관실·전원실 및 공기조화실· • 전기설비·공기조화설비·감시제어설비에 관한 사항 등 • 을 설정 • 운용기준으로서 시스템운용조직체제·건물관리·시스템 • 및 관련설비운용·기록매체 및 Document·전산업무의 • 외부위탁·안전기준교육 및 시스템감사에 관한 사항 등 • 6개 항목을 설정 • 기술관련사항기준으로서 신뢰성향상기능·데이터보호 및 • 부정사용방지기능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을 설정 	• 민간부문에서 현재 사용토록 권장 하고 있음.
컴퓨터시스템안전관리지 침 (제2차) - 1991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기준으로서 건물 및 각 실·컴퓨터시스템·전원설비· • 공기조화설비·감시시설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을 설정 • 기술기준으로서 사고 및 재해대책기능·고의 및 과실대 • 책기능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을 설정 • 운용기준으로서 계획 및 관리·출입관리·컴퓨터시스템 • 운용관리·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 및 보관관리· • 관련설비 등의 관리·외부위탁·교육 및 훈련·시스템감 • 사에 관한 사항 등 8개 항목을 설정 	• 컴퓨터시스템안전관리기준(1988년) 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임.

去來內容의 기록이 매체에 남을 뿐이며, 對面去來로서 전제가 되는 상대방의 確認手段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 거래의 開始부터 終了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端末機에 누가 있는가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去來·契約에는 종래의 法律上의 諸原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¹⁷⁾

또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진전에 따른 情報商品의 去來는 消費者保護의 분야에서도 문제가 된다.¹⁸⁾ 즉 정보네트워크에 의한 去來에 있어서의 危險負擔과 損害分擔, 瑕疵있는 情報의 出現을 방지하기 위한 情報의 事前規制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去來의 확대는 國境을 초월하여 國際去來分野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 네트워크의 문제는 先進諸國에서도 아직 명확한 指針이 확립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技術進步가 급속히 전개되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동시에 도입되고 있으며 나아가 각국의 社會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具體的 問題에 관하여 자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世界各國의 네트워크시스템의 結合이 진전되면 情報交換이나 去來, 貿易이 확대되고 생활면에서도 相互依存性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國際去來의 분야에서도 분쟁을 해결하는 原則과 機關의 설치가 시급히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⁹⁾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1) 各國의 立法動向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새로운 契約上의 요소로서 시스템契約의 생성과

17) 이 점에 관한 상세한 것은 北川善太郎, 「ユンピュータシステムと去來法」, 三省堂 1987, 19-26面; 永田眞三郎, 「システム契約の成立過程と履行過程」, ジュリスト増刊(ネットウ-ク社會と法), 1988, 46-54面; 高石義一外, 「(座談會)ユンピュータ引取の法律問題」, ジュリスト 第707號, 1980, 187-214面 參照.

18) 岡 孝, 「情報商品の去來と消費者保護」, ジュリスト増刊(高度情報社會の法律問題), 有斐閣 1984, 218面.

19) 李乙珩, 「情報·通信의 發達과 國際的 流通의 高度化에 대한 國際法的 對應」, 法學論叢(崇實大) 第5輯, 1990, 43面 以下.

전개를 지적하고, 시스템契約의 특성 내지 그와 관련한 法律上的 문제점에 관하여 各國에서는 특히 그 기반이 되는 契約法, 法律行爲論과 民事責任論등이 어떠한 변모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研究·檢討하고 있다.²⁰⁾ 아울러 그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立法論적으로 「電子去來法」 내지 「컴퓨터시스템去來法」의 制定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構想段階에 그치고 있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課題를 설정하여 問題의 解決을 시도하는 實情에 있다.

우선 첫째로, 네트워크化가 진전되고 다양한 去來形態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네트워크化는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므로 따라서 그 實體의 解明과 去來·契約面에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政府, 法學界, 實務界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물론 시스템거래의 法的位置뿐만 아니라, 그 去來에 의해서 커다란 被害가 발생하는 部分의 문제해결에 최우선의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特定分野에서 종래의 法的配置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를 위해서도 政府·學界·業界가 공동으로 研究體制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技術進歩와 情報商品去來의 擴大에 대해 항상 그 實體를 감시하고, 規制法理와의 乖離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消費者保護의 관점에서 컴퓨터에 의한 去來와 契約型의 構造를 해명하고 새로운 法理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技術進歩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媒體나 手段에 의해서 우리들의 心理와 生活樣式을 변모시킬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컴퓨터에 의한 情報商品의 去來·契約에 대해서는 항상 전통적 法理와 慣習에 비추어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技術이 여하히 진

20) 이 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Kähler, 「Die Problematik automatisierter Rechtsvorgänge, insbesondere von Willenserklärungen」, AcP. Bd.182, 1982, S. 133 ; R.Clemens, 「Die elektronische Willenserklärung-Chance und Gefahren」, NJW 1985, S.1998. ; U.Eisenhardt, 「Zum subjektiven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Aktuelle Probleme der Rechtsgeschäftslehre」, JZ 1986, S.875 參照.

보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과거의 發展過程의 延長線上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法觀念을 무시하고 效率優先의 體系에 강제적으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²¹⁾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우리나라에 있어서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去來와 이러한 去來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시스템의 現시점에서의 이용은 아직 활발하지 않지만 컴퓨터 關聯産業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앞으로 우리 社會 전체에 본격적으로 導入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 분야는 특히 직접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극적인 對應方式으로는 消費者가 일방적으로 被害를 입거나 해결불가능한 問題가 점차 발생하고 있는 것을 防止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現段階에서 적극적으로 컴퓨터契約에 따른 새로운 去來形態 및 契約의 法的 構造에 관한 분석과 해명을 행하고, 情報處理와 通信技術에 매개되는 기존의 각종 去來의 變容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는 컴퓨터去來를 항상 消費者保護의 입장에서 전통적 法理論과 調和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課題이다. 개개의 構成部分에 착안하면 그것이 傳統的 法規制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스템 去來에서는 우선 傳統的 法理로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去來型에 관해서는 그 거래의 실

21) 참고로 日本의 「コンピュータ去來と法政策研究會」가 컴퓨터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 있는 契約(시스템契約)의 法的 課題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報告한 「시스템契約에 관한 法政策提言」 가운데 立法的 規制의 方向을 제시한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스템契約의 특질에 적합한 法的 規制가 消費者保護의인 관점에서 검토될 것
2. 시스템契約에 관한 訴訟에 관해서는 機械記錄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검토할 것
3. 시스템契約에 있어서 機械記錄의 사실적 추정력에 관해서는 去來成立에 관한 시스템 提供者의 立證責任의 負擔을 가중할 것
4. 시스템契約에 있어서 機械記錄에 관해 民事訴訟에 있어서 處分證書와 報告證書의 구별에 관한 해석적인 檢討를 할 것
5. 시스템契約의 전개에 障礙가 되는 각종 行政規制를 완화하는 方向으로 檢討할 것

체해명과 연구를 병행시켜 나가는 法學者, 實務家 및 컴퓨터技術者의 學際的 研究體制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法上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情報商品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公衆 電氣通信事業法」, 「訪問販賣등에 관한 法律」 중 通信販賣에 관한 規定 (제10조·제11조), 「消費者保護法」,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不正競爭 防止法」,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信用卡業法」등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情報商品의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한 國際去來의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去來의 확대추세를 반영하여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어, 무역 자동화망을 이용한 電子文書의 文書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3조 참조).

이하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情報商品의 去來와 관련된 쟁점과 현행법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7]과 같다.

IV. 情報犯罪의 問題

1. 컴퓨터犯罪의 意義와 類型

情報化社會가 전개되면서 社會생활의 多樣한 分野에서 컴퓨터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컴퓨터이용의 급격한 增加와 그에 수반하여 컴퓨터의 社會에 대한 影響력이 점차 強化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大量의 신속한 情報處理는 社會생활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있으나, 그 반면 컴퓨터를 이용한 犯罪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컴퓨터를 악용한 犯罪件數도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²²⁾ 그 방지책에 대한 社會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²³⁾

22) 우리나라의 컴퓨터犯罪의 現況과 特色에 관한 것은 趙主政, 「컴퓨터操作 犯罪 - 類型과 處罰을 중심으로 -」,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韓國刑事政策研究院 제2회 刑事政策세미나 資料), 91-94面 參照.

23) 「컴퓨터 犯罪對策 全無」, 法政新聞 1991年 10月 28日字 參照.

그러나 컴퓨터犯罪의 數는 다른 일반범죄에 비할 때 그리 많지 않은 편
 [표-7] 〈정보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과 현행법제의 개요〉

검 토 대 상	현 행 법 제	비 고
컴퓨터거래의 형태·계약방식에 관한 법적 구성 및 계약의 이행·불이행에 따른 민시책임의 문제	민 법	
상업장부 등을 전자적 기록물로서 작성·보존할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	상 법	
정보의 하자에 의한 피해구제 및 하자있는 정보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의 문제	소 비 자 보 호 법	
현금없는 소비자를 위한 할부판매 등과 관련한 계약 및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할부계약의 문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991.12.31제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상품판매의 문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991.12.31제정
상품정보의 도용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문제	부정경쟁방지법	1991.12.31 제정으로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기타 컴퓨터거래와 관련된 법률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업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이나, 최근 ①컴퓨터의 社會的 影響力이 높아짐에 따라 그 부정사용의 社會적 빈도도 증대되고 있다는 점 ②과거의 컴퓨터범죄의 발생율의 여하와 관계없이 今後 그러한 범죄의 발생률 및 피해액의 增大의 잠재성이 높다는 점 ③컴퓨터범죄는 다른 일반범죄에 비해 그 識別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④컴퓨터범죄의 방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⑤컴퓨터이용자 및 情報 産業關係者의 컴퓨터범죄억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²⁴⁾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범죄를 방지하는 對策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범죄(Computer Crime, Computer related Crime, Computerkriminalität)의 定義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概念定義는 論者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²⁵⁾ 또한 그 문제 관심과 방향에 따라 컴퓨터범죄의 유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²⁶⁾ 어떻든 컴퓨터범죄의 분류는 法的인 基準이 아니라, 經驗的인 基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 分類는 컴퓨터의 데이터처리 기능에 따라 데이터不正操作·컴퓨터妨害·데이터不正入手·컴퓨터盜用 등의 네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²⁷⁾

첫째, 데이터의 不正操作은 컴퓨터의 機能이 데이터처리에 있는 이상

24) 高石義一, 「コンピュータ犯罪の防止技術」, ジュリスト 第834號, 1985.4.15., 38面.

25) 컴퓨터범죄의 定義로서, ①「컴퓨터가 行爲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犯罪行爲」라고 하는 견해(A.H.Rainer von zur Muhlen, 「Computer-Kriminalität」, 1973, S.17.) ②「컴퓨터와 관련되는 反社會的 行爲」라는 견해(板倉宏, 「コンピュータ犯罪と刑法」, 法學セミナー, 1982.7., 100面.) ③「컴퓨터와 관련하는 社會侵害的 行爲」라는 견해(日高義博, 「コンピュータ犯罪」, 石村善助 外, 法情報學要論, 專修大學出版局 1991, 66面) ④「컴퓨터기술에 관한 知識을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犯罪行爲」라는 견해(高石義一, 前掲論文, 39面) ⑤「컴퓨터를 行爲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刑事處罰되거나 刑事處罰할 價値가 있는 行爲의 總體」라는 견해(趙圭政, 前掲論文, 81面) 등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刑事法論이나 刑事政策의 분야에서도 검토대상이 되는 實質的 犯罪概念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金鍾源, 「컴퓨터犯罪과 이에 대한 現行刑法의 對應에 관한 研究」, 87電氣通信學術研究課題, 1988, 6面 以下 및 許永敏·申洋均,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法的 考察」, 法學研究(전북大) 第16輯, 1989, 19面 以下 參照.

그 가장 기본적인 類型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컴퓨터에 의해 處理·保存·傳達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조작하는 모든 행위이며, 컴퓨터에 대한 入力·處理·出力·記憶의 모든 단계에서 그 데이터처리의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操作도 여기에 포함된다.²⁶⁾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適用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는 文書에 관한 罪, 財産犯罪의 構成問題, 業務妨害罪의 成立問題등이 있다.

둘째, 컴퓨터妨害는 他人의 데이터처리기능의 실행을 不可能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회·경제활동의 기본을 이루는 컴퓨터의 機能이 방해 받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社會公共에 대해 현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社會的 法益의 견지를 가미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損壞罪, 業務妨害罪등이 있다.

셋째, 데이터의 不正入手는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의 처리결과 또는 입력, 처리과정에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등을 不正하게 入手 또는 漏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 各種資料들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어서

-
- 26) 컴퓨터犯罪의 類型에 관해서는 ①컴퓨터妨害犯罪·컴퓨터操作犯罪·컴퓨터스파이·컴퓨터不正使用·Cash Dispenser(CD)犯罪등으로 분류하는 견해(趙圭政, 「컴퓨터犯罪」, 法務資料 第56輯, 1984, 19面; 車鏞錫, 「컴퓨터에 관련된 犯罪와 刑法」, 考試研究 1988.5., 64面) ②不正操作·컴퓨터妨害·컴퓨터스파이·절도등 財産侵害등으로 분류하는 견해(U.Sieber, 「Computerkriminalität und Strafrecht」, 2 Aufl., Köln 1980, S.186f.) ③컴퓨터시스템의 機能을 저해하는 犯罪로서 컴퓨터본체 또는 부대시설의 損壞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기디스크 또는 광디스크의 손괴·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變改, 消去를 지적하고, 컴퓨터시스템을 不正하게 사용하는 犯罪로서 하드웨어의 不正使用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不正使用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變改, 消去를 지적하는 견해(日高義博, 前掲論文, 67面) ④CD犯罪·不正데이터의 入力·데이터등의 不正入手·컴퓨터의 破壞·컴퓨터의 不正使用·프로그램의 變更, 消去·자기디스크등의 損壞등으로 분류하는 견해(廣畑史朗, 「コンピュータ犯罪の實態とその對策」, ジュリスト 第834號, 1985.4., 26面 以下) ⑤데이터의 不正操作·데이터의 不正入手등·컴퓨터의 無權限使用·컴퓨터 破壞등으로 분류하는 견해(的場純男, 「コンピュータ犯罪に關する刑事法上の問題點」, ジュリスト 第846號, 1985.10., 6面以下)등 여러가지가 있다.
- 27) 李哲, 「컴퓨터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考察」, 法曹 1989.2., 63面; 林鍾律, 「컴퓨터犯罪의 刑法的 對應」, 法學論叢(승실대) 第5輯, 1990, 69面.
- 28) 的場純男, 前掲論文, 8面.

그 자료들에 관해 이해관계있는 當事者들에게는 그 자료의 획득이나 누설이 막대한 財産的·人格的 侵害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자료의 流出은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注意를 요한다.²⁹⁾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背任罪, 秘密侵害罪 등이 있다.

네째, 컴퓨터의 盜用은 자기의 데이터처리의 실행을 위하여 權限없이 他人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使用權限은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사용절도, 背任罪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실질적 處罰價値를 구비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檢討가 필요할 것이다.³⁰⁾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1) 各國의 立法動向

컴퓨터에 관련한 사회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刑罰法規로서 대응하기에는 罪刑法定主義의 원칙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래의 刑罰法規로서 규율할 수 없는 可罰性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處罰規定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컴퓨터犯罪는 실체법의 분야 뿐만 아니라 刑事訴訟法이나 刑事政策의 분야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³¹⁾

우선 立法당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犯罪現象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刑罰法規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可罰的 行爲를 現行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法解釋에 의한 해결에는 罪刑法定主義의 원칙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法規定이 예

29) 林鍾律, 前掲論文, 72面.

30) 的場純男, 前掲論文, 15面 參照.

31) 이 점에 관한 상세한 것은 井上 大, 「刑事政策とコンピュータ」, 石村善助 外, 法情報學要論, 專修大學出版局 1991, 93-132面; 大谷 實 外, 「コンピュータ犯罪と刑事法の課題(鼎談)」, ジュリスト 第846號, 1985.10., 34面以下; 日本辯護士連合會(編), 「コンピュータ犯罪と現代刑法」, 三省堂 1990, 190面 以下; 屋美東洋, 「コンピュータと刑事手續上の課題」, 刑法雜誌 第28卷4號, 1988, 528-548面 參照.

상하고 있는 범위를 초월하여 條文을 적용하는 것은 類推解釋의 禁止라는 原則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刑罰法規의 解釋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두번째의 방법으로는 立法에 의한 해결이 검토될 수 있다. 立法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刑法의 部分改正에 의하는 방법과 別途의 特別法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部分改正의 방법은 條文의 文言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構成要件을 보완적으로 덧붙여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後者의 特別法의 방법은 현행 刑法典의 이론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근본적인 改正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되는 것이다. 各國의 立法例를 보는 경우 컴퓨터범죄만을 처벌하기 위한 독립된 特別法을 제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既存刑法 또는 關聯法規의 部分改正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경향에 있다.³²⁾ 各國의 立法動向의 내용을 圖表로 제시하면 [표-8]과 같다.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우리의 현행 刑法에는 情報自體를 직접 보호하는 規定은 두고 있지 않다. 現行法에서 비밀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정보 또는 財産的 價値가 있는 情報등 각종 정보에 관하여 秘密漏泄罪등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그 不正入手·漏泄行爲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없다. 또한 컴퓨터데이터의 不正入手·漏泄行爲에는 각종 特別법의 規定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것도 있으나, 그 範圍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情報를 漏泄 또는 惡用하거나 외부로부터 盜用하는 행위자체를 正面으로 처벌하는 현행 刑罰法規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컴퓨터犯罪에 대해서 立法的인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즉 法務部가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중 사회안정부문계획안 가운데 제시한 것에 따르면

32) 컴퓨터犯罪과 관련한 各國의 立法動向은 ジュリスト 第846號(1985.10.15)에 수록된 山口 厚, 「アメリカにおはるコンピュータ犯罪處罰法」; 井田 良, 「西ドイツにおはるコンピュータ犯罪への對應」; 河村博, 「イギリスにおはるコンピュータ 關聯刑事法」등 및 刑法雜誌 特輯, 「コンピュータ犯罪とデータの保護」, 刑法雜誌 第28卷4號(1988年)에 수록된 論文 參照.

〈주요국가의 컴퓨터범죄관련법의 현황〉

국명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법률명	연방형법(1986년 改正)	형법(1987년 改正)	형법(1986년 改正)	문서및통화위조법(1981년) · 데이터보호법(1984년) · 경찰및형사증거법(1984년) · 컴퓨터부정사용·처벌 등에관한법률(1990년)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 법률(1978년) · 정보처리관련불법행위에관한 법률(1988년)
개요	· 1984년 연방형법전의 개정(1984년 포괄적 범죄규제법)으로 컴퓨터 범죄의 일정한 유형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 그후 1986년 10월 16일 컴퓨터범죄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방형법전을 개정 · 컴퓨터에의 무권한접근의 처벌(제1030조 a의 1·2·3, 제1030조 e의 7) · 기망목적으로 연방관계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취득하는 행위의 처벌(제 1030조 a의 5) · 연방관계의 컴퓨터정보를 변	· 전자적 기록의 정의(제7조의 2) · 전자적 공증증서 원본부실기재죄(제157조) · 부실기록 전자적 공증증서 원본 사용 용죄(제158조) · 전자적 기록 부정 작출죄·부정작출 전자적 기록 사용 죄(제161조) · 전자적 기록 등에 관한 업무방해(제 234조) · 전자계산기 사용	· 1980년 제2차 경제범죄방지법을 마련하여 형법전에 컴퓨터범죄관련규정을 추가. · 컴퓨터사기죄(제 263조의 a) · 크리디트카드 등의 부정사용죄(제 266조의 b) · 증거로서 중요한 데이터의 위조죄(제269조) · 데이터탐지죄(제 202조의 a) · 데이터 변경죄(제	· 문서및 통화위조법 제8조 1항 d(전자적 기록의 문서성)· 제10조의 3항(허위데이터문서사용죄 처벌) · 데이터보호법 제 4조· 제 5조 5항· 제10조 9항(데이터보호원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 19조 4항· 제20조(컴퓨터 관련정보의 압수) · 컴퓨터부정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프로그램·데이터의 무단침입죄)· 제2조 1	·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 법률(1978년) · 정보처리관련불법행위에관한 법률(1988년) ·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 법률 제25조(사기·부정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의 금지)· 제 41조(신고없이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하거나 하게 한 자의 처벌)· 제42조(개인정보의 수집·기록 및 보존에 관한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 제43조(정보의 기록·분류·전달 기타 처리시에 누설하는 자에 대한 처벌)· 제44조(신고서에 정한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처벌) · 정보처리관련불법행위에관한

국명	미국	일분	특일	영국	프랑스
	<p>개·손상·파괴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제1030조 a의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및 기밀을 목적으로 컴퓨터의 무권한접근을 가능케 하거나, 정보를 거대하는 것(제1030조 a의 6·제1030조 b) 	<p>죄(제246조의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손괴죄(제258조·제259조) 	<p>303조의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방해죄(제303조의 b) · 증거로서 중요한 데이터의 은닉·경계표시의 변경죄(제274조) 	<p>항(컴퓨터 범죄)</p>	<p>법률에서 사기 및 위조범죄에 대한 처벌에 사 용된 물건에 대한 물수를 규정</p>
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매치와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법률(1988年) · 각 주의 컴퓨터범죄처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경쟁방지법(1988年 改正) · 저작권법(1985年 改正) · 연방데이터보호법(1990년 改正) 		

情報化社會의 新種犯罪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까지 刑法의 詐欺罪條項에 컴퓨터詐欺罪를 신설하고, 컴퓨터不正操作, 컴퓨터 스파이, 現金支給카드犯罪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삼입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磁氣테이프나 디스켓등 전자적 기록의 犯罪利用에 대비키 위해 文書概念을 확대,³³⁾ 이들 전자적 기록도 法律上 文書의 概念에 포함시켜 僞·變造의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新設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³⁴⁾

刑法的 保護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나 데이터의 種類 및 範圍, 情報의 형법적 보호방법, 컴퓨터犯罪의 보호법익의 종류와 성질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단계에서는 포괄적인 特別法의 방법보다도 部分改正의 方法을 채용하여 우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刑事立法論으로도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立法에 의한 컴퓨터犯罪防止對策도 중요하지만 그에 先行하여 컴퓨터시스템의 技術的 保護方法의 확립, 컴퓨터시스템보호를 위한 組織·管理의 정비절차 및 管理規則의 제정과 실시, 컴퓨터시스템의 不正使用을 抑止하기 위한 사회윤리의 확립 및 컴퓨터범죄행위에 대한 民事的 救濟措置·保險制度의 충실등 사회제도의 확립이 또는 事後的으로 보완될 것이 요망된다. 情報犯罪와 관련한 現行法制를 概觀하면 [표-9]와 같다.

V. 情報公開의 問題

1. 情報公開의 意義와 必要性

情報은 그것이 記號化되어 그리고 媒體에 의해 전달된다. 기호화는 음성, 언어, 문자, 영상등으로 행해지며, 그것은 文書, 新聞, 雜誌, 書籍, 라

33) 電磁的 記錄物의 文書性에 관한 우리나라의 現行法規로서는 自動車管理法(제6조4항, 제28조)·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제24조, 제29조, 제30조, 동시행령 제28조)·地籍法施行令(제28조)·所得稅法施行令(제220조6항)·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제13조)등에서 한정적으로나마 規定하고 있다.

34) 한국일보 1991年 12月 30日字 記事 參照.

[표-9] <정보범죄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개관>

법 률 명	내 용	비 고
형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기록물의 문서성 인정 · 컴퓨터 사기 관련 범죄 · 컴퓨터 부정조작 관련 범죄 · 현금지급카드관련 범죄 	현재 개정논의 중에 있음.
형사소송법	· 전자적 기록물의 증거능력인정 여부	
기 타 관 련 법 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규제)	1991. 12. 31 改正으로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신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프로그램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규제)	
	저작권법 제98조(소프트웨어등 편집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규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산망 안전성 보호조치의 침해)· 제25조(전산망관련 비밀사항의 침해 및 누설)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 및 행사 처벌)· 제26조의3(무역정보의 훼손·비밀침해)	1991. 12. 31 制定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향상 도모코자 함
	전과관리법 제42조· 제81조(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대한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70조(통신비밀의 침해 또는 누설에 대한 처벌)	
	우편법 제51조· 제52조(신서의 비밀침해 및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디오, TV, 뉴미디어등의 매체에 의해 전달된다. 情報化社會의 발전 즉 정보처리, 전송기술의 발달에 의해 情報, 媒體에 이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①情報處理技術의 발달에 의해 종래에는 情報로서 이용할 수 없었던 것까지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 거대한 組織과 人員을 소유하고, 다수인과 접촉하는 團體(정부, 대기업등)가 多量의 情報를 소유하기에 이르는 점. ②또한 컴퓨터네트워크 및 뉴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전자우편, 전자신문등 미디어의 融合이 일어나고, 今後 미디어가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再編될 가능성이 있게 됨에 따라 정보기계에 精通한 技術者가 사회적으로 優位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情報가 사회를 지배하는 정도가 강하여짐에 따라 情報가 商品으로서 판매되기에 이르면서 그 정보의 상품화에 의해 情報가 필요로 하는 사람, 地域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점. ④뉴미디어의 發達, 전기통신사업의 民營化,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달에 의해 情報傳達關係가 복잡하게 된 점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國民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精確한 情報를 조기에 입수할 것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獨占, 集中을 배제하여 國民에게 情報의 平等한 利用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전술한 것처럼, 政府, 公共團體, 大企業은 방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國民은 이러한 情報를 입수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營爲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의 대부분은 國家機密 내지 企業秘密로서 國民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부, 기업등이 보유하는 情報를 國民은 통상 신문, TV, 라디오등의 매체에 의해 취득하나, 그러한 매체의 自主規制등으로 인하여 언론매체가 수집한 情報를 취득할 수 없는 것도 많다. 따라서 언론매체가 情報를 수집하고 그것을 알릴 자유 즉, 取材의 自由, 報道의 自由는 통상 國民의 알권리에 봉사하나, 그것에 봉사하지 않는 것도 많다. 더우기 情報를 營利의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등의 산업정보는 企業論理에 의해 採算이 맞지 않는 한 國民에게 情報를 공개하지 않으며, 컴퓨터네트워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者는 기술적으로 情報의 提供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國民의 알권리는 미디어 내지 정보산업에 의해 충분히 保障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

유하는 情報의 公開를 청구하는 권리로서의 알權利的 보장은 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情報化時代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는 國民의 기본권보장의 핵심적인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알권리의 실현을 위하여提起되고 있는 것이 바로 「情報公開制度」인 것이다.³⁵⁾ 그러나 情報公開를 청구하는 권리로서의 알권리는 憲法上的 權利로서 인정되고 있으나,³⁶⁾ 이 權利에 기인하여 직접 政府에 情報公開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權利는 국가기관에 대한 것이므로, 企業이 소유하는 情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업이 소유하는 情報에는 政府가 소유하는 정보에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접근하든가, 후술하는 정보프라이버시의 侵害의 경우에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情報公開制度는 정보공개의 절차등을 정하는 立法이 있어야만 비로소 可能的한 것이다.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1) 各國의 立法動向

國家行政의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議會節次·政府弘報·국민의 審議參加등이 있으나, 일반국민이 직접 국가·공공단체의 情報公開를 청구하는 권리와 그 權利保障節次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행위의 公開制度는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先進民主諸國에서는 국민·시민에게 國家行爲에 관한 情報의 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보호 조치를 취하는등 情報公開制度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法制度로서 정착시키고 있다.

물론 國民의 「民主的 意思形成의 基礎」³⁷⁾ 라고 할 수 있는 情報의 공개

35) 情報公開制度化의 필요성에 관한 상세한 것은 姜京根,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研究」, 고려대 博士論文, 1983, 4-8面 參照.

36) 알權利와 情報公開의 관계는 安溶教, 「國民의 알權利에 관한 研究」, 건국대 博士論文 1975; 丘秉朔, 「國民의 알權利와 國政의 情報公開」, 法律行政論集(고려대), 1981; 清水英夫, 「情報公開と知る權利」, 三省堂 1986 參照.

37) K.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3 Aufl., Heidelberg 1983, S.161.

성에 대한 요구로서 성립한 先進諸國의 情報公開立法은 정부에 대해 문서 등의 整備·保存·開示節次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서 政府에 매우 커다란 부담을 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人力 資料등의 비용도 상당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負擔이나 費用은 알권리의 충족필요성 및 그것에 의해 획득되는 長期的인 國政上의 利益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情報公開制度는 국민의 參政權行使를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民主主義를 건전하게 하므로 매우 커다란 效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情報公開制度에서 기대되는 작용과 기능은 국민의 측으로 부터의 강력한 要求와 그에 부응하는 政府의 積極적 자세가 없다면 그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³⁸⁾ 또한 立法化하였으나 법자체에 정부측의 未公開의 裁量을 확대하여 秘密事項의 범위를 넓게 규정한다면 그 機能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情報公開法에는 공개의 실시를 阻害하는 行爲나 行政의 消極的 姿勢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에 대해 制裁를 가하는 규정 및 異議申請이나 裁判節次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배려를 하는등 유효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情報公開法을 制定·運用하고 있는 主要國家의 實態를 도표로 표시하면 「표-10」과 같다.³⁹⁾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民主社會의 존속과 발전에 있어서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課題는 국민의 알權利의 충족이며, 특히 國家·公共團體의 情報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체계의 구체화라는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學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⁴⁰⁾ 특히 情報公開의 문제는 오늘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環境問題와 消費者保護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38) 小林直樹, 「憲法政策論」, 日本評論社 1991, 85面.

39) 情報公開法에 관한 각국의 동향과 운영실태에 관한 상세한 것은 姜京根, 前掲論文, 36面 以下; 石村善治(編), 「情報公開 -その原理と展望-」, 法律文化社 1983, 47-188面; 清水英夫, 「情報公開」, 日本評論社 1983, 62-73面 參照. 또한 本圖表는 毎日新聞(日本) 1991年 10月 21日字의 記事와 總務廳行政管理局, 「情報公開 -制度化への課題」, 第一法規 1991을 참조하여 作成하였음.

〈주요국가의 정보공개법의 현황〉

[표-10]

국명	미명	국명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기타
법률명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1966년) - 1986년 개정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1949년) - 1983년 개정	행정문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78년) - 1979년 개정	공적정보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78년)	언방정부와 그 기관의 공적문서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2년) - 1983년 개정	정보악세스법 및 프라이버시법을 개정하고 연방법원 및 카나다 중기법을 개정하고 그것에 부수하여 기타 일정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1983년)	행정문서의 공개에 관한 법률 (1951년)	행정에 있어서 공개성에 관한 법률 (1970년)	행정기관 문서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법률 개정 (1970년) - 1985년 개정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 (1982년) - 1987년 개정	연방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87년)	연방행정기관 정보공개법 (1986년)	독일 - 행정절차법 (1976년) - 서독기본법 (1949년) - 각주출판법
대상문서	행정기관에 의해 작성·수집·관리하고 있는 문서	서면·도면 등 모든 표시, 임의 고를 수 있는 기록 또는 기타 기술적인 보조수단으로 서 이해할 수 있는 일체의 기록으로서 행정기관이 보유·수리·준비 또는 작성한 것	실정법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의 기제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모든 무기명문서	정부기관 정보 유하는 정보	언방정부가 작성 또는 수리한 문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	행정기관에 의해 작성 및 발행된 행정기관에 관한 서류 또는 송부·제출되어 당해 행정기관의 점유에 있는 문서	공적기관이 작성, 입수한 문서 또는 공적기관에 제출된 문서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련하여 행정상의 일관된 문서 행정기관에 의해 작성된 상대방으로 하여 전달한 서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소관사무에 관한 정보	연방행정기관, 주 및 시·군·구의 행정상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	영국 - 재정정보법 (정보안), 세스법, 1982년 - 주택법 (1985년) - 사회보장법 (1986년) - 개인파일 액세스법 (1987년)
대상기관 (개시의무자)	행정기관, 국방부, 연방정부인,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 연방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있는 기타기관, 독립규제위원회	국가행정기관, 국회, 교회, 의, 법원, 지방공공단체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공적부위를 위임 받은 사법상의 단체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책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기업체	연방정부 또는 행정기관	행정기관(33개의 심사기관 명을 구체적으로 열거)	국가·지방공공단체, 교회,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공적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 에너지공급 공단체, 정부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지정회사	행정기관	행정기관	연방행정기관, 주 및 시·군·구의 행정상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	

구 명	미 국	스 웨 덴	프 랑 스	네 델 란 드	호 주	캐 나 다	핀 란 드	노 르 웨 이	덴 마 아 크	뉴 질 란 드	오 스트 리 아	기 타
개시청구권자	모든 자(외국인, 법인 포함)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 법인 제외)	모든 자(외국인, 법인 포함)	특정하지 않음	모든 자(외국인, 법인 포함)	캐나다 시민 영국 국민(외국인) 중 특정한 자(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캐나다에서 사무소를 둔 법인)	국민(외국인은 청구권을 접수한 기관의 판단에 따름)	모든 자(외국인 포함)	모든 자(외국인 포함)	국민, 영주자, 체제자,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법인, 뉴질랜드에 영업소를 둔 법인	모든 자	학교 (학교 정보) 규정 (1983년) - 데이터 보호법 (1984년)
개시 절차	· 이용방법 등의 공시 · 청구에 의한 열람·복사 · 청구수리 후 10일 이내에 허용여부 결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연장가능)	· 청구는 문서로 보관하는 행정기관에 청구 · 다른 기관에 개시 청구권 없이 위임된 경우에는 기관에 청구 · 청구에 의한 열람·복사·개시기록부에 대한 통지, 회담없는 경우는 거부결정으로 간주	· 제공정보와 공개정보로 구분하여, 공개정보는 청구에 의해 복사·열람·인용·문·구두 제공 · 허용여부는 합리적 기간 내 결정 · 제3차 정보의 사전협의, 통지 절차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가능	· 청구에 의한 열람·복사 · 30일 이내에 허용여부 결정 · 제3차 정보의 사전협의, 통지 절차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가능	· 청구에 의한 열람·복사 · 30일 이내에 허용여부 결정 · 제3차 정보의 사전협의, 통지 절차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가능 · 제3차 정보에 관해서는 승인하는 취지를 통지	· 청구에 의한 열람·복사 · 문서의 특정 부분만을 개시하거나 다른 부분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사무소 또는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함.	· 청구에 의한 열람·복사 · 10일 이내에 허용여부 결정할 수 없는 사유 및 결정에 정지 기를 통지	· 청구에 의한 열람·복사 · 10일 이내에 허용여부 결정할 수 없는 사유 및 정지 기를 통지	· 27일 이내에 허용여부 결정 · 연장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유·연장기간·통지 관·통부 조장 면제의 규정 신청의 권리를 가지지 않을 통지	· 청구(구두·전화·전보·서면·텔레타이프)에 대한 회담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므로 8주 이내에 회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		· 일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요강)로서 시행 - 1991년 12월 현재 19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화
비용 부담	· 기록의 탐색, 복사 및 사상에 요하는 비용(상당목적의 경우 전액, 특수, 기타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면제)	· 복사비용	· 복사비용	· 복사비용	· 기록의 탐색 및 복사에 요하는 직접 비용	· 2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료 · 복사 경비에 상당하는 수수료	· 복사비용		· 복사비용	· 정보를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 및 자원비용 등을 고려한 경비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立法的 變遷

국 구 제 도	미 국	스 웨 덴	프랑스	네덜란드	호 주	캐 나 다	핀 란	노르웨이	덴 마 크	뉴 질 린 드	오스트리아	기 타
· 의의신청 · 사법구제(의의신청 거친 후) · 개시거부에 관한 책임권 결정의 성립 등을 언론에 공표	· 의의신청(경부차원에 의한 거부인 경우)에 대한 정부 부의의의 기판의 거부인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 · 음부조판에 의한 고장신청	· 행정문서의 관의 위헌에 대한 의의신청 · 행정재판소로 제소	· 행정상의 불복심사기관에 행하는 음부조판에 대한 의의신청	· 정보비밀사내에 의의신청 · 연방재판소의 제소	· 당해 행정기관에 의의신청 · 최고행정재판소에도 의의신청 · 음부조판에 의한 고장신청	· 당해 행정기관에 의의신청 · 연방재판소의 제소	· 법률로 작성된 것이 의무로 되지 않은 내부결정을 위한 문서 등 · 각의 의사록 · 법률로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비밀로 취급된 문서 · 국가안정, 의의, 국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 · 국가안정, 의의, 국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 국가안전영역의 범위	· 당해 행정기관에 의의신청 · 음부조판에 의한 고장신청 · 사법법원에 제소	· 각의 의사록, 각표회의 기록 · 입법, 예산에 관한 행정기관 문서 · 내부직업용 자료 · 기관내부서 · 외교, 외국무 · 행정의 공정, 중립, 효율적 운영에 배려한 불개시 규정	· 일반행정절차법에 의한 구제 · 행정재판소에 의한 제소	· 법률상 수비 의무에 저촉하는 경우 · 행정사무처 · 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명백히 방지할 의도도 청구하는 경우	

국명	목적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기타
미국	· 금융기관과 관련된 수사의 기밀 유정에 관한 지적기록				· 기관운영에 관한 문서 · 개인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는 문서를 법률가의 특권관에 따르는 문서 · 비즈니스문서 등에 영감을 주는 문서 · 국가경제에 영향을 주는 문서 · 미발상 취득한 자료를 포함한 문서 · 의회모독 또는 법정모독이 되는 문서	· 프라이버시법(1982년) · 프라이버시법(1988년)	· 연방데이터법(1987년)	· 개인데이터 파일에 관한 법률(1970년) · 행정절차법(1967년)	· 행정기관에 의한 전자적 데이터 운영에 관한 법률(1978년) · 공작기관데이터파일법(1978년) · 민간기관데이터파일법(1978년) · 행정절차법(1985년)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1987년) · 행정절차법(1985년)	
영국	· 금융기관과 관련된 수사의 기밀 유정에 관한 지적기록					· 프라이버시법(1982년) · 프라이버시법(1988년)	· 연방데이터법(1987년)	· 개인데이터 파일에 관한 법률(1970년) · 행정절차법(1967년)	· 행정기관에 의한 전자적 데이터 운영에 관한 법률(1978년) · 공작기관데이터파일법(1978년) · 민간기관데이터파일법(1978년) · 행정절차법(1985년)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1987년) · 행정절차법(1985년)	
독일												
일본												

점에서 시민단체등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⁴¹⁾

또한 최근 地方自治制의 실시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忠北清州市議會에서 「清州市行政情報公開條例」를 제정하면서, 각 시도 기초·광역의회가 잇따라 같은 목적의 條例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등 情報公開制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⁴²⁾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도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하여야 할 시점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情報公開制度가 점차 세계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追從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個別法에서 情報公開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도 많으며, 각 행정기관의 訓令·例規·指針등에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公開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現行法規定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⁴³⁾ 어쨌든 이제는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신중한 研究檢討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연구에는 다음의 점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
- 40) 卞在玉, 「現代社會에 있어서 情報公開와 人權保障」, 韓國法學院 法律學 심포지움, 1991.12.5., 9-10面. 또한 憲法裁判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行政廳의 記錄閱覽 내지 謄寫申請行爲를 거부하는 행위를 위법한 基本權侵害行爲로 판단하는 決定을 내린 바 있다(1989.9.4. 88 헌마 22 ; 1991.5.13. 90 헌마 133).
- 41) 특히 美國의 경우 연간 聯邦政府機關에 제기되는 情報公開請求 숫자 가운데 단일정부기관으로는 食品과 醫藥品の 안전성을 담당하는 食品醫藥局(FDA)이 가장 많은 情報公開要求를 받는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美國 情報公開法 시행 25년」, 국민일보 1991年 8月 8日字 參照.
- 42) 「清州市行政情報公開條例」는 전문 18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7月 清州市議會議員 37명중 29명에 의해 發議되어 11월 25일 議決되었으나, 市가 12월 13일 現行법상 母法이 없고 地方自治法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어 市議會에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市議會는 12월 26일 수정없이 재의결을 해 條例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市는 1992년 1월 9일 그 條例의 취소를 요구하는 訴訟을 大法院에 제기하여 두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한국일보 1991年 12月 18日字·1992年 1月 9日字 및 중앙일보 1992年 1月 9日字 社說 參照.
- 43) 現行법상 情報公開와 관련한 法律은 대단히 많다. 그리고 그 用語에 있어서도 「公表」·「公覽」·「閱覽」·「公告」·「報告」·「提出」·「公示」·「告示」·「公報」등 여러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現行법상 公開制度를 분석한 것으로는 申玉澈, 「情報管理와 現行法上 公開制度 ①②③」, 法制 第235號(1988.7.)·第238號(1988.8.)·第244號(1988.10.) 등이 유익하다.

즉, ①원칙으로 情報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公開될 것 또한 公開하지 않는 情報은 특정될 것, ②國民一般에게 開示請求權을 부여할 것, ③政府는 소유하고 있는 情報을 공개할 수 있게 정리할 것, ④나아가 그 情報公開의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단순히 政治決定의 결과를 알리는 「公知型」의 공개가 아닌 국민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情報의 公開 즉, 「參加型」공개일 것이 요망된다.

情報公開과 관련한 現行法制는 대단히 많으며 이를 전부 검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항목별로 整理하여 살펴 보면 [표-11]과 같다.

VI. 個人情報의 保護問題

1. 個人情報保護의 意義와 必要性

전통적인 프라이버시의 概念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個人의 聖域으로서의 私的 生活領域에 있어서 자유의 주장으로서 이해되어 왔다.⁴⁴⁾ 시민적 생활은 財產權의 측면에서 재산의 자유와 안전을 確保하고, 인간의 생명·신체·자유·안전 뿐만 아니라 명예·신용·비밀등은 人格權의 保護라는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이러한 他人으로 부터 고립하고 간섭받지 않는 권리영역의 주장은 個人의 內部的·非社會的 生活領域과 生活樣式에 관해 自主的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自由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⁴⁵⁾

그러나 情報化社會, 즉 컴퓨터의 진전에 수반하여 행정기관 및 사회각 분야에 컴퓨터와 각종 情報處理設備가 보급되면서 個人에 관한 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축적·관리·처리하고, 다각적으로 利用하는 것이 기술적으

44) 프라이버시개념의 成立과 展開에 관한 것은 卞在玉,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權利」, 서울大 博士論文, 1979; 李璟浩,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保護」, 동국大 博士論文, 1986 參照.

45) 梁彰洙, 「情報化社會와 프라이버시權의 保護 -私法的側面을 中心으로-」, 人權과 正義 1991.3., 71面.

[표 - 11] <정보공개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개요>

항 목	관 련 법 제
행정기관 등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기밀의 공개) ·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문서류의 열람·복사) · 노동조합법 제25조(회계감사 등의 공개) · 정당법 제28조(강령과 당헌의 공개) 등
국정운영 등의 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50조(국회회의의 공개) ·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3조(회의의 공개) ·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 · 지방자치법 제57조(회의의 공개) 등
재판절차 등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09조(재판공개) ·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변론·결정선고의 공개) ·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심리·판결 공개) ·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공개)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36조(심문의 공개) 등
선거 등에의 참여를 참여를 위한 공개제도(명부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선거법 제19조(명부열람) · 국회의원선거법 제20조(명부열람) · 국민투표법 제16조(명부열람)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2조(명부열람)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8조(명부열람) 등
국민생활상 필요한 정보의 공개제도(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법 제21조(등초본 열람) · 호적법 제12조(호적부 열람) · 주민등록법 제18조(등초본 열람·청구) · 지적법 제12조(지적공부 열람)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서류 열람) · 의장법 제76조(서류 등의 열람) · 자동차관리법 제16조(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 등
주요국가시책에 대한 정보 공개제도(공표·고시·공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대한 고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 · 농법기본법 제6조(농업관측의 공표) · 초지법 제6조(초지조상지구의 고시) · 산림법 제58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고시)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3조(품질표시기준고시) ·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람)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도시재개발법 제15조(관계서류의 공람) 등
지시·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위반약관의 공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위반사실의 공표) · 소비자보호법 제10조(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등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 관광진흥법 제20조(관광정보의 활용) ·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 소비자보호법 제13조·제18조·제28조(각종 정보의 제공) 등

로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內部的·非社會的 生活領域의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외부적·대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積極的·能動的 生活領域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⁴⁶⁾

환언하면 사회적으로 情報蒐集권이 대규모화하면서 정보를 독점·관리하는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개인은 자기의 情報가 틀리게 記錄 保存되거나, 개인정보가 漏泄·公表되지 않도록 자기정보에 관해 管理할 權利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⁷⁾ 이와 같이 개인을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自己保存의 權利로서 個人情報의 자기관리의 면을 볼 때,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表象·데이터와의 同一性を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자신을 틀리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訂正을 요구하고 자신의 정보데이터가 틀린다면 그 訂正을 요구하는 權利는 자신을 유지하려는 自己防衛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개념을 「自己情報管理權」, 「自己情報支配權」, 「自己情報利用決定權」등으로 적극적·현대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서,⁴⁸⁾ 프라이버시 특히 個人情報의 보호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체적 立法化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政府의 측에서 볼 때 정부에 의한 정보수집·정보보유·정보확산의 측면이 문제가 되며, 個人의 측에서 본다면 정부가 어떠한 情報를 수집하고 있는가 및 蒐集管理되고 있는 가를 알기 위한 접근권·자기정보에 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거나 자기에 관한 잘못된 情報의 訂正을 요구하는 권리가 문제가 된다.

46) Christoph Gusy, 「Grundrechtsschutz vor staatlichen Informationseingriffen」, Verwaltungsarchiv 1983, S.104f.

47) Helmut Bumler, 「Datenschutz beim Verfassungsschutz」, AöR 110/1, 1985, 15f.; 金敏培, 「情報公開과 프라이버시의 法的 保護」, 法政大學報(인하대) 第7輯, 1988.2., 113面 以下.

48) BVerfGE 65, 1(人口調査違憲判決); 金善旭, 「西獨에 있어서 情報公開과 私生活 保護」, 韓國公法學會, 情報化社會의 公法的 對應, 1989.5., 106-109面; 堀部政男, 「プライバシーと高度情報化社會」, 岩波書店 1991, 29面; 阪本昌成, 「個人情報保護と自己情報コントロール權」, 法律のひろば 1991.5., 26面 以下; 李璟浩, 前掲論文, 79-84面. 또한 이것을 「情報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橋本公巨, 「國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のあり方」, ジュリスト 第879號(1987.3.1), 12面 以下.

2. 各國의 立法動向과 우리의 對應

(1) 各國의 立法動向

西歐諸國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개인정보의 處理, 利用의 확대에 수반하여 個人情報가 침해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1960年代以後라고 할 수 있다. 그 공통된 배경으로서는 전자계산기에 의한 個人情報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不安感增大라고 할 수 있다. 이 국민의 불안감은 個人識別番號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전자계산기처리의 計劃과 實施에 의해 현저화되면서 立法化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70年 西獨의 헷센州에서 세계최초로 個人情報保護法이 제정되었으며, 國家的次元에서는 1973年 스웨덴이 최초로 「데이터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많은 國家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고 있다.⁴⁹⁾

各國의 個人情報保護法은 정보화사회의 진전가운데 개인의 권리와익을 적절하게 보호할 것을 그 目的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⁵⁰⁾ 또한 法律로서 정한 보호조치는 個人情報의 保存制限, 安全·正確性確保의 義務化, 利用提供의 制限등 보유기관에 대한 규정, 本人에 대한 開示·訂正請求權의 부여, 감독기관에 의한 法運用의 實效性確保등 그 개요는 비슷하다. 그러나 각국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國民意識, 社會·政治制度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情報의 처리범위와 처리형태, 監督機關의 형태와 권한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⁵¹⁾

한편 1970年代에 들어와서 국제데이터통신이 본격화되면서 國家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法規制의 내용의 상이함이 국제적인 情報流通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49) 1990年 현재 經濟協力開發機構(OECD)加盟國 24개국 중 17개국이 個人情報保護法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本文의 圖表 참조.

50) 최근 유럽國家의 個人情報保護法의 동향을 보면 ①簡易化(Simplification) ②特殊化(Differentiation) ③自主規制(Self-regulation) ④非公式的인 制裁(Informal sanctions) ⑤法人(Legal persons)정보의 포함여부등에 관하여 공통점이 제시되고 있다고한다. 상세한 것은 堀部政男, 「世界の個人情報保護法と日本」, ジュリスト増刊(ネシトウ-ク社會と法), 1988, 268面 參照.

그 결과 1980年 9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理事會는 프라이버시와 情報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경합하는 가치를 조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프라이버시保護와 個人데이터의 國際流通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理事會勸告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를 채택하였다. 이 권고는 加盟國에 대해 個人情報保護法의 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法律의 내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①수집제한의 原則 ②자료내용의 原則 ③목적명확화의 原則 ④이용제한의 原則 ⑤안전보호의 原則 ⑥공개의 原則 ⑦개인참가의 原則 ⑧책임의 原則등 8가지를 열거하고 있다.⁵²⁾

그리고 1980年 9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21개국을 가맹국으로 하는 歐洲評議會(CE)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한 프라이버시의 保護와 個人情報의 國際流通과의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個人資料의 自動處理에 關한 個人保護에 關한 條約(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을 채택하고 同條約은 1985年 10月1日 발효하였다.⁵³⁾ 또한 國際聯合人權委員會에서도 1989年 3月6日 「電子計算機處理된 個人資料에 關한 가이드라인」에 關하여 決議를 행하였으며, 今後 國際聯合總會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채택이 검토되고 있다.

이하 주요 國家의 個人情報保護法의 實態와 運用現況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12]와 같다.

(2)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

-
- 51) 각국의 個人情報保護法制에 관한 것은 法制處, 「各國의 個人情報保護關係法」, 法制資料 第150輯, 1989; 方碩皓 外, 「情報化社會에 對한 프라이버시保護對策에 關한 研究」, 通信開發研究院 研究報告, 1989.12.; 韓國公法學會, 「情報의 蒐集·管理와 私生活保護」, 89電氣通信學術研究課題, 1989.12.; 同, 「情報化社會의 公法的 對應」, 國際學術大會論文集, 1989.5.; 總務廳行政管理局行政情報システム參事官室, 「世界의 個人情報保護法」, ぎようせい 1989; 夏原 猛, 「プライバシ-權의 綜合的 研究」, 法律文化社 1991 등 參照.
- 52) 자세한 내용은 法制處, 前掲書, 271面 以下; 總務廳行政管理局(編), 「行政機關における 個人情報保護對策-情報化社會への 對應」, ぎようせい 1988, 98面 以下 參照. 또한 千炳泰, 「國際間 情報流通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保護」, 韓國公法學會, 前掲(89電氣通信學術研究課題), 1989.12., 202-216面.
- 53) 이 조약의 全文은 總務廳行政管理局, 前掲書, 104-117面 參照.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근래 社會의 情報化를 배경으로 個人情報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가 확대되고 있고, 그에 수반하여 個人의 權益侵害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⁵⁴⁾ 그래서 일찌기 學界에서는 그에 대한 법이론적·입법정책론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國內外法制과 理論을 연구·검토하였으며,⁵⁵⁾ 특히 韓國公法學會에서는 「私生活秘密保護法 試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⁵⁶⁾

한편 個人情報保護趣旨을 규정한 현행법으로는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제25조)」, 「郵便法(제3조·제51조)」, 「公衆電氣通信事業法(제99조·제100조)」등이 있으나 주로 秘密維持義務등 단편적인 규정을 두고있고 위반자에 대한 事後規制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⁵⁷⁾ 또한 科學技術處에 의해 1989年 1월에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는 個人關聯情報의 保護를 위한 法律(案)」 및 동년 3월에 「情報化社會促進法(案)」을 마련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다. 그리하여 1990年 1월에 「公共機關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案)」이 나오고, 이는 다시 조정되어 1991年 5月 10日 국무총리 訓令 제250호로서 「전산처리되는 個人情報를 위한 管理指針」으로 시달되었다.⁵⁸⁾

그러한 가운데 總務處에서는 「行政機關에서 처리하고 있는 個人情報의

54) 자세한 것은 「電算化時代 私生活保護되어야」, 중앙일보 1991年 1月4日字 사설; 「시급한 私生活保護法」, 중앙일보 1991年 3月25日字 사설; 「私生活露出」, 중앙일보 1991年 4月12日字 기사;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동아일보 1991年 9月24日字 사설; 「行政電算網 前科電算網管理에 구멍」, 동아일보 1991年 6月14日字 特輯란 參照.

55) 상세한 것은 韓國公法學會, 前掲 國際學術大會論文集 및 89電氣通信學術 研究課題 報告書 參照.

56) 試案의 내용은 韓國公法學會, 前掲 89電氣通信學術研究課題報告書, 60-63面に 全文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私案으로는 李璟浩,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프라이버시保護法(案)」, 前掲論文, 207-211面 參照.

57) 秘密維持의 義務를 규정한 현행법은 무수히 많다. 그것을 크게 분류한다면 ①公務員이라는 신분에 의거한 것 ②公務員이 特定業務를 담당하는 경우의 業務上必要에 의한 것 ③기타 一般職 公務員이외에게 과하는 것 ④公的任務를 수행하는 民間人에게 그 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 ⑤特定業務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과하는 것 ⑥政府機關의 任職員에게 과하는 것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12]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

구분	명칭	스웨덴	미	국	독	일	프랑	스	캐나	다	영	국	덴	마	크	일	본	기타	국가	
법령	환법 데이터법 (1973년) - 1988년 개정	프라이버시법(1974년)	프라이버시법(1977년) 연방데이터보호법 (1977년)	정보처리, 추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1978년) - 1988년 개정	프라이버시법(1982년)	데이터보호법(1984년)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공적부문·민간부문 자동처리만을 대상	○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법 (1978년) 1980년 개정 ○ 노르웨이 개인데이터 파일 법(1978년) ○ 뉴질랜드 왕가메이·킴류터센터법 (1976년) ○ 룩셈부르크 전자재산기 처리 개인데이터 이용 규제법 (1979년) ○ 아이슬란드 개인데이터 처리법 (1981년) ○ 핀란드 데이터 보호법 (1987년)
대상	부문	공적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공적부문·민간부문	
대상	처리 형태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것은 일부 규정만 적용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것은 일부 규정만 적용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자동처리 이외도 포함	
대상	데이터의 부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시스템의 설치	허가제	신고제	신고제	신고제	신고제	신고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규제	조치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특정종류의 정보 수집·입력 제한 · 공공규제 · 유지관리 규제	
시스템의 공시	의 의	공시는 정보 공개법의 의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공적부문은 공시의 의무, 민간부문은 본인에게 통지	
정보의 개시·정정 등 개인의 권리	의 권리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의 권리와 불복신청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立法的 對應

국	법	스	웨	민	미	국	독	일	포	스	카	나	다	영	국	덴	마	크	일	본	기	타	국	가
법칙, 순행배상 기타	순행배상 기타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법칙 순행배상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독 기관
감	독	기	관	데이터 감사원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행정관리예산청
기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管理에 대한 통일적인 基準과, 수집된 情報를 행정행위의 基礎資料로 사용하기 위한 적당한 절차를 마련하고, 個人情報의 수집 및 이용과정에서 一般國民에게 행정에 대한 統制權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으로써, 보다 精確한 個人情報를 확보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상의 施行錯誤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個人情報의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의 私生活에 대한 간여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國民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총5장 29조 부칙2조로 구성된 「公共機關의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處理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 試案」을 마련하여 1991年 9月20日 공개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⁵⁹⁾ 個人情報의 保護趣旨를 규정하고 있는 現行法制를 살펴보면 [표-13]과 같다.

VII. 기타의 問題

1. 情報의 勞動法에의 影響

情報化社會의 전개는 勞動의 형태와 勞使關係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
- 58) 同 指針에서는 個人情報保護對象의 범위를 행정기관보유정보 중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전산처리되는 個人에 관한 정보로 하고, 保護對策으로는 ①수집·입력단계에서는 客觀性있는 事實에 관한 個人정보수집원칙·개인정보수집의 목적, 근거, 범위, 방법, 보유기간등의 明確化·개인정보수집시 정보당사자에 通知 및 직접수집원칙·수집된 정보의 適正性判斷 및 폐기조치를, ②저장·유지단계에서는 個人정보화 일단위별로 保有情報概要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강구·本人의 열람 및 정정청구절차마련·個人情報에 대한 무단유출방지대책·개인정보의 公開 또는 非公開對象 구분·관리를, ③사용단계에서는 다른행정기관등 外部로의 個人情報 流通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강구·個人情報의 무단유출 및 情報誤用に 대한 制裁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個人情報保護 政府指針은 미봉책」, 동아일보 1991年 5月13日字 기사 參照.
- 59) 同 法律試案의 全文은 總務處, 「個人情報保護法(案)制定을 위한 公開討論會 資料」, 1991年 9月20日, 39-54面 參照. 또한 姜京根, 「各國의 個人情報保護法動向과 政府法律試案에 대한 檢討」, 同 討論會 主題發表論文 參照.
- 60) 安枝英呻, 「ニューメディアと勞動關係への影響」, ジュリスト増刊(高度情報社會の法律問題), 1984.9., 257-263面; Volker Bahl, 「Informationsgesellschaft als Flucht aus dem Arbeitsrecht」, in : A.Roßnagal(Hrsg.), aaO., S.107f.

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勞動法의 각분야에도 여러가지 과제를 부여한다.⁶⁰⁾ 정보산업의 발달은 産業構造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그에 따라 勞動市場에 있어서 전체적인 고용의 보장이 커다란 과제가 된다. 또한 企業組織에 있어서도 情報化가 완성되면 경영조직의 分散化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조직내의 人力의 효율적 배치의 문제가 제기된다. 나아가 勞動條件에 있어서도 컴퓨터도입에 따른 在宅勤務制등으로 인하여 근무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⁶¹⁾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文書作成, 데이터입력, 검색, 가공등은 視力障礙등 과중한 생리적 부담 기타 障害를 발생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勞動安全衛生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망된다.⁶²⁾

이러한 인간공학적 고려를 行政이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工場을 컴퓨터화함으로써 24시간조업이 가능하게 되어 이것이 勞動強化 내지 失業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또한 情報器具등이 보급됨에 따라 정보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電波가 범람하여 다른 기구 동작에 영향을 주는 스모그전파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⁶³⁾

그리고 情報化社會의 전개는 勞使關係에도 새로운 법적 문제점을 제기한다. 즉 情報化社會를 촉진하는 컴퓨터의 普及으로 勞動者의 義務도 증

61) 在宅勤務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는 그것을 全面禁止하는 방법, 반대로 稅制上的의 우대조치등으로 그것을 促進하는 방법 또는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規制를 행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 가운데 한 가지를 選擇하는 방향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62) ILO는 1985년의 보고서에서 40세이상의 VDT(Visual Display Terminals) 勞動者에 대해서 당뇨병, 고혈압 및 시력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고, 나아가 1986년의 보고서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勤勞者의 재검사뿐만 아니라 VDT勞動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시력 및 파로나 스트레스를 검토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LO, Advisory Comm.on Salaried Employees and Professional Works, Ninth Sess., 「Occupational Hazards and Diseases in Commerce and Offices」, 38-42, 1985.

63) 우리나라의 경우도 電子産業의 고도성장에 따라 각종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과장해로 인한 各種 事故發生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電波管理法」에 전자과장해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1989.12. 개정)하고, 이 規定에 의거하여 遞信部승인 「전자과장해검정규칙」(1990.3.)을 마련하고 있다.

[표-13]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제>

법 률 명	내 용	비 고
헌 법	제17조(프라이버시의 권 리)	
형 법	제35장(비밀침해의 죄)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안)		· 현재 총무처에 의해서 시안이 발표 되어 있음.
국 가 공 무 원 법	제60조(비밀업수의 의무)	· 외무공무원법 제 6 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17조 등
전 기 통 신 사 업 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 우편법 제51조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전파관리법 제42조 등
국 민 투 표 법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 대통령선거법 제151조 ·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등
주 민 등 록 법	제18조의 3(주민등록사항 의 비밀누설금지)	· 통계법 제18조 · 가사소송법 제71조 등
번 호 사 법	제22조(비밀유지의무)	· 근로기준법 제104조 · 선원법 제118조 · 공증인법 제5조 · 공인회계사법 제11조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6조 등
전 염 병 예 방 법	제56조(비밀누설죄)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 조 · 결핵예방법 제41조 등
금융실명거래에관 한법률	제5조(금융거래의 비밀보 장)	· 은행법 제26조 · 증권거래법 제59조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제 14 조 의 2(비밀 누 설 금 지)	· 아동복지법 제33조 · 모자보건법 제24조 등

가하고 있다. 컴퓨터의 악용으로 인하여 經濟的 價値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勞動者의 秘密遵守義務와 敬業피지의무가 고도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 기업내의 秩序違反으로서 노동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勞動의 手段인 컴퓨터기구나 정보기구가 그것을 사용하는 노동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行爲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므로 그 規制가 주요하다. 이 전자노동관리는 監視되는 勞動者나 勞動組合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기구나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勞動者의 채용, 해고, 전직, 출장, 과전등의 불이익에 대처하기 위하여 權利濫用禁止 및 正當事由必要의 法理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⁶⁴⁾

2. 情報의 行政法에의 影響

情報化社會의 진전은 行政의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촉구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變化가 그 본질이나 형태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展開될 것인가는 情報化社會가 구비하게 되는 과학적요건 및 문화적 요건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⁶⁵⁾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발달은 行政을 보다 위력적인 管理道具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반면 국민을 위한 奉仕的 方式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여하튼 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情報化社會의 가시적인 현상은 行政電算網의 구축에 따른 行政의 自動機械化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에 제1차 行政電算化基本計劃이 수립되면서 行政의 電算化가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84년에는 國家機關 電算網調整委員會를 구성하여 행정전산망의 구축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86년에는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64) 자세한 내용은 桑原昌宏, 「情報ネットワーク社會と比較勞動法」, *ジュリスト増刊* (ネットワーク社會と法), 1988, 108-117面 參照. 또한 韓相範, 「電氣通信事業의 民營化와 勞動問題」, *韓國公法學會*, 電氣通信法制的 整備方案(88電氣通信學術研究課題), 1988.12., 131-146面 參照.

65) 徐南源, 「情報社會에 있어서 行政變化」, *行政과 電算* 1988.12., 11面.

개발촉진을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자동기계의 이용과 보급에 의한 행정의 行爲形式이 전통적인 法治行政의 體系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며, 나아가 행정이 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여러 行政手段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情報化社會에 대응할 수 있게 여하히 再構成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⁶⁶⁾ 또한 행정기관 등 國家機關이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것이 行政計劃에 관한 行政意思의 決定시스템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⁶⁷⁾

3. 情報의 法學教育에의 影響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라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컴퓨터에 의한 法律學的 정보검색시스템의 도입 및 法學教育에의 컴퓨터도입이다. 법학연구에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法理論의 표준화와 法令의 통일적 정비 및 全法律體系의 재편성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⁶⁸⁾ 현재 法院行政處에 의해 司法業務電算化시스템作業이 진행중에 있으나,⁶⁹⁾ 금후 國民에 대한 문헌정보시스템의 충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색시스템은 실무상 유용하며, 또한 法學研究, 教育에도 유용하다. 나아가 統計手法등의 연구, 교육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의 法學教育現場에의 도입은 법학교육의 方法論的인 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학문분야 보다 法學

66) 이 점에 관한 상세한 것은 Peter Wedde, 「Verwaltungsautomation und Verfassung」, in : A.Roßnagal(Hrsg.), aaO., S.71f ; 金南辰, 「情報化 社會와 行政法體系의 再構成」, 月刊考試 1991.8., 97面 以下 ; 石琮顯,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行政의 自動化作用」, 月刊考試 1991.12., 67面 以下 參照.

67) 자세한 內容은 山村恒年, 「科學技術의 發展と行政法」, 公法研究(日本公法學會) 第53號, 1991, 139-160面 參照.

68) 權寧高, 「情報産業의 發達에 따른 法的 變化 - 컴퓨터를 중심으로 -」, 國家政策과 情報通信産業(중앙大 國家政策研究所 學術發表會), 1988.10.14., 9面 參照.

69) 法院行政處의 司法業務電算化의 현황에 대한 상세한 것은 노영보,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情報公開과 人權保障 - 사법업무전산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 -」, 韓國法學院, 法律學심포지움(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1991.12.5., 35面 以下 參照.

은 기본적으로 교육내용이 論理와 價値判斷을 중시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이용형태가 적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앞으로의 情報化社會의 진전은 法學教育에 있어서 컴퓨터가 거두는 역할과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增大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先進諸國에서는 컴퓨터와 법학교육의 관계에 관해 「法에 있어서 컴퓨터의 活用(Computer Applications in Law)」·「法學教育에 있어서 컴퓨터의 導入(Computer-Aided Legal Instruction)」등의 분야로 나누어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그것을 具體的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많은 檢討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⁷⁰⁾

第3節 앞으로의 課題

이상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른 개별영역에서의 政策과 立法的 措置의 문제를 개관하여 보았으나, 여기에서 논의한 것 이외에도 많은 多樣한 問題가 제기되고 있음은 여러 文獻에도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앞서 언급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는 경우 情報化社會의 전개는 우리의 憲法秩序와 價値體系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력을 肯定的으로 형성·발전시키고 국민의 權利와 民主主義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情報化社會의 진전과 그 적용이 가져올 각종의 障害要素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라 정보 및 통신기술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情報化社會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展開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 결과 그러한 障害要素에 대한 통제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구비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情報化社會를 지향한 매우 급속한 사회의 변화가 우리 憲法이 보장하고 있는 權利關係의 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에 대한 法的 對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70) 先進諸國에서의 法學教育의 컴퓨터이용현황은 武士亦敦, 「法學教育とコンピュータ」, 法學論叢(福岡大) 第35卷4號, 1991, 451面 以下 參照.

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른 副作用을 사전에 억제하고, 나아가 情報化社會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政府와 法學界 및 法曹實務界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情報關聯 政策의 一元化

情報化社會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情報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은 情報媒體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자유로운 정보의 생산 유통을 위하여 情報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사회의 情報化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政府는 정보기계산업 및 통신산업의 자유로운 競爭을 촉진하고, 國民에게 안전한 정보기계 및 통신수단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기구, 전기통신에 관한 企業間의 競爭에 적절한 規制를 행하며, 나아가 情報化社會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情報化社會의 逆機能的 要素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政府는 ①전문화 고도화된 情報化社會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管理役割의 遂行 ②情報化에의 대응을 위한 情報産業의 육성, 認識提高등 다양한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情報政策의 수립 ③情報化社會의 역기능적 요소의 적절한 統制등의 새로운 역할수행과 그에 따른 位相定立이 필요하게 되었다.⁷¹⁾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情報化社會로의 이행에 대해 政府는 각종 情報관련정책을 相關 部處別로 구체적으로 施行하고 있는 바, 所管部處別로 추진중에 있는 情報關聯政策의 概要를 살펴보면 [표-14]와 같다.

그러나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政府의 情報關聯産業의 지원을 위한 政策, 특히 情報산업의 育成·정보기술의 開發과 관련한 정책이 商工部·科學技術處·遞信部등 다양한 行政機關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어서 政策의 一元化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의 처리에 관해 어떤 行政機關의 책임하에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가 명확하지않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檢討하면 [표-15]·[표-

71) 金東炫, 「情報化社會와 行政體制의 變化管理」, 考試界 1992.2., 162面.

16]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산업의 育成 및 정보기술의 開發과 관련한 商工部·科學技術處·遞信部의 업무와 기능이 관련법제에 따라 상당히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情報關聯政策의 綜合調整機能」을 수행 할 수 있는 機構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綜合調整, 機構의 新設등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그것은 전부 국민의 權利保護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즉 國民本位의 정보정책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로 부터 만들어진 情報化政策」의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情報政策의 一元化는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내지 정보소관부서의 신설을 통하여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構想이 情報統制와 관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II. 情報化關聯法制的 體系化

현재 우리나라는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立法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立法化를 준비하고 있음은 이미 검토한 바이다. 그러나 情報關聯立法은 상호 복잡하게 관련하고 있으며, 立法政策으로서 統一的인 관점에서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야에서의 종합적인 고찰은 그다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現行情報關聯個別法 각각에 대한 정밀한 法技術的인 檢討와 병행하여 상호 관련이 있는 情報關係法의 體系性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立法의 原理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것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情報市場도 人間關係도 복잡화되면서 새로운 法的 規制와 권리·의무관계가 등장하게 된다. 나아가 個人과 國家 및 사회제집단상호간의 관계에도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法的 規律도 단편적·부분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現代情報化社會에 있어서 立法政策은 그러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한 바탕위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을 간과하여 情報關聯立法을 정립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상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立法의 취지를 상실하게 되어 원활한 情報關係를 阻害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情報關聯立法의 指導理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情

[표-14] <부처별 정보관련정책의 추진현황 개요>

정보화정책	내 용	소관부처	관 련 법 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정보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 시책의 추진	과학기술처	정보화사회 촉진법(안)
		상 공 부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체 신 부	정보·통신진흥법(안)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관련 산 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	정보산업의 육성 및 정 보기술의 개발·보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상 공 부	공업발전법 중소기업진흥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정보원법
		체 신 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화사회 의 역기능 방 지를 위한 정 책	컴퓨터관련범죄대책	법 무 부	형법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총 무 처	개인정보보호법(안)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 화 부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과 학 기 술 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 른 기업정보의 보호	상 공 부	부정경쟁방지법

[표-15] <법제면에서 본 소관부처별 정보산업정책업무>

부처명	소관 법률명	비 고
과 학 기 술 처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정보의 진흥
	기술개발촉진법	정보기술의 지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소프트웨어진흥사업 추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상 공 부	공업발전법	컴퓨터조직·프로그램개발업의 육성
	중소기업진흥법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우선업종의 육성
	산업기술정보원법	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및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체 신 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술개발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의 조기육성

[표-16] <개별시책면에서 본 소관부처의 정보산업정책업무>

분야	소관부처	개별시책의 내용	관련법명
정보기기제조 분야	상 공 부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육성	공업발전법
	과 기 처	정보기술의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체 신 부	정보통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기통신기본법
정보처리산업 분야	상 공 부	소프트웨어산업의 지도육성	공업발전법
		산업정보관련유통체제구축	산업기술정보원법
	과 기 처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체 신 부	정보처리관련기술개발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역무제공업	공중전기통신사업부
		정보통신사업의 조기육성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報化社會의 전개에 필요한 基本原則과 方向性을 제시하는 「情報基本法」의 체계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⁷²⁾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科學技術處·商工部·遞信部등에서 각각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필요한 基本원칙과 方向性을 제시한 基本法體系를 마련한 바 있었으나 關聯部處間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현재 立法化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든 情報化社會가 진전될수록 정보화관련 분야가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關聯法제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른 情報政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基本원칙을 정한 法制가 마련되어 情報諸立法의 지도이념을 체계적으로 定立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하여 情報化 자체의 대상영역이 광범위하고 이를 지원하는 關聯法律도 다 기화·세분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國家情報化를 추진하지 못하던 것을 바로 잡아서, 情報化의 올바른 수용과 사회적 기반조성 그리고 情報化의 역기능방지를 통한올바른 情報化社會의 定着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부처별로 별도로 마련한 情報化社會 基本法體系를 살펴보면 [표-17]과 같다.

III. 情報關聯法學의 學問體系의 樹立

최근 情報化社會의 전개에 따라 情報의 처리기능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모든 分野에 있어서 컴퓨터의 사용이 불가결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法學의 分野에서도 적용되어 컴퓨터가 法體系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中心體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기능은 이제 法秩序의 가장 내부에 까지 침투하였으며, 法體系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法學教育과 法實務에 활용되기에 이르렀다.⁷³⁾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權利概

72) 姜京根, 「情報化社會에서의 情報法の 意義와 內容」, 法學論叢(숭실대) 第5輯, 1990, 132面.

73) Bernhard Großfeld, 「Computer und Recht」, JZ 1984. 15/16, S.696f.

[표-17] <각 부처별로 마련한 정보화사회기본법(안)의 개요>

법 률 (안) 명	정보화사회촉진법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	정보·통신진흥법
주무부처	과학기술처	상공부	체신부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회 정의 · 정보화기본방향 · 정보윤리 · 정보화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회추진 위원회 - 정보화추진위원회 - 공공·공익·민간부문 정보화 - 정보기술개발 - 시스템공학연구 소설립 · 정보유통체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유통 촉진 및 지원 - 전문정보기관의 육성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 · 정보문화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보문화센터 설립 · 정보화의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위원회 - 관련부처별 실행계획의 수립 ·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기금 설치 ·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재단 설립 · 정보화사회의 진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의 이용 - 정보 및 정보화에 대한 보호 -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 정보문화 확산·정보화교육 - 정보산업발전기반조성시책강구 - 전산망구성·운영장려 - 정보화추진의 표준화 · 정보산업진흥의 기반의 지정 및 사업자단체의 설립 ·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의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정보통신진흥재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기관 단체의 육성지원 - 관련 산업체의 육성지원 - 전문인력양성지원 - 정보문화확산사업의 지원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타	제7장 36조 부칙 3조로 구성	제9장 35조 부칙 2조로 구성	제3장 28조 부칙 2조로 구성

念을 설정하여 새로운 시점에서 問題를 파악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情報法」 내지 「法情報學」이라는 학문영역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라는 정보기구와 관련한 法分野는 그것에 발생하는 법현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學問領域을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內容을 어떠한 分析시각에서 검토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하튼 이러한 法學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학문영역은 컴퓨터라는 정보기구와 관련하는 法分野와 情報의 발생으로부터 이용까지의 法現狀과 관련하는 法分野의 두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은 공통의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도 본격적인 情報化時代에 대응하는 이러한 學問領域의 發展傾向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⁷⁴⁾

74) 자세한 것은 Wilhelm Steimmüller, 「EDV und Recht. Einführung in die Rechtsinformatik」, Berlin 1970 ; Elmar Bund, 「Einführung in die Rechtsinformatik」, Heidelberg-Berlin 1990 ; 小林博志, 「情報法」, 法研論集(早稻田大學 大學院) 第43號, 1987 ; 堀部政男, 「情報法」, 法と政策 1982.12. ; 石村善助 外, 「法情報學要論」, 專修大學出版局 1991 ; 류인모, 「법정보학이란 무엇인가」, 法과 社會 第5號, 1992 參照.

第 2 部

情報化社會에 對備한
行政府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第 1 章 科學技術處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피 승 환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기술과 기계기좌)

第 1 節 序 言

최근 동구권의 몰락이후 탈냉전시대에 돌입한 세계는 군사력중심에서 經濟力과 技術力中心의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는 시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科學技術에 의존하는 技術霸權主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先進國은 自由·公正貿易·世界平和와 人類福祉 등을 표방하면서도 자국의 產業競爭力 確保를 위해 尖端技術開發은 국가주도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尖端技術의 國際的 優位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後發開發國의 技術追擊을 봉쇄하여 先進國 進入을 차단하는 「技術保護主義」政策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지난해 6월의 OECD 閣僚理事會의 「新國際技術秩序(案)」과 UR協商에서 서비스, 製造業, 農業, 資本, 勞動力 등은 自由公正交易을 확대하려는 반면에 技術만은 知的財產權이라는 이름으로 保護·獨占하겠다는 발상에서 실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先進技術의 導入과 核心部品輸入으로 經濟와 技術發展을 도모하겠다는 思考方式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만」이 갖는 獨創的 技術의 확보 없이는 우리의 生存權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21세기에 구현될 高度情報化 社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產·學·研이 협동하여 技術開發에 힘써야 할 것이며, 研究開發投資 擴大, 高級人力의 養成, 새로운 商品 및 서비스

의 開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社會·經濟的 諸問題 즉 教育, 醫療, 公害, 都市 過密化, 交通難, 資源의 最適配分 등을 완화 내지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는 情報化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情報化는 生産性向上 및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한 經營管理의 合理化 및 生産의 自動化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社會生活의 能率化, 合理化 및 社會福祉의 向上을 위한 社會 各 분야의 시스템화와 社會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기여하고 있다. 産業革命이 農業化社會를 工業化社會로의 이행에 분기점이었던 것처럼 情報化로 대변되는 情報革命은 情報化社會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開發途上國에서 情報化는 지속적인 高度成長의 유지,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先進國으로의 進入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第 2 節 情報化展開에 따른 政府의 主要政策

우리나라는 1993년 情報社會 形成期를 마치고 發展期를 거쳐 2000년대에는 高度 情報社會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國家 社會전반에 걸쳐 情報化의 促進으로 국민생활에서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 될 뿐만 아니라 高度化되어 국가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通信回線의 Digital화 및 전국적 보급으로 綜合情報通信網(ISDN)이 구축되며 國家基幹電算網의 구축과 情報通信基盤의 확충으로 인해 社會 各 분야에서 情報處理能力 및 效率성과 生産성이 고도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돌이켜보면 政府는 社會 및 産業의 情報化 구현에 목표를 두고 社會의 情報化 수용능력과 産業의 情報化 수준을 감안하여 196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情報化를 추진하여 왔다. 1960~1970년대에는 情報化의 基盤造成에 政策의 역점을 두고 정부주도로 情報處理 專門人力養成, 情報處理 標準制定, 政府流通體制 確立, 情報通信網 構築, 各種情報化 支援制度 確立 및 컴퓨터 마인드 擴散 事業 등을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社會 및 産業全般에 걸쳐 情報化 推進에 政策의 역점을 두고 성숙된 産業界의 바탕으로 民間自律機能에 의해 情報化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關聯法令整備 등 制度定着, 國家基幹電算網 構築을 통한 情報化 需要創出, 技

術開發支援 등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經濟政策의 큰 흐름은 과거의 財政, 稅制, 金融 등을 통해 全產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尖端產業, 有望成長產業, 知識產業 등 情報產業의 育成에 可用資源을 집중함으로써 2000년대를 향한 高度產業構造의 개편을 도모함으로써 情報化社會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1990년 7월 國家技術開發支援體制를 새롭게 정립하여 科學技術處는 핵심 원천기술, 첨단산업기술, 대형복합기술 등의 國策研究開發事業을 담당하고, 商工部, 動資部등 產業關聯部處는 생산기술, 현장기술등 단기간내에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產業關聯 技術開發事業을 전담토록하는 한편, 조화있는 國家研究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國家全體 研究事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종합평가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科學 및 產業技術發展 基本計劃」을 확정한 바 있다.

國策研究開發事業 對象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產業構造高度化 및 福祉社會具現을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產業部門, 公共福祉部門, 源泉要素技術部門의 尖端技術로 10대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동사업의 10대분야중 高度情報化 促進을 위한 「情報產業技術 研究開發事業」은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 받은 분야로서 超高集積半導體(16/64M DRAM), 超高速化合物半導體(GaAs), 高性能 슈퍼컴퓨터, 人工知能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生産自動化 技術 등 5개 課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第 3 節 科學技術處의 情報化關聯政策 推進現況

I. 情報產業 技術開發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PC, 프린터, 通信機器 등 情報化機器의 주요부품이 대부분 외국으로 부터의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소프트웨어는 附加價值가 높은 범용패키지 및 시스템소프트웨어의 경우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情報產業技術의 증속은 곧 未來社會에 있어서 발전의 원동력이자 가장

중요한 生存資源이라 할 수 있는 情報의 종속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政治·經濟의 종속으로 이루어져 한 國家의 주체인 삶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企業的 次元에서의 技術開發戰略에는 技術開發에 따른 불확실성과 危險負擔을 줄이기 위해 技術開發의 선도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선도자가 범한 과오를 補完·改善시켜 선도자를 뒤따르거나 앞서려는 전략과, 不確實성과 危險負擔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技術開發의 先導者가 되어 새로운 技術開發에 착수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려는 전략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安定과 利潤動機에 매우 민감한 기업으로 하여금 후자의 공격적인 戰略을 취하기 위해서는 不確實성과 危險負擔을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政府의 政策的 配慮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民間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技術開發의 과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大型 國策研究開發 프로젝트가 情報產業 各 분야별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1년도에는 行政電算網用 主電算機 開發, 人工知能 컴퓨터 開發, 16/64M DRAM 半導體 開發, GaAs 超高速 集積回路 開發, 소프트웨어 自動生産工程 開發 등의 國策研究開發課題에 16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2000년대까지 특정분야의 國內技術을 先進 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技術自立을 목표로 하는 「核心先導技術開發課題 (G7 프로젝트 事業)」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거쳐 政府計劃으로 확정하였으며, 동계획에는 2000년대 主力產業이 될 尖端製品을 선정하여 그 核心要素技術을 중점개발하는 「G7 製品技術開發事業」과 2000년까지 尖端製品 開發을 기대할 수 없으나, 경제 사회 발전과 삶의 질향상에 절대적으로 自力確保가 필요한 「G7 源泉基盤技術開發事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G7 製品技術開發事業」 7개 분야중 4개분야가 情報產業 關聯分野 즉, 人工知能컴퓨터, 高鮮明 TV, 廣大域 ISDN, 超高集積 半導體開發로서 情報產業分野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어느 타분야보다도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핵심선도기술개발과제와 개발목표〉

구 분	과 제 명	단 계 별 개 발 목 표
차세대제품 기술개발	1.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2.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ISDN)개발 3. 고선명 TV(HDTV) 개발 4. 전기자동차 개발 5. 인공지능컴퓨터 개발 6. 신의약·신농약 개발 7.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 '93년 64메가디램개발 - '96년 256메가디램개발 - 2000년 1기가디램개발 - '96년 ATM관련 기술개발 - 2001년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구축 - '93년 HDTV수상기 기술확보 - '94년 전송 방송기술개발 - '95년 축전지 및 고속충전장치 개발 - '96년 시판가능한 전기자동차 개발 - '97년 신경망 지식추론형 컴퓨터 개발 - 2000년 동시통역컴퓨터 개발 - '97년 항생 살균 신물질 개발 - '94년 초정밀 가공시스템 - '96년 통합제조시스템 개발 - 2000년 지능화생산시스템 개발
원천기반 기술개발	8. 정보·전자·에너지 첨단 소재 기술 9. 차세대 수송기계· 부품기술 10. 신기능 생물소재기술 11. 환경공학기술 12. 신에너지기술 13. 신형원자로 설계 및 실증연구 14. 감성공학기술	- 고기능·고효율·고부가가치 및 에너지 절약형 신소재기술개발 - 전자화·자동화관련 엔진·부품 기술 등 - 생물공업 및 농업분야의 신생물자원 기술등 - 청정기술, CFC대체물질, 수질오염방지 기술등 -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및 변환 기술 등 - 2006년 실용화를 목표로 한 신형원자로 설계 및 제작관련 기술 - 센서 및 생체계측기술, 미니로봇기술 등

II. 소프트웨어産業育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産業 賣出額은 1986년 이후 연평균 63%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도 GNP(237,900백만불)의 0.34% (817백만불)에 불과하여 아직은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사무계산등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開發段階에 접어들었으나 研究開發用的 고급응용소프트웨어나 運營體制(OS)등 核心소프트웨어는 基礎段階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1985년이후 소프트웨어업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資本金 1억 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약 40%, 종업원 100명 미만이 86.2%로 매우 영세한 상태이다.

〈자본금 자본금 규모별 소프트웨어 업체수〉

년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5억원미만	5억원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1986	82	118	96	13	43	352
1987	98	130	106	10	48	392
1988	70	183	151	15	44	463
1989	58	254	225	23	55	615
1990	55	262	247	28	62	654
1991	55	230	299	40	78	702

제도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업이 製造業과 같이 生産型 産業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産業으로 분류되어 金融, 稅制, 行政支援制度에서 불합리한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技術人力 不足과 高級開發人力 不足으로 大量需要를 일으킬 만한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尖端소프트웨어를 外國수입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科學技術處는 情報産業의 核心이면서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프트웨어産業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育成·定着할 수 있도록 하고 技術力을 提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開發促進法」을 근거로하여 필요한 支援施策과 制度的 措置를 추진중에 있다.

無體財産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正當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開發費 算定基準」('89)을, 소프트웨어에 대한 品質保證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品質向上과 信賴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品質保證基準」('91)을 制定·告示 하였으며, 현재의 소프트웨어 技術水準提高를 위하여 研究開發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해주는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稅制支援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분야 技術開發支援 및 製造業 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國策연구과제 21개(38억원), 연구조합과제 18개(24억원)등 소프트웨어산업분야 特種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TDX事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民間技術移轉事業의 實施를 추진한 바 있다.

금년에는 영세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入札 및 契約履行 保證, 品質保證 및 維持補修履行保證 등 각종 保證活動과 資金支援活動을 수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개발에 따른 開發者, 發走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 產業界의 자주적인 經濟活動을 보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共濟事業」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마인드」 정착을 위한 弘報活動을 強化하고 소프트웨어 開發費 산정기준도 인건비 등 일부 현실에 不適合部分을 適正水準으로 조정할 것이다.

III. 科學技術情報 流通體制構築

최근 國際技術競爭의 격화에 따라 科學技術革新에 있어서 深層技術情報의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요한 요소로 技術情報의 需要形態도 종래의 文獻情報, 論文 등 일반 공개 정보위주에서 設計圖面, 企業秘密 등 深層技術情報로 전환되어 專門·多樣化되고 있다. 科學技術情報은 科學技術 선진 7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科學技術研究分野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科學技術情報流通事業을 G7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본격추진중에 있는데, 1990년에 구체적인 體制와 方案을 수립하여 1991년 2월에는 시스템工學研究所內에 科學技術情報流通產業團을 설

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91년 6월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出捐研究所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현재에는 10개 出捐研究所 등이 보유하고 있는 科學技術分野 綜合圖書 DB 7,400여건을 비롯하여 國內 科學技術者人名 DB 등 15개 분야의 총 13만 4천여건의 情報가 入力·加工되어 유통되고 있다.

금년에는 15개이상의 出捐研究所로 그 대상을 넓히고 20개 이상의 분야로DB를 擴大, 약 26만건 이상의 情報를 蓄積·加工하여 유통할 계획이며, 시스템工學研究所를 중심으로 개발된 尖端研究成果를 활용하여 科學技術情報流通事業을 보다 질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科學技術情報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産業技術情報院, 시스템工學研究所, 國防技術情報센터 등 關聯機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금년 상반기에 동경, 모스크바 등 주요 거점지역에 「海外科學技術情報센터」를 設立 運營할 計劃으로 있다.

그리고 科學技術情報가 효율적으로 유통되도록 專門分野別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構築하고 研究電算網에 연결하며, 國家가 지정한 管理機關등에 대하여는 情報通信回線利用料의 30% 減免을 추진할 것이다.

IV. 研究電算網構築

“2000년대 초까지 世界 頂上水準의 電算化를 達成”한다는 목표하에 1988년 부터 착수된 國家基幹電算網은 行政網·金融網·教育研究網·國防網·公安網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教育研究電算網은 電算網調整委員會 議決(1988.12)로 教育部門과 研究部門으로 분리되어 研究網은 科學技術處가 주관기관이 되고 시스템工學研究所를 전담사업자로 하여 수행하고 있다.

研究電算網은 教育研究機關間的 효율적인 電算資源 共同體制를 확립하고 研究開發活動에 필요한 國內의 最新學術 및 研究資料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며, 示範研究網構築, 研究電算網定着 및 서비스強化, 教育研究電算網 擴散段階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991년말 현재 제1단계事業인 示範研究網의 構築이 완료되었으며,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科學技術情報流通體制 構築과 연계함으로서 研究電算網의 構築 및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제2단계 事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계별 연구전산망 구축계획〉

단 계 별	추진 내용
제1단계('88~'90): 시험연구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연구단지내의 연구기관등 상호연결(15개기관) ○ 서울-대덕간 고속통신로 개설(T1:1,544Mbps) ○ 대덕-창원간 연구기관(기계 및 전기연구소) 상호연결 ○ 연구분야의 국내 전산망 상호연동(UANA/SDN, KIETLine, DACOM Net 연동) ○ 해외네트워크연결 및 시험서비스 (미국 INTERNet, NSF Net) ○ OSI 표준 프로토콜 구현 시험 ○ 슈퍼컴퓨터 S/W 및 H/W 서비스개시 ○ 출연연구기관 과학도서 및 연구정보 시험서비스
제2단계('91~'93): 연구전산망 정착 및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별 VAN 구축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지역 전산지원센터 및 네트워크 센터설치운영 ○ 해외 연구망과의 전용회선 지원 ○ 초고속 중앙 전산기의 추가 확보 서비스 ○ 표준 전산망 구성 및 표준화관련 서비스 개발 ○ 출연연구기관 과학도서 상호검색 지원 ○ 기존 연구관련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체제 확립
제3단계('94~'96): 교육전산망 확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간 전산망(교육전산망)과의 연계 운영 준비 ○ 주요 지역간(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고속전용회선 서비스 ○ 대덕단지내 고속 광케이블망 구축 서비스 완성 ○ 연구분야별 부가가치망 기능 확산 정착 ○ 해외연구망간의 고속 전용회선 ○ 표준 프로토콜 서비스강화 및 망관리 기술정착 ○ 지역전산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V. 知的財産權保護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美國, EC 등 先進國은 서비스, 製造業, 農業, 資本 등에 대해 自由·公正貿易을 擴大하려는 반면 技術은 知的財産權이라는 무기로 하여 各種 通商壓力을 強化해 오고 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先進技術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先進國과 高度技術交易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知的財産權 保護問題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知的財産權保護制度 實施가 불가피하다고 보나 단지 關聯產業界의 충격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産業育成 및 技術自立力確保 등 필요한 補完措置를 병행해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科技處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保護를 위하여 1987년도에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법제정당시 컴퓨터프로그램을 著作權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호하게 됨에 따라 技術에 있어 후발의 입장에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産業界가 더욱 위축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4년여기간이 경과한 현재 소프트웨어업체의 自體技術開發能力이 활발하여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프로그램 創作意慾이 높아지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不法複製 王國이라는 오명을 벗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컴퓨터프로그램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당초 科學技術處에서 管理運營하였으나, 行政 簡素化의 政府方針에 따라 일부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1988.11.1부터 「韓國情報産業聯合會」가 登錄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등록 현황〉

년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건 수	154	833	1,454	2,166	2,634	7,241
전년대비 증감율(%)			74.6	49.0	21.6	

주) 1987년도는 9~12월까지 등록된 프로그램 건수임.

VI. 專門人力 養成

情報化 推進을 담당하는 情報處理 專門人力의 供給은 情報化 初期段階에서 단기적으로 컴퓨터 메이커 및 社會教育 등에 의존하였으나, 研究開發의 실질적 추진주체가 되는 高級人力의 確保가 이루어져야 情報産業의 持續的인 發展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製造業과 함께 情報處理 人力難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情報處理 人力 需要는 情報化 促進으로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科技處는 高級人力의 養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에는 시스템工學研究所의 情報處理 人力養成 프로그램을 講師要員養成, 產業界 人力 再教育 등 분야와 대상을 專門化, 細分化하였고, 대전, 부산에 이어 대구에도 地方分院을 설치하여 앞으로의 地方化 時代에 대비하였다.

앞으로는 高級人力養成을 위해 韓國科學技術院에 2년제 전문석사과정을 신설하여 1991년의 년 200명 규모에서 2000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하고, 大學의 優秀研究集團, 특히 ERC를 통한 人力養成機能을 活性化 할 계획이다. 또한 高級 失業人力에 대한 短期 集中專門教育 및 기존 소프트웨어 産業人力에 대한 再教育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을 보다 체계적으로 養成하기 위하여 1993년까지 시스템工學研究所의 人力養成규모를 현재의 2,5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1995년까지는 시스템工學研究所의 人力養成機能을 「情報技術院」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VII. 컴퓨터마인드의 擴散

초·중·고교 학생의 컴퓨터 活用能力 提高 및 情報化 마인드擴散으로 情報化 社會基盤을 조성하고 컴퓨터 教育 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1984년부터 매년 「全國퍼스널컴퓨터競進大會」를 실시하여 1991년 제8회 대회까지 82,000여명이 참가하여 퍼스널컴퓨터의 持續的인 보급과 利用技術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경진대회에 힘입어 근년 7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되는 「國際情報올림픽」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컴퓨터에 의한 文化財 復元 Graphic팩키지를 發掘 普及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文化財 復元事業」을 추진하여 작년 11월 미륵사

지석탑, 부석사무량수전 복원 중간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오랜 傳統文化 遺跡物과 최신의 컴퓨터를 잘 조화시킨 事業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금년부터는 「景福宮復元事業」을 추진하여 199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다.

第 4 節 科學技術處의 情報化 關聯政策에 다른 法的 課題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振興法」 제10조 2에 科學技術情報 機關育成 및 流通體制確立, 電子計算組織의 導入·利用技術의 開發·情報處理要員의 養成, 情報技術의 開發과 情報產業育成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法的根據에 따라 1986년에 컴퓨터 프로그램著作物의 著作者的 權利保護와 公正利用을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그리고 「소프트웨어 開發促進法」을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은 대외적인 차원에 외국소프트웨어의 不法複製國이라는 나쁜 인상을 불식시키고 외국소프트웨어를 적정보호해 줌으로써 互惠的인 技術協力の 誘導 및 新技術開發을 促進하는 한편 外國과의 마찰 및 이에 따른 不利益을 피하면서 방대한 世界情報產業 市場進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대내적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開發者의 權益保護와 先行投資者의 開發費 還收機會를 부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開發意慾의 鼓吹 및 流通促進, 소프트웨어產業의 과감한 體質改善에 따른 소프트웨어 技術의 조속한 향상 및 對外競爭力의 強化促進, 無體財産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價値認識 風土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성격이 유사한 著作權法을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立法을 하게 된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文化暢達的 側面보다는 尖端技術과 關聯되는 經濟材이므로 情報事業育成 등 產業政策上의 次元에서 보호·육성하여야 할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고, 著作權法에 규정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產業育成條項, 流通促進條項, 소프트웨어技術移轉, 프로그램의 品質保證 등 우리나라 소프트웨어產業育成을 위해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情報組

織上 一般著作物은 文化部가 관장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는 科學技術處가 관장하는 二元體制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著作權法으로 보호할 경우의 技術的, 行政的 어려움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은 1986년도에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을 制定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國內產業界가 소프트웨어의 保護 및 對外 개방에 따른 소프트웨어産業 育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며 따라, 이와 같은 產業界의 요구를 수렴하여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에 소프트웨어産業育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對美通商 摩擦 緩和 및 權利保護와 育成條項의 混合에 따라 法體制上의 問題 때문에 별도로 立法을 추진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情報産業關聯 法令中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은 지난 4년간 시행한 결과 국민의 知的財産權 保護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나 法의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램登錄의 효과이다. 즉, 現行法에 의한 프로그램의 登錄이 프로그램保護의 요건이 아니고 創作日의 추정효과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정도에 불과하므로, 登錄을 권장 유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할 수 없고 紛爭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著作權侵害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둘째, 프로그램복제여부를 심사해 줄 公認 專門審査機關을 지정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없는 점이다. 現行法에서 著作權侵害가 발생하였을 경우 著作權者는 一般訴訟節次에 의하여 侵害者를 고발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著作權侵害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高度의 專門技術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사건을 처리하는 法院 또는 檢察에서 감정의견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專門機關이 있다하더라도 분쟁이 개입된 후에 侵害與否에 대한 감정의견 제시를 꺼려하고 法院이나 檢察의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전문기관의 감정의견을 받지 않고는 事件을 처리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셋째, 著作權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一般訴訟節次에 따른 소송제기 이전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 줄 著作權 紛爭制度의 導入이 필요하다. 現行

法에서는 「프로그램 審議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著作權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프로그램의 利用·流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단순행정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쟁을 調整하거나 프로그램을 鑑定할 수 없다. 프로그램 複製紛爭에 관하여는 民·刑事法에 의한 一般訴訟節次나 調停節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法院이나 檢察 등에서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技術的·專門的 知識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事件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著作權審議調整委員會에서는 一般著作物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하는 반면에 이보다 더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프로그램著作權 분쟁을 모두 法院이나 檢察에 맡기는 것은 실질적인 保護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넷째, 프로그램創作者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使用者의 권익을 保護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 現行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은 프로그램創作者(著作權者)의 權利를 保護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제정된 法律이지만 創作者의 權利를 保護하는 규정위주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使用者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주 미흡하다. 물론 정당한 프로그램을 정당한 節次와 方法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不法複製한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사용한 使用者도 처벌당할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이 없다. 일본 著作權法에서는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를 그 점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著作權의 侵害行爲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法 제 113조 제2항), 이는 著作權者의 權利를 보호하는 반면 使用者의 權利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우리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行政府가 著作權侵害에 대한 行政指導, 是正命令, 刑事告發, 過怠料 賦課 등의 行政措置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現行法에서는 著作權 侵害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고소제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즉 親告罪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行政府가 行政指導 是正命令, 過怠料 賦課 등을 통한 침해단속에 개입할 수 없으며, 法院이나 檢察 등 사법기관의 처리에 맡기는 消極的인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權 保護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소프트웨어의 開發·利用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法改正을 완료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컴퓨터역기능, 컴퓨터바이러스, 個人情報 保護 등에 대한 法的 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第 5 節 結 語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國家의 번영과 발전은 高度의 情報處理能力, 國民 個人 및 組織의 높은 生産性 그리고 우리만이 갖는 獨創的 技術力에 의한 經濟的 能力과 미래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을 통하여 결정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情報産業技術의 發展과 이의 普遍的 활용 및 高度化를 통한 情報化社會의 달성은 開發途上國 내지는 中進國의 굴레를 벗고 2000년대에「先進國圈 進入」이라는 國家的 念願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國家全體의인 차원에서 研究資源의 결집과 最適配分 및 活用, 효율적인 研究開發體制 및 投資與件 구축, 知的財產權 保護制度의 확립, 외국과의 技術協力 強化, 그리고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情報化社會에 국민 모두가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基盤造成 등 여러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獨創的인 技術開發能力 確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第 2 章 文化部の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데이터베이스産業의 問題와 法的 保護方案을 중심으로 —

박 문 석
(문화부 저작권과장)

第 1 節 問題의 提起

20세기 중반이후에 들어 電子技術의 비약적인 발전은 산업계는 물론 情報文化界 및 國民文化生活에 새로운 물결로 심대한 충격과를 던져주고 있다.

情報과 의사의 대중전달 및 유통의 方式 및 體系에 있어서 종래 인쇄 내지 活字媒體에만 의존하던 입장에서는 그 전달의 瞬間性和 情報量의 多量性面에서 상상키 어려웠던 변화와 발전이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第3의 革命 또는 情報革命이라는 이름하에서 말이다.

이와 같은 尖端電子技術의 비약적 발전에 의거하는 情報革命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지만 앞으로 일반대중의 일상생활 意思決定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DB)에 의한 情報傳達體系이다. 즉, DB는 情報革命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DB는 後期産業社會에 있어서 인간의 文化를 한 차원 높게 변혁시킬 수 있는 무한한 潛在可能性을 가진 새로운 挑戰現象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간생활에 革命的 變化를 초래할 수 있는 DB는 거

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단한 創造的 勞力과 그러한 精神的· 創造的 成果를 현실에 응용접목시키는 막대한 산업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對象인 것이다. 이렇게 제작 생산된 DB가 동시에 그 用者에게 그 이용의 迅速性 및 便益性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DB는 이미 DB로서의 效用性을 상실케 된다. 이와같이 DB는 그 製作 生産側面과 신속 편리한 利用側面을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되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實體이다.

따라서 법이 DB를 保護對象으로 해야 할 경우 DB의 어떠한 측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保護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즉, DB중 保護 받아야만 되는 측면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첫째 힘든 창조적 노력과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製作生産者의 權利·義務, 둘째로 利用에 제공된 DB의 利用者의 權利·義務, 세째 情報分配·流通過程에 참여하는 事業者의 權利·義務, 네째 이들 다수의 權利·義務者間的 역할의 衡平調整問題 등이 있다.

그러므로 DB의 法的保護에 있어서 가장 問題되는 점은 DB를 法的으로 保護해야 할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있는가, 그 法的保護對象의 구체적 실체는 무엇인가, 그 구체적 실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保護하는 것이 다수의 法的利害當事者間的 이해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조절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保護하는 것이 DB산업의 발전과 DB創作者 내지 製作者에게 유리한가 등을 決定하는 것이다.

DB의 法的保護의 方法을 논함에 있어서 先決問題는 DB의 구조와 특성 및 그에 따라 일어나는 구체적 현상을 정확히 究明하는 것이다. 이 점이 先決되지 않고는 DB의 무엇을 保護對象으로 할 것인가, 그 保護對象을 어떤방법으로 保護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 해결이 法的妥當性 및 合理性을 벗어나서 誤導되어 DB의 제작, 이용에 관계하는 利害當事者 모두에게 不測의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第2節 DB概念의 理解

I. DB의 意義

DB에 관하여 우리 著作權法이나 기타 知的所有權에 관한 國內 實定法上 명문으로 定義내려진 바는 없다. 國際協約중에도 DB에 관하여 직접적인 定義를 내린 規定은 없다. 다만 日本著作權法 제2조(正義) 제4조(著作物의 公表) 제12조의 2(데이터베이스 著作物) 및 제23조(放送權, 有線送信權 등) 등에만 명시적인 定義規定이 있을 뿐이다.¹⁾ 때문에 DB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하여는 國際機構 및 各國에서의 논의·판례·學術書籍 등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그 개념내용을 정할 수 밖에 없다.

DB에 관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一般的 概念 중 첫째, 廣義에 있어서 「일정한 체제하에 정리 통합된 情報의 集合體 또는 시스템 전체로서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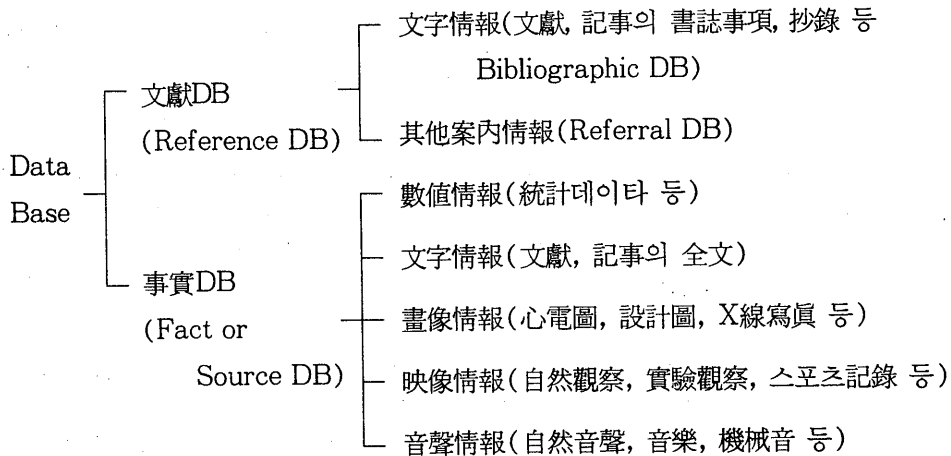
- 1) 日本著作權法 「제2조(定義) 데이터베이스: 情報資料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檢索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論文, 數值, 圖形, 기타 情報資料의 集合場을 말한다. 「제4조(著作物의 公表) ④ 제12조의 2 제1항에 規定된 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規定된 권리를 갖거나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公衆의 要請에 따라 有線送信의 방법으로 公衆에게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公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 2(데이터베이스 著作物) ① 데이터베이스로서 情報의 선택은 具體的인 構成에 의하여 創作性을 갖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② 전항의 規定은 同項의 데이터베이스의 部分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放送權, 有線送信權 등)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放送 또는 有線送信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자는 放送되거나 또는 有線送信되는 그 저작물을 受信裝置을 이용하여 公衆에게 傳達하는 권리를 갖는다.」

위 조항들은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受容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들로서, 먼저 제4조의 공표에 관한 規定에서 “공중의 요청에 따라”라고 한 것은 방송에서의 소극적인 측면 즉, 수신자가 일방적으로 받아보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신자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는 적극적인 측면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제23조에서 有線送信權을 規定하여,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수신하게 할 目的으로”하는 放送(제2조 9~2호 有線放送의 정의 참조)보다는 넓은 概念을 採擇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으로 送信할 경우에 대비하여 包括的인 立法을 한 것이다.

가 판독할 수 있는가를 불문한다」는 의미와 둘째, 狹義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 통합한 情報의 集合體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檢索이 가능하도록 體系的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위 첫째의 廣義의 경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情報의 集合體에 대하여는 종래의 編輯物과 다를 바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保護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둘째 狹義의 意味로 이해되고 있다.

II. DB의 構成形態

DB의 構成形態는 분류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分類될 수 있으나 DB를 통한 著作物의 類型 내지 特性을 감지할 수 있는 CUADRA (Cuadra Associates, Inc)에서 分類한 것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III. DB의 構造

本稿에서 DB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DB의 技術的·工學的 構造와 그 權威原理에 관한 技術的 思想을 究明하는 데에 있지 않고 - 비록 DB의 技術公學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 어디까지나 著作物로서의 DB保護방안의 探究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DB의 구조의 개념도 DB의 技術工學的 構成內容 내지 構成原理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DB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對象物(Substantial Object)이 어떠한 構成部分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미의 개념이다.

앞서 정의를 내린 바와 같이 DB는 電磁氣 또는 컴퓨터에 입력된 資料自體 즉 Software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法概念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때로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인 DB이외에, DB가 입력기억되어 있는 Hardware로서의 技術的인 裝置(Technical equipments)와 檢索, 利用시에 그 裝置내에서 입력된 소프트웨어(DB)를 檢索利用토록 指令, 選擇하는 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하여 이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DB가 入力된 컴퓨터 내지 電子裝置와 DB를 出力케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技術的으로도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들 상호간은 法的思惟의 世界에서는 엄격히 구분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들 상호간의 개념혼란 및 혼동사용은 DB의 法的保護對象(法的保護의 客體)의 劃定을 곤란케하고 나아가서는 그 保護방법의 강구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IV. DB의 製作方法 및 節次

DB製作節次는 크게 3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첫단계는 DB生産段階로서 데이터의 수집·정리·입력이고, 둘째단계는 DB의 流通段階로서 데이터의 電算編輯, 配布 등이며, 세째단계는 DB의 利用段階로서 通信網, PC, FAX 등 端末機이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①資料蒐集, ②資料整理, ③資料加工(Code 부여·Keyword抽出·要約 등), ④資料入力, ⑤DB System開發(입력·갱신·編輯·檢索·통신프로그램개발), ⑥通信網 連結, ⑦情報檢索 및 活用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7단계에서 ①·②·③·④단계는 DB의 製作生産段階이며, 이 과정은 情報提供機關(Information Producer; IP)이 담당하고, ⑤·⑥단계는 分配機關(Distributor or Vendor)이 담당하고, ⑦단계는 DB를 利用者가 이용하는 단계이다.

本稿의 목적이 DB의 電子技術的인 제작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성원리를 해설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細部技術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DB의 製作, 配布, 利用의 각 단계 내지 절차에서 나

중에 法的保護의 對象과 方法에 있어서 高찰의 對象이 되는 사항들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流通段階에서 고려되는 주요사항은 DB 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配布方法, 通信方法 등이다. DB MS는 응용프로그램들이 DB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DB의 구성, 접근방법 및 관리유지를 지원한다. DB의 配布方法은 Off-line방식과 On-line방식이 있는데 PC 등의 대량보급에 따라 향후 거의 모든 DB는 On-line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통신망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즉 ①特定通信回線(터미널과 서비스시스템 직접연결), ②電話網(서비스 시스템에 전화다이얼 연결), ③公衆情報通信網(DACOM제공 통신 Package), ④公衆情報通信網과 電話網 並行方式 등이다. 이용단계에 있어서 큰 과제는 利用者의 신속, 편리한 이용방법개발이다. 현행DB의 큰 문제는 ①端末機操作方法의 難解, ②DB시스템 相互間의 檢索言語相異, ③DB의 基礎인 情報데이터의 不足 등이 지적되고 있다.

V. DB의 特性

DB는 生産段階에서는 DB編輯著作者의 知的(精神的) 創造力과 電子 내지 通信工學的 技術이 요구되고, 流通段階에서는 高도의 相關公學적 技術性이 필요하며, 이용단계에서는 단시간내에 손쉽게 대량의 情報가 利用者의 요구에 부응하여 출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DB는 인간의 精神的 創造性, 高度의 技術性, DB內容變更의 短期容易性, 情報傳達의 大量迅速性, 情報接近의 容易성과 이에 따르는 侵害의 容易性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第 3 節 DB의 法的保護

I. DB의 法的保護 必要性

PC보급과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화 되고 情報通信網이 가정의 구석구석에 까지 이들의 활용없이 가정생활 내지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

게되는 情報社會의 도래가 목전에 예견되고 있다. 情報社會의 특징은 情報의 대량성과 情報傳達의 신속성에 있는 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DB이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는 DB가 情報社會를 주도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다음에 검토되겠지만 DB는 著作物性과 技術性을 공유하고 있는 실체이다. 따라서 DB는 傳統的인 著作物과는 달리 그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그 이용되는 情報量이 각 분야를 망라하여 막대하며, 그 侵害가 신속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더구나 電子出版, 電子圖書館 등이 출현한다면 그 새로운 현상이 法的挑戰은 예측을 불허한다. 또한 유용하고 편리한 DB의 제작개발 보급에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힘든 창조적 노력과 막대한 투자로 이루어지는 DB의 製作生産者 및 配布普及者는 당연히 일반공중의 無斷利用으로부터 그 權利를 保護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완벽한 法的 保護制度가 갖추어짐으로써 製作者는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利用者는 공정한 이용의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즉, DB의 法的保護에 있어서는 그 製作者와 利用者間의 이해의 형평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DB산업의 초기단계에 와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초기에 法的 뒷받침이 부실할 경우에 심각한 논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II. DB保護의 法的 課題

DB에 대한 法的保護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DB를 法的으로 保護함에 있어서 法的으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즉 ①DB의 構成物중 무엇이 法的保護의 對象(法的保護의 客體)이 되는가 ②그 法的性格이 무엇이며, 그 法的性格에 따라 어떠한 法 내지 法體系로 保護되어야 할 것인가 ③DB의 權利單位는 어떻게 決定해야 하는가 ④DB의 權利主體는 누구인가 ⑤DB의 製作者, 分配普及者, 利用者間의 이해의 조정 및 그 방법은 무엇인가 ⑥DB의 權利主體가 갖는 權利의 內容은 무엇인가 ⑦權利의 保護期間은 언제까지이며, 그 權利는 무제한의 權利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權利인가 등의 해결과제가 있다.

III. DB保護의 國際的 趨勢와 判例

1. 國際的 趨勢

(1) 國際機構

1987년 12월 UNESCO 및 WIOP合同 「印刷物에 관한 情報專門家委員會」의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 DB에 수록된 資料가 保護받는 著作物일 경우 당연히 著作權으로 보호한다(複製·貸與·放送·畫像·公衆傳達 및 著作人格權 등).
- DB收錄資料가 보호받는 著作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자데이터베이스는 그 내용의 선택, 조정 및 배열로 인하여 知的 創作物을 구성함으로 著作權으로 保護하되 DB에 수록된 著作物의 著作權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美國

1978년 CONTU(DB소위원회)보고서에서는, DB는 編輯著作物이며 著作權保護對象으로 컴퓨터 記憶裝置에 입력하는 것은 複製의 한 형태로 보며, DB의 상당부분을 출력, 複製하는 것은 著作權侵害이나 公正使用(Fair Use)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著作權法 제101조에서는 「編輯著作物이란 기존의 資料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著作物로서, 그러한 資料나 데이터를 선택, 정리 또는 배열하여 생겨난 著作物 전체가 독창적인 著作物이 된다」고 하여 DB의 編輯著作物性を 인정하고 있다.

(3) 日本

1986년 著作權法 改正에서 「DB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檢索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논문, 수치, 도형 기타 情報의 集合物」로 정의한 후, DB로서 情報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創作性を 갖는 것은 著作物로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4) 英國·獨逸·프랑스 등 유럽

DB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著作權法上 編輯著作物로 보호하고 있다.

2. 判例

DB의 작성 配布過程에서 발행한 權利侵害問題에 대한 프랑스의 판례가 있는데 「Microfor 대 Le Monde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퀘벡주에 주사무소를 둔 Microfor라는 索引目錄出版會社가 Le Monde 등 프랑스 언론에 발표된 주요기사를 索引化, 內容要約 등의 형태로 DB를 작성 배포하였다. 이에 대해 Le Monde社는 동사의 기사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파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하였는데 지방법원의 판결요지는 「索引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일부 複製이므로 著作者的 허락없이 이를 작성하는 것은 著作權 侵害가 된다」고 하였다. 高等法院에서도 이 판결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복한 Microfor는 프랑스 최고법원에 상고하여 1983년 11월 9일에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프랑스 최고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著作者是 著作物 전체에 대한 權利를 갖는 것이지 著作物을 구성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權利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著作物의 索引作成은 著作權侵害라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에서 기사의 요약형태는 資料的인 목적의 요약으로서, 그 요약만을 읽고 著作物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不法은 아니다. ③ DB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蒐集·整理·配列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著作權法上 創作性的의 要件에 부합되기 때문에 DB는 著作權法에 의해 보호받는다」.

VI. DB의 法的 保護對象과 그 法的 性格

1. 法的 保護對象

DB의 構成物중 무엇이 法的保護의 對象(法的保護의 客體)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DB概念의 廣狹과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DB를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그 法的保護의 對象은 ①DB를 담고 있는 주컴퓨터 또는 入力·記憶·出力의 電子回路 내지 裝置 또는 電磁氣 및 CD디스크등의 하드웨어, ②DBMS, 배포, 通信方法 및 檢索方

法 등의 프로그램, ③DB에 수록된 情報 내지 資料, ④DB自體(데이터를 수집, 정리, 통합한 情報의 집합체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檢索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자체) 등이다. 그리고 DB를 협의로 이해한다면 위에서 ③ 및 ④의 경우만 해당이 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DB를 엄격하게 협의로 이해하여 ③ 및 ④만을 對象으로 그 法的保護문제를 취급하기로 하겠다.

2. 保護對象의 法的 性格

앞에서 이야기한 法的保護對象中 ①은 그 法的性格이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물건의 發明(裝置發明)이나 방법의 發明(이용, 사용방법)으로서 특허법에 의한 特許權으로서의 登錄對象이다. 그리고 위의 ②는 그 法的性格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서 裝置의 發明이나 著作物로서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에 의거한 登錄對象이 된다. 또한 위의 ③은 著作權의 對象인 著作物인 바, 著作物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著作權法의 규정대로 ③이 獨創性을 가져야 한다. ③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학술논문이나 신문기사, 법령 등의 全文(Full Text)을 수록할 수도 있고 그 抄錄(Abstract)이나 요약(Summary)일 수도 있고, 학술논문 등을 주제별, 저자별, 제호별로 구분한 索引(Index)형태의 書誌情報일 수도 있다. 이중에 어떠한 형태는 著作權法上 著作物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면 抄錄이나 요약중에서 어떠한 것에 著作物性이 인정되고, 어떠한 것은 著作物性이 인정되지 않는가. 첫째, 抄錄이 著作權法 제25조의 인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著作財產權의 保護될 여지는 없다. 제25조에 의하면 「公表된 著作物은 報道, 批評, 敎育, 研究 등을 위하여는 正當한 범위안에서 公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抄錄이 인용의 한계를 넘는 본래 의미의 抄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著作權 保護여부는 각국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公正使用(Fair use)과 관련하여 利用者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유럽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은 抄錄에 나타난 情報가 全文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 따라서 全文을 싣고 있

는 複製物 등이 그 판매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抄錄의 著作物性은 인정된다 하겠다(Ulmer, 1972. 9. 25). 세째, 抄錄이 著作權法 제5조에 규정된 2차적 著作物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獨創性이 인정되는 경우에 원저작물의 著作權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개의 著作物로서 保護받을 수 있다. 네째, 索引의 형태로 된 文獻데이터(Bibliographic Data)나 수치데이터(Numeric Data)에는 著作物性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著作者名, 題號, 出版社, 發行年度 등의 文獻情報나 統計數值 등이 담겨져 있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獨創性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982년 政府專門家委員會 報告書에 나타난 권고에 의하더라도 文獻데이터 등의 著作物性은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앞의 관례참고).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도표, 다이어그램 등의 형태로 독창적으로 가공된 경우에는 著作物性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④, 즉 DB자체가 著作權의 保護對象이 되느냐가 심각한 논쟁의 對象이 되고 있는 바, 본고의 초점도 이 문제에 집중된다 하겠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B는 「데이터를 蒐集·整理·통합한 情報의 집합체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檢索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著作權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編輯物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創作性이 있는 것은 編輯著作物로서 독자적으로 保護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著作權法上的 編輯著作物의 정의와 保護規定 내용과 DB자체의 정의 내지 내용과를 비교하여 보면 DB자체가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백과사전 등과 같은 기존 編輯著作物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編輯著作物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B자체의 保護方法에 대하여는 異論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

V. DB의 法的 保護方法

DB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4가지 견해가 있다.

①DB를 著作權法上的 編輯著作物로 보아 製作者 등을 著作者로서 保護하면 된다는 견해, ②DB를 著作權法의 원리로 保護하되 기존의 編輯著作物과는 著作物性的 인정과 公表시기 등에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일본의 예와 같이 著作權法에 DB에 관한 특별규정조항을 신설하여 保護하자는 견해, ③DB는 제작과정에서 막대한 자본과 노동이 투하되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獨創性이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에도 DB는 保護되어야 하고, 그 保護의 방법은 특별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④DB의 保護는 著作物性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DB의 電子技術의 특성과 DB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DB의 法的保護方法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DB의 法的性格의 決定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미 앞에서 DB의 法的性格을 살펴보았는 바, DB자체는 編輯著作物에 속한다 하겠다. 그런데 다른 일반著作物은 著作者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독창적이어야 保護가 된다. 그러나 編輯著作物에 있어서는 표현의 獨創性이 아니고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獨創性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DB의 제작과정은 통상의 編輯著作物의 작성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DB는 機械可讀形態(machine-readable form)로 생성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編輯著作物 작성과는 다른 제작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DB를 제작하기 위하여는 情報의 수집·선정·분석·가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獨創性이 수반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DB의 경우에는 통상의 編輯著作物과는 달리 때로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만 獨創性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외의 情報의 체계적 구성과정에도 獨創性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재의 선택·배열에는 獨創性이 나타나지 않고 情報의 체계적 구성과정에만 獨創性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DB는 일종의 編輯著作物이지만 기존의 編輯著作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編輯著作物의 獨創性은 다른 著作物과는 달리 선택이나 배열의 獨創性이 그 성립요건이므로 이의 입증에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編輯

著作물을 작성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그 獨創性を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²⁾ 그리고 編輯著作물의 獨創성은 단지 알파벳 순이라든가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의 獨創性이라기보다는 利用者가 보다 알아보기 편리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리 종합한다는 의미의 獨創性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DB제작과정의 獨創性과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DB에 있어서는 통상의 編輯著作물에 있어서와는 달리 公表의 時期決定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一般編輯著作물의 公表時期는 著作者가 그 著作물을 공연 放送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 공개시와 著作물을 발행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DB의 公表는 다수의 利用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수신자가 일방적으로 받아보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情報를 받아보는 적극적 측면이 있으며, 그 技術的 성격으로 인하여 유선송신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DB의 특수성을 심분감안한다 하더라도 DB의 法的性格은 編輯著作물에 속한다고 함이 법리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DB의 특수성에 관한 법적고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③의 견해와 ④의 견해이다. ③의 견해는 막대한 자본과 노력이 투하되는 DB製作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DB의 獨創性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特別立法으로 保護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DB에 獨創性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DB는 이미 知的所有權으로 保護해 줄 가치가 없는 것으로 知的所有權의 법리를 다루는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 DB투자자의 保護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배려하여야 할 것이고 製作者와 利用者간의 法律關係는 일반사법의 원리를 구체적 타당있게 해석 적용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견해는 ④의 견해이다. 이 견해는 DB의 電子技術

2) 美國의 判例도 이러한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 예로서 Leon v. Pacific Telephone & Telegraph Co., Melville B. Nimmer, Cases and Materials on Copyright(3rd ed), 1985 ; Southern Bell v. Associated Telephone, 1983 Copyright Law Decisions, II. 25, 573 등 參照.

的 특성과 국내 DB산업 保護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DB保護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DB의 法的保護對象과 法的性格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 내지 산업발전을 위한 政策決定과 지원을 위한 방법론과 現行 知的所有權에 관한 실정법의 해석을 근본적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회현상을 법으로 保護해야 할 것인가, 법으로 保護해야 할 경우에도 어떠한 法體系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의문을 決定키 위하여는 먼저 그 對象의 획정과 그 대상의 法的性格이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DB자체는 개념상 하드웨어와 입·출력, 檢索프로그램 및 분배·변경·추가 프로그램 등과 엄격히 분리·구분되어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DB를 타개념과 엄격히 구분할 경우에는 DB는 명백히 編輯著作物에 속한다 함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DB가 編輯著作物인 바에야 구태여 특별법으로 DB를 保護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그 주장근거를 상실할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DB를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아직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特別法은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④의 견해를 주장하는 자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컴퓨터프로그램保護에 관한 特別法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는 著作權法 원리의 물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이다. PC법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거의 예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형식의 법으로서 그 내용은 단지 거의 완전한 著作權法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현재의 知的所有權法體系에 관한 국제적 흐름은 명백히 DB를 著作權法으로 保護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에서도 著作權理論으로 DB를 취급하고 있다.

DB製作者와 分配者 및 利用者를 保護해야 하고 국내 DB산업을 保護해야 한다는 ④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의 保護는 각각의 保護對象別로 그 法的性格을 구명하여 각각의 법원리 내지 국제협약의 기본정신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知的所有權法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만이 이를 외면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타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생존번영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존의 著作

權法 등의 실정법으로도 DB를 잘 보호할 수 있는데 굳이 特別法을 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④의 견해를 주장하는 자는 DB製作者와 利用者간의 이용관계조정 및 侵害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著作權者의 決定, 保護期間問題, DB製作者와 分配者 및 利用者간의 法律關係가 DB의 電子技術的인 특성 및 DB의 다른 특성(대량동시성, 즉시성, 접근의 용이성) 등을 근거로 特別立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다른 著作物들(映像著作物, Compact disk, 비디오, 映畵, 寫眞 및 共同著作物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로서 유독 DB에서만 예상되는 문제가 아닌것이다. 이러한 法的 問題는 著作權法에 관한 이론의 보완발전과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현재에도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著作權法은 著作權法만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一般私法의 기본법인 民法의 터전위에서 성안된 법이므로 著作權法의 규정에 없는 一般私法的인 法律關係는 민법의 제규정 및 不正競爭防止法 등 關聯法 규정들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解釋·適用을 통하여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이 특별법 만능의 사고방식은 DB의 保護와 DB관련 이해당사자들의 保護를 위하여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국내 DB등록의 곤란초래가능성, 大企業의 과보호, 中小DB業者 도산, 國際的 통상마찰 등). 현재 시점에서 국내 DB산업의 保護를 위하여 지금 절실히 필요되고 있는 것은 特別立法이 아니라,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국내 DB산업에 대한 情報資料의 開放提供擴大, 財政金融的·稅制的 支援方法의 講究 등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B가 編輯著作物로서 부분적으로 다른 기존의 통상 編輯著作物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보다 원활한 DB의 保護利用을 위하여 현행 우리의 著作權法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현행 日本著作權法의 例 參考).

第3章 法務部の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 컴퓨터 犯罪을 中心으로 —

이 철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第1節 概說

오늘날 컴퓨터는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政治·經濟·社會의 각 方面에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 불가분의 關係를 맺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政府機關, 金融機關, 企業 등의 각 方面에서 컴퓨터의 活用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컴퓨터를 통한 社會의 情報化는 빠른 속도로 進行되리라고 豫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의 社會的 便宜增進이라는 바람직한 機能의 裏面에는 그 誤用, 濫用에 따른 예기치 못한 逆機能이 존재하고 있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업 또는 社會에 심각한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하나로서 대두된 것이 소위 컴퓨터犯罪이다.¹⁾

社會經濟活動의 기본을 이루는 컴퓨터의 機能이 일단 沮害된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단순히 한 個人이나 企業에 그치지 않고 社會公共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피해와 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刑事法이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 制定된 것이기 때문에 범인이 기묘하게 法網을 빠져 나가거나 큰 罪를 범하고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우려가 농후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刑事法構造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反社會的 行爲類型이 생기게 되자 制定法과 進化된 社會現實間의 乖離를

1) 李 哲, 「컴퓨터犯罪의 法的規制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8), 1面.

메꾸고 컴퓨터犯罪에 法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先進 各國에서는 컴퓨터 犯罪을 처벌하는 새로운 規定이나 法律을 新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10 반포 AID借款아파트 不法當籤事件과 관련하여 최초로 컴퓨터犯罪이 발견된 이래 1990.4 現在 總 40여건의 犯行이 발견되고 件當 平均被害額이 1억 364만원에 이르러²⁾ 문제의 심각성을 示唆하며, 앞으로 정보화사회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컴퓨터의 빠른 普及 伸張과 電算人口의 확대에 따른 컴퓨터犯罪의 증가가 예상되어 컴퓨터 犯罪에 대한 法制化의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法務部는 1985.6.14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全面的인 刑法改正作業을 進行하면서 刑法改正方向의 一環인 新種犯罪에 대처하기 위한 立法措置로서 컴퓨터 犯罪의 新設을 검토한 끝에 小委員會에서 작성한 改正試案은 이에 대하여 規定을 新設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現行刑事法이 컴퓨터 犯罪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解釋論을 통하여 살펴보고, 적절히 對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새로운 立法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와 유사한 日本과 獨逸의 立法例를 比較法的으로 考察한 다음 法務部의 形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우리 刑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순서로 進行하고자 한다.

第 2 節 컴퓨터 犯罪의 概念과 類型

I. 컴퓨터 犯罪의 概念

컴퓨터 犯罪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에 대한 概念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컴퓨터를 電子計算機라고 번역하여 부르고 있는 까닭에 컴퓨터를 계산하는 機械 또는 계산하는 裝置로 좁게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機能을 가진 것으로서 데이터를 받아 들이고 內部에 저장하며,

2) 趙圭政, 「컴퓨터操作犯罪」, 형사정책연구 제2호(1990), 109面.

또 指示된 프로그램을 自動的으로 遂行하고 資料에 대하여 數學的, 論理的, 組織的 演算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電子裝置라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컴퓨터犯罪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定義는 어디까지나 法律的으로 正립해야 할 개념이므로 自然科學的 概念의 컴퓨터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립은 특히 刑罰에 의한 保護의 必要性이 큰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犯罪型에 따라 그 對象이 되는 컴퓨터의 範圍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컴퓨터 자체가 發展的, 可變的 概念으로서 一義的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犯罪의 概念도 一義的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公認된 法的 定義도 없다. 학자들간에 컴퓨터犯罪의 개념에 관하여는 컴퓨터犯罪을 별개의 범죄로 파악하지 않는 否定說⁴⁾과 이를 인정하는 肯定說로 나누진다. 肯定說은 다시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廣義說과 狹義說⁵⁾로 나누어지며, 통설인 廣義說⁶⁾을 취하는 학자들은 컴퓨터범죄를 「컴퓨터와 關聯된 反社會的 行爲」로 넓게 定義하고 있다.

생각컨대 컴퓨터와 關聯된 犯罪型들 중에는 절도, 사기 등 종래의 傳統的 犯罪에 흡수시켜 처벌이 가능한 犯罪도 있지만 그것의 처벌을 위해서는 새로운 立法措置를 필요로 하는 유형들이 있고, 이러한 범죄의 搜查와 起訴를 위해서도 새로운 기술이 요청됨에 따라 컴퓨터犯罪이라는 새로운 犯罪概念이 事後的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犯罪의 概念도 이러한 새로운 立法과 搜查의 必要性에 착안하여 實用的으로 定立되어야 하므로 廣義說의 立場에서 컴퓨터犯罪을 컴퓨터와 關聯된 反社會的 行爲

3) 蘇令一·李鍾敏, 「컴퓨터原論」(法英社, 1988), 52面.

4) 否定說을 취하는 학자로는 독일의 Karl Michael Betzl, Lindemann, 李哲 前揭 학위논문, 24面 참조.

5) 狹義說을 취하는 학자로는 독일의 Ulrich Sieber, 미국의 Taber 등이 있다. 李哲, 前揭 학위논문, 26面.

6) 廣義說을 취하는 학자로는 미국의 August Bequai, Steven L. Mandell, James A. Schweitzer, 독일의 Kaiser, Lampe, 일본의 的場純男, 板倉宏 등이 있다. 李哲, 前揭 학위논문, 25-6面 참조.

로 定義하되 犯行手法에 컴퓨터技術에 관한 知識이 필수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II. 컴퓨터犯罪의 類型

컴퓨터犯罪의 定義를 컴퓨터에 관련된 反社會的 行爲로 넓게 파악하는 경우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컴퓨터犯罪란 무엇인가’보다는 ‘어떠한 것을 컴퓨터犯罪로 볼 것인가’하는 犯罪型의 문제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行爲의 手段 또는 目的으로 하는 犯罪的 現象은 그 形態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다양한 形態를 一定한 基準에 따라 分類하는 立場은 學者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를 大別하면, ① 犯罪客體의 面과 犯罪手段의 面으로 二分하는 立場, ② 컴퓨터의 데이터 處理機能을 基準으로 나누는 立場, ③ 이를 混合한 그 밖의 立場으로 나눌 수 있다.

컴퓨터犯罪를 범죄客體와 수단인 面으로 분류하는 학자로서 日本의 大山憲司⁷⁾는 컴퓨터犯罪를 犯罪客體와 手段의 面으로 나누어 ① 컴퓨터에 向해진 犯罪(데이터의 改變, 消去 및 取得)와 ② 컴퓨터를 惡用하는 犯罪(데이터의 改變 等に 의한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의 取得)로 나누고 있고, 컴퓨터犯罪를 데이터 處理, 保存의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多數說⁸⁾은 컴퓨터 犯罪를 ① 데이터의 不正操作, ② 데이터의 不正入手·漏泄, ③ 컴퓨터의 無權限使用, ④ 컴퓨터의 破壞로 나누고 있다.

생각컨대, 컴퓨터犯罪를 犯行手法上 컴퓨터의 特別한 知識을 이용한 犯罪로 定義한다면 위 概念定義를 구체화하기 위한 犯罪類型의 分類도 컴퓨

7) 大山憲司, 「コンピュータ犯罪をめぐる刑法上の問題」, 警察公論(1982.11), 66面.

8) 的場純男, 「コンピュータ犯罪に関する刑事法上の問題點」, ジュリスト 846호(1985. 10), 7面; 伊賀興一, 「コンピュータの普及と刑事法の對應をめぐる諸問題」, 846호(1985.10), 55面; 大谷實, 右田 佑紀, 西田典之(對談記事), 「コンピュータ犯罪と刑事立法の課題」, ジュリスト 846호(1985.10), 17面; 金鍾源, 「컴퓨터犯罪과 이에 대한 現行刑法의 對應에 관한 研究」, 韓國刑事法學會(1987. 12), 7面.

터의 機能面에 착안하여 데이터의 處理, 保存機能을 중심으로 이를 나누는 多數說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⁹⁾ 이 때 ① 컴퓨터의 不正操作이란 컴퓨터에 의해 處理·傳達·保存되는 데이터를 不正하게 造作하는 一切의 行爲를 말하며 ② 데이터의 不正入手란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결과 혹은 입력·처리과정에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부정하게 入手하거나 漏泄하는 行爲인데 「컴퓨터스파이」라고도 한다. ③ 컴퓨터의 無權限 使用(또는 不正使用)이란 행위자가 타인의 컴퓨터를 일정한 시간동안 자신을 위하여 作動시키는 것이며 ④ 컴퓨터 破壞란 컴퓨터시스템의 機能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第 3 節 컴퓨터犯罪에 대한 現行刑法의 對應

지금까지 概念定立과 類型分類를 마친 컴퓨터犯罪는 刑法上 어떤 構成要件에 該當하는가? 컴퓨터에 의하여 대규모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現行刑法의 적용에 의한 對處가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에 의한 法益侵害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¹⁰⁾ 따라서 現行刑法에 의한 對應方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解釋的 考察이 先行되어야 하므로 前述한 컴퓨터범죄의 유형분류에 따라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I. 데이터의 不正操作

데이터의 不正操作이란 컴퓨터에 의해 處理, 保存, 傳達되는 데이터를 不正하게 操作하는 一切의 行爲이고 컴퓨터에 대한 入力, 處理, 出力, 記憶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不正한 出力, 入力, 改變, 消去 등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不正操作行爲에 대하여 刑法上 적용의 可否가 문제되는 것은 文書犯罪, 財產利得罪, 業務妨害罪, 文書 또는 財物損壞罪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9) 金鍾源, 前揭論文, 11面.

10) 李在祥, 「컴퓨터犯罪에 對한 刑法的 對策의 研究」, 慶熙法學 제25권 1호 (1990. 12), 58面.

1. 文書犯罪의 成否

컴퓨터의 도입에 의하여 大量의 情報을 精確하게 보존하고 신속하게 檢索·利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正確性에 대한 公共의 信用이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 컴퓨터에 의한 자료의 精確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먼저 데이터의 入力·處理·出力 및 記憶過程의 不正操作이 文書에 대한 刑法的 保護對象에 포함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바 이는 결국 電磁的 記錄物이 現行刑法上의 文書의 概念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文書란 文字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일정한 부호에 의하여 일정한 개념 또는 사상이 體化되어 표현된 물체를 말한다. 그런데 文書偽造罪의 客體가 되는 文書는 偽造 또는 變造에 의하여 公共의 信用을 침해할 것을 요하므로¹¹⁾ 그것은 法律上 重要性을 가진 意識內容을 記載한 것이라야 한다. 여기에 文書는 그 概念要素로서 繼續的 機能과 證明的 機能 및 保障的 機能을 필요로 하게 되며¹²⁾ 電磁的 記錄이 現行 刑法上 文書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文書의 概念要素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文書는 意思表示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지고 視覺的 方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바, 電磁的 記錄은 그 자체로는 可視性이 없어 데이터의 保存機能을 가지는데 불과할 뿐 아니라 書面에 의한 記載의 永續性도 缺하므로 文書의 概念要素 중 繼續的 機能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컴퓨터記憶裝置에 데이터를 入力하는 경우에는 多數人이 關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누가 入力하였는가는 물론 누가 名義人인가도 데이터에 의해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電磁的 記錄에서는 作成名義가 判明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文書로서의 保障的 機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電磁的 데이터의 처리가 法的·經濟的 영역에 적

11) 李在祥, 「컴퓨터犯罪과 이에 대한 現行刑法의 對應에 관한 研究」 중 '데이터의 부정조작(I)', 13面.

12) 李在祥, 「刑法新講 各論 II」, 114面; 劉基天, 「各論講義 下」, 127面, 133面; 鄭榮錫, 「刑法各論」, 162面.

용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法的 去來의 證明適格과 目的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¹³⁾ 文書로서의 證明的 機能은 인정된다.

결국 컴퓨터에 入力된 電磁的 記錄은 繼續的 機能과 保障的 機能을 缺하여 刑法上 文書의 개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電磁的 記錄의 不正操作도 現行法上의 文書偽造罪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2. 財産利得罪의 成否

(1) 절도죄와 횡령죄

오늘날은 금융기관의 업무가 컴퓨터化되어 은행 등의 本·支店間 또는 각 相互銀行間의 채권·채무관계가 資金의 현실적 移動이 없이 컴퓨터의 데이터처리로 결재되는, 所謂「Cashless 社會」가 到來함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CD카드의 不正利用에 의하여 他人의 預金を 자기의 口座에 대체하는 등 은행에 대하여 不當한「帳簿貨幣」(Giralgeld)¹⁴⁾를 갖는 경우에 절도죄나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現行刑法上 절도죄나 횡령죄의 行爲客體는「財物」이며, 절도죄에서는 占有의 奪取라는 점에서 行爲對象으로서의「占有」概念이, 橫領罪에서는 他人의 財物을 보관하는 자라는 身分을 요하는 점에서 身分要素로서의「占有」개념이 각각 전제되어야 하므로 데이터의 不正操作에 의한 帳簿貨幣의 移動이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銀行預金の 財物性과 占有의 歸屬을 밝히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財物의 개념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의 通說은 財物을「有體物 및 管理可能한 動力」으로 보고 있으며,¹⁵⁾ 이때 管理는 事務的 管理가 아닌 단순한 物理的 管理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¹⁶⁾ 通說에 의하면 銀行預金은 財物이 될 수 없다. 다음 占有의 개념에 관하여 보면 절도죄의

13) 李在祥, 前揭論文, 25面.

14) Ulrich Sieber, 「Computerkriminalität und Strafrecht」, (2Auf. 1980) S.195 ff.

15) 劉基天, 「刑法學(各論 上)」, 183面; 李在祥, 「刑法新講(各論 I)」, 256面; 黃山德, 「刑法各論」, 269面.

16) 李在祥, 前揭書, 256面.

성립의 전제로서의 「占有」란 財物에 대한 事實上的의 支配를 말하며, 따라서 데이터의 不正操作으로 자신의 顧客原帳에 元金殘高를 높인 것만으로는 預金에 대한 占有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¹⁷⁾ 現行法上 절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橫領罪는 委任關係에 따라 他人의 財物을 보관하는 자가 財物을 橫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委任關係가 있다고 할 수 없는 者 예컨대, 펀치·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등 단순한 技術補助者나 局外人이 데이터를 不正操作하여 預金を 引出하는등 不法하게 財物을 취득하여도 橫領罪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背任罪

背任罪는 그 客體를 財産上의 利益에 두고 있어 절도죄나 竊령죄의 客體가 될 수 없는 預金채권도 배임죄의 客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할때에 성립하므로 主體面에서 他人의 사무를 처리하는 者라는 身分을 요한다. 따라서 背任罪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者란 會社內의 一定한 業務處理者에 한정될 뿐이고, 일반인이나 단순한 오퍼레이터 등의 入力 또는 出力의 操作行爲는 背任罪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¹⁸⁾

(3) 詐欺罪

데이터의 부정조작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우리 刑法上 詐欺罪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취득해야 하므로 컴퓨터詐欺의 경우 現行法上 詐欺罪에 의하여 처벌되려면 機械에 대한 欺罔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操作의 준비단계부터 컴퓨터操作의 결과발생까지의 業務進行過程中에 處分權限 있는 者가 介入되어 있어서 具體的으로 그 者를 欺罔하고 錯誤에 빠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컴퓨터操作過程에 사람이 介入하는 것을 포착하여 詐欺罪를 적용하는 것은 각 當該 企業의 內部運用에 따른 개별적 사례에의

17) 大山弘, 「コンピュータ不正利用と財産罪」, 「犯罪と刑罰」(제3호), 82면.

18) 許一泰, 「컴퓨터犯罪과 이에 對한 現行刑法의 對應에 관한 研究」, 中 ‘데이터의 不正操作(2)－財産利得罪, 業務妨害罪, 損壞罪와 관련하여－’. 43면.

우연성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더우기 完全自動化되어 人間の 介入이 없이 처리되는 사례에는 詐欺罪가 適用될 수 없기 때문에 現行刑法上의 詐欺罪規定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키 어렵다 할 것이다.

3. 業務妨害罪의 成否

데이타의 不正操作에 의하여 他人의 業務에 提供된 데이타나 프로그램을 改變하거나 消去하는 경우에 現行刑法 제314조의 業務妨害罪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형법상 業務妨害罪의 침해대상은 일반적으로 「機械에 의한 업무」가 아닌 「사람의 업무」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데이타의 不正操作 자체만으로는 現行法上 業務妨害罪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偽計」란 사람을 欺罔, 誘惑하거나 또는 사람의 錯誤나 不知를 이용하는 모든 行爲手段을 말하고, 「威力」도 사람의 意思의 自由를 制壓, 混亂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고 해석하여 결국 偽計나 威力도 사람에게 행하여져야만 한다는 것이 通說¹⁹⁾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미의 偽計나 威力은 컴퓨터의 不正操作에 의한 業務處理에 있어서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게 된다. 더구나 사람의 간여없이 완전히 自動處理되는 컴퓨터시스템의 普及이 장래에 확산되면 위계나 威力이라는 종래의 刑法上의 개념으로는 컴퓨터의 業務處理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規制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4. 損壞罪의 成否

우리 刑法上 財物損壞罪의 行爲客體는 「財物」이며, 行爲는 「損壞 또는 隱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하는 것이다. 「損壞」란 財物 또는 文書에 직접 有形力을 행사하여 그 利用可能性을 침해하는 것이며, 「其他의 方法」이란 損壞 또는 隱匿 이외의 방법으로 財物의 效用을 害하는 일체의

19) 徐壹教, 「各論」, 115面; 劉基天, 「各論(上)」, 172面; 李在祥, 「各論 I」, 209面; 芝原邦爾, 「コンピュータによる情報處理と業務妨害罪」, ジュリスト 제885호 (1987), 12面.

20) 李在祥, 前掲書, 451面.

행위를 말한다.²⁰⁾ 여기서 電磁的 記錄이 된 磁氣디스크 등의 物理的 存在 자체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消去하는 행위가 「其他의 方法」으로 磁氣디스크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磁氣디스크의 본래의 효용은 데이터를 「記錄하는 것」에 있고 한 번 데이터가 지워지더라도 다시 記錄할 수 있는 이상, 效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解釋도 있을 수 있으나,²¹⁾ 데이터가 記錄되어 있는 磁氣테이프 등의 效用은 데이터를 記錄할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電磁的 記錄의 消去는 現行刑法上 財物損壞罪로도 對處할 수 있다고 보인다.

II. 데이터의 不正入手

데이터의 不正入手·漏泄에 대한 現행 刑법의 적용은, 財産權保護의 관점에서의 財産犯罪의 성립여부와 通信秘密의 保護라는 관점 및 秘密遵守義務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現行刑法이 財産權保護의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規定을 살펴보면, 우선 行爲者가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기록된 電磁的記錄物을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行爲者가 그것을 占有한 경우에는 橫領罪, 占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占有侵奪의 態樣에 따라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그리고 他人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프린트-아웃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複寫한 프린트용지가 被害者의 所有物인 때에도 위와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컴퓨터端末機 화면에 나타난 것을 촬영 또는 메모하거나, 通信回線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접근하거나, 自己의 端末機를 사용하여 情報를 入手하는 경우와,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複寫用紙가 行爲者의 소유인 경우에는 刑法의 대응이 간단치 않다. 이때 行爲者가 内部者인 경우에는 그 行爲者의 地位 如何에 따라 財産的 損害 등 背任罪의 要件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限하여 同罪의 성립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이외

21) 板倉宏, 「コンピュータ犯罪と刑事法の問題點」, 研修 409호, 3面.

에는 端末機나 온라인 시스템을 使用하여 他人의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不法으로 入手하는 등 物件의 移動이 手반되지 않은 情報 자체의 不法入手 행위에 있어서 情報 自體는 財産犯罪의 客體로서 管理可能한 財物이 아니므로 그것이 有體物에 化體되어 있는 것이 아닌 限 우리 刑法上 竊도죄나 橫領罪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로, 데이터의 不正入手·漏泄에 관하여 通信의 秘密保護라고 하는 관점에서 罰則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刑法 제316조의 秘密侵害罪는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信書, 文書, 圖書」를 대상으로 하여 故意로 이를 開披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電磁的 記錄物은 이를 文書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文書로 본다 하더라도 「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信書로 보기 어려워 위 規定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세째로, 秘密을 취급하는 일정한 者에 대하여 秘密遵守義務違反罪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現行刑法 제317조의 業務上秘密漏泄罪는 一定한 身分關係에 있는 者의 비밀준수의무를 전제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도 條文에 열거된 신분을 가진 者 外의 一般人은 行爲主體에서 제외되므로 역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컴퓨터스파이行爲에 대한 우리 刑法의 處罰法規는 刑法이 情報 자체의 취득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Ⅲ. 컴퓨터의 無權限使用

컴퓨터의 無權限使用은 자기의 데이터處理의 실행을 위하여 權限없이 他人의 컴퓨터를 使用하는 것으로서 「시간절도」 또는 「컴퓨터서비스절도」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기업의 컴퓨터를 그 종업원이 業務외의 아르바이트 등의 자기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패스워드(password)를 위조하여 타임셰어링시스템(Time Sharing System)을 權限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그 자체가 사용절도로서 현행법상 不可罰이며, 다만 기업체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背任罪가 성립될 수는 있을 것이

22) 的場純男, 前掲論文, 14面.

다.²³⁾ 그리고 컴퓨터의 無權限使用은 행위자가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면과 그 사용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權限있는 者의 사용이 방해된다는 업무방해의 면에서 處罰의 필요성이 주장될 수 있겠지만 後者의 면에 대하여는 다수의 단말기로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業務妨害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²³⁾ 또 無權限使用時 전기의 사용이 수반되므로 전기절도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²⁴⁾ 그러한 전기사용은 경미한 것이고, 이용의 본질은 전기사용이 아니라 컴퓨터기계를 사용하여 不法的의 利益을 취득한다는 점이므로 여기에 처벌근거를 찾는 것은 主從이 바뀐 것으로서 정당한 法適用이라 하기 어렵다. 결국 컴퓨터의 無權限使用은 현행형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處罰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IV. 컴퓨터의 破壞

컴퓨터의 破壞란 하드웨어로서의 컴퓨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破壞하거나 作動이 되지 않도록 하는 行爲와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貯藏하고 있는 媒體 즉 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磁氣드럼 등을 破壞하는 行爲를 말한다.

25)

이와 같은 行爲가 現行刑法上 財物損壞罪(제366조)나 公用物損傷罪(제141조1항)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심이 없지만 그 밖에 業務妨害罪도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現行刑法上 業務妨害罪는 사람의 意思에 作用하여 業務를 방해하여야 하며 그 行爲手段인 僞計나 威力도 결국 사람에게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컴퓨터에 의한 業務處理過程에서 사람이 간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僞計나 威力이 行使되어 業務를 방해한 때는 業務妨害罪가 되겠지만 컴퓨터의 破壞 그 자체에 의하여 業務를 妨害하는 경우에는 現行刑法上의 業務妨害罪가 되기는 어렵

23) 車鏞碩, 「컴퓨터犯罪과 이에 對한 現行刑法의 對應에 관한 研究」, 中 '컴퓨터의 무권한사용', 61面.

24) 金允行, 「註釋 刑法 各論(下)」, 185面.

25) 媒體인 磁氣테이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와 磁氣테이프에 기록된 데이터를 消去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하며 後者는 데이터의 부정조작의 개념에 포함된다.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第4節 各國 立法例의 比較法的 考察

I. 日本

1. 立法經緯

1971년 「日經비즈니스」雜誌 購買者名簿不正複寫事件을 嚆矢로 등장한 컴퓨터범죄는 1975年 금융의 기계화에 따라 은행에 도입된 CD機의 보급으로 해가 갈수록 급증하게 되었다.²⁷⁾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司法實務上으로는 1982年과 1983年에 電磁的 記錄에 대한 文書性을 인정하는 下級審²⁸⁾ 및 最高裁判所²⁹⁾의 判例와 이를 따르는 通說³⁰⁾이 컴퓨터를 남용하는 신종범죄에 대하여 우선 傳統的 犯罪規定의 解釋論으로 대처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電磁的 記錄의 文書性을 부정하는 少數說의 입장을 취하는 大谷實 교수는 물론, 文書性을 인정하는 通說을 따르던 板倉宏 교수 등도 데이터의 不正操作에 사건의 성질상 現行刑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行爲類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行法의 무리한 擴張解釋을 시도하는 것은 罪刑法定主義에 反한다는 근거로 前示 判例의 동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立法措置의 필요성을 力說하였다.³¹⁾ 한편 日本辯護士連合會에서도 1984.11 「컴퓨터犯罪」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컴퓨터범죄에 대한 判例의 擴大解釋은 構成要件의 붕괴를 초래하고 罪刑法定主義에 反

26) 李哲, 前掲 학위논문, 194面.

27) 加藤敏幸, 「コンピュータ犯罪の實態と對應動向」, 犯罪と刑罰(제3호), 47面.

28) 大阪地裁, 1982.9.9, 判例時報, 1067호, 159面.

29) 日最決 1983, 11. 24(刑集37卷9號), 1538面.

30) 西原春夫, 「コンピュータ導入と刑事法上の諸問題」, ジュリスト 484호, 35面;
板倉宏, 「コンピュータ犯罪と刑事法」, ジュリスト 707호, 144面; 廣史郎, 「コンピュータ犯罪刑法의 適用」, 警察學論集 35권11호, 51面.

31) 大谷實, 「コンピュータ關聯犯罪と刑法의 改正」, 判例タイムズ 602호, 5面.

하므로 現行刑法을 一部 改正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³²⁾

法務省에서는 學界와 日辯의 위와 같은 동향 및 1985年の 登記事務電算化 결정, 住民基本臺帳法の 개정 등 行政電算化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1986.6 「컴퓨터關聯犯罪立法研究會」를 발족하여 刑法一部改正試案을 작성하고 동년 9월 法制審議會刑事法部會의 심의를 거친 후 「刑法等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案」인 政府案을 만들어 1987.3.26 第106回 國會에 提出하여 동년 5.27 同法案이 國회를 통과, 6.2 公布되어 동년 6.22부터 시행되었다.³³⁾

2. 具體的 處罰規定

(1) 電磁的記錄의 定義規定

개정법은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本法에서 電磁的記錄이라 함은 電子의 方式, 磁氣의 方式 기타 사람의 知覺으로 인식할 수 없는 方式에 따라 만들어진 記錄으로서 電子計算機에 의한 情報處理의 用に 供與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기록의 定義規定을 두고 있다. 電磁的記錄이란 情報를 보존하는 媒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媒體 위에 일정한 情報가 記載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 情報를 지칭한다.³⁴⁾ 本條의 電子計算機는 컴퓨터와 同義語로서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電子裝置를 말한다. 電子計算機에 의한 「情報處理에 供用되는 것」이란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情報에 관한 演算, 檢索 등의 처리에 쓰이는 記錄을 말한다.

(2) 電磁的記錄 不正作出罪

개정법은 電磁的記錄이 文書에 대체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文書와 같이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文書犯罪와 같은 構成要件形式을 취하고 있다.

32) 伊賀興一, 「コンピュータ犯罪と刑法の課題」, 自由と正義 제38권1호, 90面.

33) 日本 改正刑法의 자세한 내용은 中山研一·神山敏雄 編, 「コンピュータ犯罪等に關する刑法一部改正(注釋)」, (成文堂 1987.11.10) 참조.

34) 中山·神山 編, 前掲書(荒川 雅行 執筆部分), 15面.

① 電磁的公正證書 原本不實記載罪·供用罪

개정법은 제157조 제1항에 「① 公務員에 대하여 虛偽申告를 하여 權利義務에 관한 公正證書原本에 不實의 事實을 記載하게 하거나 또는 權利義務에 관한 公正證書原本이 될 수 있는 電磁的記錄에 不實의 記錄을 하게 한 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円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고 규정하고, 제158조에서는 「前4條에 記載된 文書 또는 圖畫를 行使하거나 前條 第1項에 記載된 電磁的記錄을 公正證書原本用으로 供與한 者는 그 文書 또는 圖畫를 偽造 또는 變造하거나 虛偽의 文書 또는 圖畫를 作成하거나 不實記載 또는 記錄하게 한 者와 同一한 刑에 處한다」고 하여 電磁的公正證書 原本不實記載罪·供用罪를 신설하였다. 電磁的記錄인 自動車登録화일이 公正證書原本에 해당한다는 最高裁判所 判例에 대한 批判的 立場을 수용하여 개정법에서는 文書인 公正證書原本과 公正證書原本에 상당한 電磁的記錄을 구별,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私·公電磁的記錄 不正作出罪·供用罪 等

刑法은 제161조의 2에 私·公電磁的記錄 不正作出罪와 供用罪를 신설하였다. 이에 의하면, 「① 사람의 事務處理를 그르칠 目的으로 그 事務處理의 用に 供與하는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관한 電磁的記錄을 不正하게 作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円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罪가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의하여 作出되는 電磁的記錄에 관한 것일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円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 不正하게 作出한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관한 電磁的記錄을 第1項의 目的으로 사람의 事務處理의 用に 供與한 者는 그 電磁的記錄을 不正하게 作出한 者와 同一한 刑에 處한다. ④ 前項의 未遂罪는 處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本條는 從來 다툼이 있었던 電磁的記錄의 文書性을 否定한다. 電磁的記錄은 文書의 要件인 可視性·可讀性이 없고 그 作出過程에 多數人 관여를 거치기 때문에 文書와 같은 作成名義의 觀念을 인정키 어렵고 또한 用法에 있어서 通常 컴퓨터라는 기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점에서 人에 대한 사용을 예정한 文書의 「行使」와 다르기 때문에 文書에 相應한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規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3) 電子計算機損壞 等 業務妨害罪

日本에서는 現行 業務妨害罪를 컴퓨터不正操作에 의한 業務妨害에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통설의 견해를 수용하여, 改正刑法 제234조의 2에 「電子計算機損壞 等 業務妨害罪」를 新設하여, 「사람의 業務에 사용하는 電子計算機 또는 이에 供用되는 電磁的記錄을 損壞하거나 사람의 業務에 使用하는 電子計算機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지령을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電子計算機의 使用目的에 맞는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使用目的에 어긋난 동작을 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0円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고 규정하였다.

本罪는 電子計算機에 의한 加害行爲를 수단으로 삼는 業務妨害를 새로이 業務妨害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偽計·威力業務妨害罪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³⁵⁾ 컴퓨터事務處理의 특질은 大量性, 迅速性에 있어 그 事務가 侵害되면 중대하고 광범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 業務妨害罪를 新設하면서 法定刑을 무겁게 한 것이다.

(4) 電子計算機使用 詐欺罪

日本에서도 종래의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傳統的 財産犯罪의 規定만으로는 컴퓨터의 不正操作에 의한 預金債權의 操作 등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개정형법에서 既存의 詐欺罪를 規定한 刑法 제246조에 이어 제246조의 2에 「電子計算機使用 詐欺罪」를 新設하여 「前條 外에 사람의 事務處理에 使用하는 電子計算機에 虛偽의 情報 또는 不正한 指令을 주어 財産權의 得失變更에 關한 不實의 電磁的記錄을 만들거나 財産權의 得失變更에 關한 虛偽의 電磁的記錄을 사람의 事務處理에 供與하여 財産上 不法한 利益을 얻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本條의 立法趣旨는 電子計算機가 사람에 대신하여 自動的으로 각종 財産權의 得失變更의 사무를 처리하는 去來形態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財産上 不法利益을 얻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既存의 財産犯 規定으로는 的確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文言上 「前條外

35) 米澤慶治, 「刑法等一部改正の法概要」, ジュリスト 889호, 68면.

에」라는 표현이 명시하듯이 本條는 詐欺罪의 類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事務處理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컴퓨터의 惡用으로 財産上 不法利益을 얻는 행위가 사람을 欺罔하여 財産上 不法利益을 얻는 詐欺罪와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詐欺罪의 欺罔, 錯誤, 處分行爲의 要件을 생략하고 機械는 錯誤에 빠지지 않는다는 장애를 立法的으로 제거하여 本罪를 詐欺罪의 補充類型으로 한 것이다.

(5) 電磁的記錄 毀棄罪

개정형법 제258조는 「공무소에 供用하는 문서 또는 電磁的 記錄을 毀棄한 者는 3月以上 7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고 규정하고, 제256조에서는 「權利義務에 관한 他人의 文書 또는 電磁的 記錄을 毀棄한 者는 5年以下の 懲役に 處한다」고 하여 행위의 객체에 電磁的 記錄을 추가함으로써 電磁的 記錄毀棄罪를 신설하였다. 本條의 改正趣旨는 電磁的 記錄이 文書에 대신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證明機能이나 情報의 記錄·保存機能을 하고 있는데, 電磁的 記錄 자체에는 可視性, 可讀性이 없으므로 이것을 現行刑法에서 말하는 文書毀棄罪의 文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毀棄의 대상에 電磁的 記錄을 추가함으로써 電磁的 記錄의 毀棄를 文書毀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다.³⁶⁾

II. 獨逸

1. 立法經緯

獨逸의 경우 근자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관련범죄의 認知事例가 他國에 비하여 적지만 多額의 피해 및 범행의 발견 및 범인특정의 곤란 등 컴퓨터범죄의 특질에 착안하여 이에 대처키 위한 對策으로서 컴퓨터범죄를 經濟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對應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은 1960년대 末頃부터 獨逸의 형사정책의 최대과제의 하나가 되어 1983년경 政府草案으로 第2次 經濟犯罪防止法草案이 작성되면서³⁷⁾ 그 가운데에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規定이 제안되기

36) 中森喜彦, 「コンピュータと文書犯罪」, 刑法雜誌 제28권4호, 43面.

에 이르렀다.

위 法案은 1984.6의 公聽會와 1986.5.15 聯邦議會와 聯邦參議員의 議決을 거쳐 同年 8.1 施行되었으며 同法은 각종의 新規定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심은 컴퓨터犯罪에 관한 諸規定이며, 다만 同法은 獨立된 法典이 아니라 現行刑法典에 컴퓨터犯罪에 관한 약간의 新規定을 추가하거나 종래의 규정에 필요한 수정을 加하기 위한 現行法의 一部改正의 形式을 取하고 있다.³⁷⁾

2. 具體的 處罰規定

(1) 컴퓨터詐欺罪

독일에서도 컴퓨터不正操作에 의한 財産的 損害에 대하여 傳統的 財産犯 規定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前述한 第2次 經濟犯罪防止法案을 통하여 獨逸刑法의 一般詐欺罪 規定인 제263조에 이에 제263조 A에 「컴퓨터詐欺罪」를 新設하였다. 이에 의하여 「① 不法한 財産上利益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不正하게 프로그램을 형성하거나 不正 또는 不完全한 데이터를 使用하거나 權限없이 데이터를 使用하거나 또는 기타 權限없이 處理過程에 간섭하여 데이터處理過程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他人의 財産에 損害를 加한 者는 5年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處한다. ② 제263조2항 내지 5항(未遂處罰, 특히 중한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및 保護觀察에 관한 규정)은 本罪에 準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規定이 現行法上 詐欺罪에 있어서의 欺罔·錯誤·處分行爲의 요건을 생략하고 機械는 錯誤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장애를 立法的으로 제거한 점은 日本의 立法例와 같으나, 다만 構成要件에 있어서 本條는 「權限없이 데이터를 使用하는」 경우도 行爲態樣에 포함하고 있어 예컨대, 拾得한 他人의 진정한 CD카드를 不正使用하는 경우까지를 處罰하는 점에 있어서

37) Ulrich Sieber, 「Computerkriminalität und Strafrecht」, S.80ff, 31 ff.

38) 井田良, 「西ドイツにおけるコンピュータ犯罪處罰規定とデータの保護」, 刑法雜誌 제28권4호, 125面.

「虛偽의 電磁的記錄을 使用하는」 경우만을 處罰하는 日本의 경우와 다르다.³⁹⁾

(2) 데이터 偽造罪

독일형법 제269조는 「證據로서 중요한 데이터의 偽造」라는 표제로 「① 법적 거래에 있어서 欺罔하기 위하여 證據로서 중요한 데이터를 見讀하는 경우에는 不眞正 또는 變造된 文書라고 할 수 있게 貯藏, 變更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狀態로 貯藏 혹은 變更된 데이터를 使用한 者는 5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에 處한다. ② 이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第267條3項(文書偽造罪의 특히 重한 事例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한다」고 규정한 이외에, 제274조 제1항은 「① 다음 사람은 5년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처한다」고하여 제2호에서 「ii. 處分이 허용되지 않거나 혹은 單獨處分이 허용되지 않은 증거로서 중요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不利益을 줄 목적으로 消去, 隱匿, 使用不能케 하거나 變更한 자」를 규정하여 데이터 損壞罪를 처벌하고 있다.

獨逸에서도 日本에서와 같이 종래 文書의 요건으로 表示內容의 視覺에 의한 可讀性을 요구하고 있어 不可視的인 電磁的記錄 자체는 文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官廳이나 私企業의 컴퓨터에 蓄積된 데이터를 권한없이 改變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第2次 經濟犯罪防止法에 의하여 現行 刑法의 文書罪規定에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다.⁴⁰⁾

(3) 데이터 不正消去, 데이터 處理妨害罪 등

개정형법은 「데이터 변경, 처리방해죄 등」을 신설하여 제303조 a(데이터 변경죄)에서 「① 違法하게 데이터를 消去, 隱匿, 使用不能케 하거나 變更한 者는 2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에 處한다. ② 이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3조 b(컴퓨터사보타지)에는 「① 他人의 業務, 他人의 企業 또는 官廳에서 本質的인 意味를 갖는 데이터 處理를, i. 第303條 a의 罪를 犯하거나, ii. 데이터 處理設備 또는 데이터 媒體를 破壞, 損壞, 使用不能케 하거나 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妨害한 者

39) 李哲, 前掲 학위논문, 136面.

40) 井田良, 前掲論文, 145面.

는 5年以下の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②이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第2次 經濟犯罪防止法 이전에도 하드웨어의 손괴나 磁氣테이프, 磁氣디스크 등의 物理的 破壞는 물론 데이터의 不正消去 등도 데이터媒體에 대한 器物損壞罪(第303條)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이지만, 통설에 의하더라도 電送中인 데이터의 消去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어 이에 따라 생기는 처벌의 간격을 메꾸는 데에 本條 新設의 必要性이 있다.

(4) 데이터探知罪

獨逸에서 컴퓨터犯罪 中 1980年代에 들어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컴퓨터데이터의 不正入手와 프로그램의 濫用事件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第2次 經濟犯罪防止法은 現行刑法典의 「個人的 生活領域 및 秘密侵害의 罪」의 章에 제202조의 a를 신설하여 「데이터探知罪」를 規定하였다. 이에 의하면 「①自己에게 豫定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不正한 接近으로부터 특히 保護되고 있는 데이터를 권한없이 스스로 入手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入手하게 한 者는 3年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의미에 있어서의 데이터란 電子的, 磁氣的 또는 기타 직접 탐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저장되거나 電送되고 있는 데이터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第 5 節 刑法 改正方向의 檢討

I. 文書犯罪의 修正

대부분의 立法例가 文書의 개념에 可視性和 可讀性을 요구하고 있어 不可視的인 電磁的 記錄物을 傳統的인 文書概念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刑法의 解釋論도 같은 規도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각국에서 電磁的 記錄物을 文書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立法動向이 있음도 이미 살펴 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종래 書面으로만 해오던 情報의 保存, 利用機能이 컴퓨터데이터에 의하여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電磁的 記錄物을 文書에 準하여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立法措置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刑法改正審議委員會

도 電磁的記錄의 刑法的 保護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小委員會에서 마련한 改正試案에 電磁的記錄의 不正作出行爲 등을 처벌하는 規定을 文書犯罪에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으므로 改正試案의 내용을 소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改正試案의 內容

現行法	改正試案
<p>第228條(公正證書原本等의 不實記載) ①公務員에 대하여 虛偽申告를 하여 公正證書原本에 不實의 事實을 記載하게 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萬5千환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29條(偽造等의 公文書의 行使) 偽造, 變造, 作成, 變作 또는 不實 記載한 前4條記載의 文書, 圖畫, 公正證書原本, 免許狀, 鑑札 또는 旅券을 行使한 者는 偽造, 變造, 作成, 變作 또는 不實記載의 各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p> <p>제234조(偽造等의 私文書의 行使) 偽造, 變造 또는 作成한 前3條記載의 文書 또는 圖畫를 行使한 者는 偽造, 變造 또는 作成의 各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p> <p>第235條(未遂犯) 前10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37條(資格停止의 併科) 第225條 乃至 第227條와 그 行使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p>	<p>第227條의2(公電磁的記錄의 不正作出:新設)公務處理를 잘못되게 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가 만들 電磁的記錄을 不正하게 作出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第228條(公正證書原本等의 不實記載) ① 不實의 事實을 記載하게 하거나 公正證書原本이 될 電磁的記錄에 不實의 記錄을 하게 한 者는 處한다. 第229條(偽造等의 公文書의 行使) 한 第225條 乃至 第227條와 前條 記載의 文書, 旅券을 行使하거나 第227條의2 記載의 不正作出한 電磁的記錄을 公務를 잘못되게 할 目的으로 公務處理에 供用케 하거나 또는 前條 第1項에 記載한 電磁的記錄을 公正證書原本으로 供用케 한 者는 偽造, 變造, 作成, 變作, 不實記載, 不正作出 또는 不實記錄의 各 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p> <p>第231條의2(私電磁的記錄不正作出:新設) 사람의 事務處理를 잘못되게 할 目的으로 그 事務處理에 供用하는 權利義務 또는 事務證明에 관한 電磁的記錄을 不正하게 作出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第234條(偽造等의 私文書의 行使) 또는 圖畫를 行使하거나 第231條의2記載의 不正作出한 電磁的記錄을 사람의 事務處理를 잘못되게 할 目的으로 그 事務處理에 供用케 한 者는 偽造, 變造, 不正作出 또는 作成의 各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 第235條(未遂犯) 前1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37條(資格停止의 併科) 第225條 乃至 第227條의2와 그 行使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p>

2. 檢討

改正試案은 종래의 文書가 電磁的記錄으로 대체되는 경향에 따라 電磁的記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갖는 證明的 機能을 인정하여 文書犯罪에서와 같은 保護를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文書의 代替機能을 갖는 電磁的記錄에 대한 刑法的 保護의 범위와 한계는 文書犯罪과 靑를 같이 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개정시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條文形式에 있어서는 不正作出罪의 行爲態樣으로 「電磁的記錄을 不正하게 作出한다」라고 規定하고, 主觀的 構成要件으로서 개정시안은 「사람의 事務處理를 잘못되게 할 目的으로」란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 입법례의 표현을 따르고 있다.

II. 컴퓨터詐欺罪의 新設

1. 改正必要性

데이타의 교환만에 의하여 完結되는 去來形態가 증가하고 去來의 自動化가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不可視的인 帳簿貨幣의 移動 등 財産侵害行爲에 대하여 우리 現行刑法上의 절도, 竊령, 사기, 배임죄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음은 前述한 解釋論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러한 경우, 처벌의 間격을 메우고 法解釋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 刑法典에 컴퓨터 不正操作에 의한 財産犯罪을 規律하기 위한 規定을 新設할 필요가 있다. 刑法改正審議委員會도 컴퓨터詐欺罪의 新設의 必要性를 인정하여 개정시안에 「컴퓨터惡用詐欺罪」를 마련하여 審議中에 있으므로 개정시안의 內容을 소개하고 妥當性을 검토하기로 한다.

2. 改正試案의 檢討

改正試案은 刑法 제347조(詐欺罪)의 다음에 「제347조의 2(컴퓨터惡用詐欺) 컴퓨터에게 虛僞의 情報나 不正한 指令을 주어서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者는 10年 以上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이 개정시안은

現行刑法上の詐欺罪(제347조)가 ①사람을 欺罔하여, ②財物の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の 利得을 取得하는 것을 要件으로 하고 있는 것과 條文形式을 같이 하여, ①컴퓨터에게 虛偽의 情報나 不正한 指令을 주어, ②財産上の 利益을 取得하는 것을 要件으로 規定하고 있다.

日本刑法上の 컴퓨터詐欺罪가 不法利得의 手段으로 ①사람의 事務處理에 使用하는 電磁計算機에 虛偽의 情報 또는 不正한 指令을 주어서 財産權의 得失變更에 관련하는 虛偽의 電磁的記錄을 만들거나, ②財産權의 得失變更에 관련하는 虛偽의 電磁的記錄을 사람의 事務處理에 供用케 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行爲態樣을 「컴퓨터에 虛偽의 情報나 指令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단순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시안의 行爲態樣을 좁게 解釋하면 日本刑法上 컴퓨터詐欺罪의 行爲態樣중 前者에 해당하는 「...電磁計算機에 虛偽의 情報 또는 不正한 指令을 주어서 ...虛偽의 電磁的記錄을 만드는」 경우만을 포섭하게 되고 後者인 「... 虛偽의 電磁的記錄을 사람의 事務處理에 供用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日本刑法의 컴퓨터詐欺罪가 虛偽의 電磁的記錄만을 行爲對象으로 규정한 까닭에 拾得한 진정한 CD카드의 不正使用에 의한 財産取得을 處罰할 수 없는 맹점이 있음은 記述한 바와 같은바, 개정시안도 行爲態樣을 「虛偽의 情報나 不正한 指令을 주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역시 拾得한 CD카드의 不正使用을 處罰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Ⅲ. 컴퓨터業務妨害罪의 新設

1. 改正必要性

데이터의 正操作에 의하여 他人의 業務에 提供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改變, 消去하는 경우에 現行刑法上の 業務妨害罪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對하여 살펴볼 때 現行法上 業務妨害罪의 行爲態樣인 僞計나 威力은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通說에 의하면 컴퓨터의 不正操作에 의한 業務處理에 現行法上の 業務妨害罪를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람이 간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컴퓨터處理過程을 妨害하는 행위

를 處罰하는 法規定을 新設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改正試案의 檢討

개정시안은 두 가지 案을 마련하고 檢討中인 바, 第1案은 刑法 제314조 제2항에 「電磁計算機 또는 電磁的記錄을 損壞하거나 電子計算機에 虛偽의 情報 또는 不正한 指令을 賦與하거나, 使用目的과 다른 動作을 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고 규정하고, 第2案은 제314조 제2항에 「컴퓨터에 依한 情報處理에 支障을 주어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 또는 5年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第1案은 日本刑法의 컴퓨터業務妨害罪와 같은 構成要件의 表現을 사용하면서 法定刑은 一般業務妨害罪와 같이 하고 있으며, 第2案은 行爲態樣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컴퓨터에 依한 情報處理의 지장」이란 表現을 사용하면서 法定刑을 가중한 규정이다. 構成要件을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第1案과 같이 行爲態樣을 明示하되, 컴퓨터에 의한 業務妨害의 結果가 至大함을 고려하여 法定刑은 加重하는 것이 낫지 않는 가 생각된다.

IV. 데이터損壞罪의 新設

現行刑法上 컴퓨터의 不正操作에 의한 데이터의 消去 등에 대하여 財物 損壞罪를 적용할 수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記錄媒體에 收錄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데이터의 可視的인 성질에 집착하면 損壞罪의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되고 記錄媒體를 떠나 電送中인 데이터를 消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론구성마저 어렵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생길 處罰의 間격을 메우고 法適用의 明確性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財物損壞罪와 별도의 데이터損壞罪를 新設하여 立法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刑法改正審議委員會도 데이터損壞罪의 新設必要性을 인정하여 개정시안에서 刑法제366조(財物 또는 文書의 損壞)의 규정 중 「財物 또는 文書」를 「財物, 文書 또는 電磁的記錄」으로 바꿔 電磁的記錄을 행위객체로 추가하고 있다.

V. 컴퓨터스파이罪의 新設

오늘날 컴퓨터 데이터에는 중요한 個人的 秘密, 企業秘密 등의 포함되어 있어 그 秘密의 누설, 탐지로부터 이를 保護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行刑法이 情報 그 자체의 취득을 處罰對象으로 삼고 있지 않아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立法의 필요성은 일용 인정된다. 그러나 情報保護를 위한 立法을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情報公開의 原則이다. 이 원칙은 市民自治를 위한 자유로운 情報의 流通을 요청하는 소위 「알 權利」의 制度的 保障을 의미하며 이는 個人情報에 대한 本人의 컨트롤을 요구하는 프라이버시保護와 통상 矛盾, 衝突하는 관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스파이罪를 新設함에 있어서는 上記의 두 要請을 어느 범위에서 조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美國에서는 데이터保護를 중심으로 하는 1984년의 聯邦法이나 1978년 이후의 州法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1967년에 연방정보공개법, 1974년의 연방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이 제정되었으며,⁴¹⁾ 日本에서는 改正刑法草案에서 企業秘密漏罪規定의 新設을 논의하다가 소비자保護, 공해방지운동에 대한 제약 등의 逆機能을 우려하는 비판때문에 결국 위 條項의 新設이 좌절되어버렸다.⁴²⁾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情報公開의 原則과 이를 위한 입법이 실현되지 아니한 우리의 입장에서 컴퓨터스파이罪를 新設함은 時機尙우가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VI. 컴퓨터不正使用罪의 新設

컴퓨터설치에 비싼 費用과 努力이 들어 無斷利用에 대한 유혹이 많고 電算人員의 확대로 不正利用의 가능성이 激增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대

41) 加藤敏幸, 「コンピュータ犯罪の實態と對應動向」, 30面; Wharton, 「Legislative Issues in computer Crime」, 21 Harvard J. on Legis.(1984), p.239.

42) 西原春夫, 「コンピュータの導入と刑事法上の諸問題」, ジュリスト 제484호(1971. 7), 39面.

한 새로운 處罰規定을 新設할 필요성은 일응 인정되나, 절도죄에 불법영득의사를 要求하고 있어 사용절도를 절도죄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法制에서 컴퓨터시간절도 만을 예외로 인정하여 처벌법규를 두는 것은 법익보호의 형평상 아직 이르다고 본다. 立法例를 보더라도 데이터를 財產概念에 포함시켜 컴퓨터서비스절도를 處罰하는 美國의 州法을 제외하고는 절도죄의 성립에 不法領得意思를 要求하는 日本, 獨逸 등의 法制에서는 아직 이를 處罰하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⁴³⁾

43) 許一泰, 前揭論文, 62面.

第 4 章 商工部の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백 만 기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 정보진흥과장)

第 1 節 序 論

I. 最近情報產業動向

21세기를 향한 오늘날의 세계는 工業化社會에서 情報化社會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즉,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情報產業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情報流通이 원활화 되어 고도화, 다양화 되어가는 민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경제활동의 효율적·합리적인 운영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情報化社會의 흐름에 대응하는 政府의 政策的 課題를 法的 對應이라는 관점에서 서술코자 하는 바, 이를 위해서 우선 世界情報產業과 國內產業의 動向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情報化社會에서의 政府의 역할 및 商工部の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그 政策課題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政策課題를 실현하기 위한 商工部の 情報化 關聯政策의 現況과 推進計劃을 살펴본 이후에 향후 효율적인 情報產業 육성을 위한 情報化 關聯政策 遂行에 필요한 法的 課題를 논하기로 한다.

情報化社會에서의 政府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최근의 情報產業 分野의 세계적인 동향과 國內情報產業動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世界情報產業은 경제의 지역별 블록화 현상에 따르는 각 권역별 보호주의 장벽의 강화를 첫번째 특징으로 지적할 수가 있다. 즉 EC국가의 單一市場化,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추진 노력, 아시아태평양地域經濟會議(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uncil)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블록화의 흐름이 情報產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럽시장, 미국시장, 일본시장으로 구분지어지는 시장권역간의 貿易 및 技術障壁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두번째로는, 知的財産權의 保護強化를 등 수 있다. 특히 미국은 70년대 후반까지는 컴퓨터, 반도체 등 情報產業 關聯 하이테크의 技術이나 市場에 있어서 比較優位를 지켜왔으나 8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추격으로 그 위치가 위태롭게 됨에 따라 아직까지 比較優位를 점하고 있는 분야의 유지를 위해서는 知的財産權 保護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가지 최근 情報產業의 主要動向을 보면 標準化의 급속한 진전을 들 수 있다. 즉 無形의 情報를 복잡, 다기한 전세계의 社會構成員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표준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標準化는 通信, 媒體交換, 機器結合, OS, 文書交換 등 각 영역에서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世界情報產業의 특징에 따라 後發產業國인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바, 技術保護主義 장벽으로 先進技術의 이전이 점점 어려워질뿐 아니라 知的財産權 保護가 강화됨에 따라 先進技術에 대한 對價支拂 負擔이 가중되어 우리나라 情報產業의 國際競爭力 強化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國內情報產業의 動向을 보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인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 바, 1983년 컴퓨터산업이 시작된 이래 199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急速成長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國內外 環境變化로 成長勢가 크게 둔화되어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면 ①生産品目이 PC위주로 구성(42%)되어 중·대형 범용컴퓨터가 2%에 불과하고 (美國, 日本 등은 30% 이상), ②축적된 基盤技術이 취약하여 先進國들이 技術移轉을 기피할 경우 과도한 特許料 支拂 등의 부담으로 產業의 成長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며, ③주변기기 및 부품 소재 산업의 미발달로 國際競爭力이 약할뿐만 아니라, ④컴퓨터 이용마인드가 취약하여 需要基盤이 취약하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情報產業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情報處理產業 (S/W, DB, SI

산업 등)은 아직 幼稚段階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동산업의 육성이 우리나라 情報産業 發展의 핵심적 변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對應이 미흡한 실정이다.

II. 情報化社會와 政府의 役割

최근의 情報化社會에서의 情報産業育成을 위한 정부의 役割의 범위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정도 수준에 오른 2차 산업분야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업계의 自律調整機能에 맡겨야 한다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幼稚段階의 情報産業分野에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그 산업의 육성방향을 선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보다 先進國인 美國, 日本, EC 등이 이러한 産業政策을 전개시키고 있음을 보아도 자명하다.

이에 따라 情報化社會에 대응한 産業育成을 위해서는 政府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關聯部處間의 機能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現行 各部處의 個別施策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즉, 情報機器(H/W) 製造業과 정보통신망 사업은 각각 商工부와 遞信부가 主務部處로서 關聯政策推進에 별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산업분야인 情報處理産業은 主務部處가 불분명한 가운데 S/W업은 商工부와 科技處, 情報提供 및 資料處理業 (DB, DP, VAN 등)은 商工부와 遞信부가 個別施策을 추진중에 있어 業務의 重複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둘째, 情報化促進, 情報産業發展基盤造成을 위한 基本法의 未備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行政組織 및 法律體制로는 全體 産業政策과 연계시킨 종합적인 政策推進을 통한 産業 및 各分野의 情報化 促進 및 情報産業의 효율적 진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情報産業에 관한 基本法이 制定되지 않아 關係部處間 業務領域의 論難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後節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다.

정보산업 분야	세분류	상 공 부	과 기 처	체 신 부
정보기기 제조업	컴퓨터 통신기기	• 산업의 지도육성 (공업발전법)	• 관련기술진흥 (기술개발촉진법)	• 기술기준제정 및 통 신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전기통신 기 본법) • 통신기기의 구매
정보처리 산 업	소 프 트 웨 어 업	• S/W산업의 지도 육성(공업발전법)	• S/W의 기술개발 및 보호(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S/W 개발촉진법)	• 관련기술개발(전 기통신기본법)
	정 보 제 공 및 자 료 처 리 업 (DB / DP)	• 산업기술정보 유통 체제 구축(산업기술 정보원법)	-	• 정보통신역무 제공 업 등록(공중전기통 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사 업	-	-	-	• 통신역무업무총괄 • 정보통신망운영

第 2 節 商工部の 情報化 關聯政策 推進現況

I. 하드웨어産業 育成對策 推進現況

우리나라 하드웨어산업은 PC 위주의 産業構造, 核心技術의 海外依存, 素材産業의 未發達 등의 근본적인 問題點을 안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1991년도에 商工部에서 추진한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첫째, 국산 주전산기 II(TICOM)의 개발을 완료하고 소위 주전산기 III라고 불리는 고속중형컴퓨터의 개발을 국내 4개기업과 ETRI의 共同 開發事業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1993년말까지는 개발 완료시킬 목

표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마더보드産業의 發展基盤을 조성하기 위하여 컴퓨터産業協議會內에 마더보드産業分科委員會를 구성하고 新技術開發을 위하여 총 14억원의 政策資金을 지원하였다.

세째, 製造業競爭力 強化對策의 일환으로 高性能 製品 및 核心部品 開發을 지원하였는 바, 구체적으로는 팜탑 PC 등 新商品 開發資金, LCD, 2.5인치 HDD, LBP 엔진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다.

네째, 國內市場에서 문제되어온 PC 및 周邊機器의 덤핑방지를 통해 流通 및 價格秩序 確立을 위해 同品目を 團體隨意契約 品目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다섯째, 原產地 證明制度의 시행 및 수입선다변화 制度의 強化를 통해 國產製品의 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여섯째, 電子娛樂機器 産業의 活性化를 위해 오락용 프로그램 연구조합을 설립하고 輸出産業化 促進을 위한 政策資金 支援을 개시하였다.

금년에는 1989년 이후 악화되어온 컴퓨터산업의 競爭力을 회복하기 위해 技術開發에 대한 集中投資를 통해 國家戰略産業인 PC산업의 재도약기반을 조성하고 高附加價值製品 생산위주로 産業構造를 高度化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商工部, 遞信部 공동사업으로 關聯企業, 金融機關, 韓國通信이 共同出資하는 컴퓨터 전문리스(임대)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國家基幹電算網 2段階事業 支援計劃과 연계 추진할 계획인 바, 1992년 상반기중 구체안을 확정하여 하반기에는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작년에 발표하였던 컴퓨터산업의 競爭力 提高對策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마더보드産業의 발전기반조성, 核心部品 및 고성능 주변기기 개발, 국산컴퓨터 수요확충을 위한 制度改善, PC의 과당경쟁방지 및 部品共同購買事業의 活性化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II. 情報處理産業 育成對策 推進現況

소위 情報處理産業이라고 구분지워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産業, 데이터베이스産業, 시스템통합産業의 育成을 위해 1991년도에 商工部가 추진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첫째, 1991년 4월 19일 220개 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情報시스템産業振興協會를 설립하였고 둘째,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政策資金으로서 工業發展基金에서 24억 5천만원을 긴급支援하였으며 셋째, 「製造業 競爭力 強化對策」의 주요사업의 하나로써 용인에 소프트웨어 研究團地建設을 추진하였고 넷째, 소프트웨어業體(27개 업체 192명)에 대한 兵役特例業體 指定을 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DB)産業의 육성을 위해 첫째, DB業體에 대한 政策資金으로서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中 중소기업 情報化事業費에서 14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1991년 10월부터 KOEX에서 DB常設展示場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DB마인드고취 및 DB認識提高를 도모하였고, 셋째, 한·일 DB産業 懇談會를 개최하여 兩國間 産業協力을 도모하였다.

이와 아울러 情報産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SI)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스템통합업체 登錄制度, SI업체에 대한 稅制支援, SI산업의 需要基盤 擴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스템통합산업 育成對策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정보시스템産業聯合會內에 SI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1991년도에 조성된 情報處理産業의 기반위에 금년도에는 각종 情報處理産業 育成對策을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우선 소프트웨어 産業育成을 위해서는 경기도 용인지역에 53천평 규모의 소프트웨어 연구단지 건설을 1993년도에는 70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綜合對策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정보시스템産業振興協會의 기능도 계속 活性化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DB産業育成對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바, 이를 위해서 KOEX내 「DB常設展示場」을 연장 운영하고 韓國DB産業協會의 기능을 活性化 시킬 것이며 DB산업의 國際協力도 촉진해 나갈 것이다. 民間DB産業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民間DB金融支援 制度」를 실시해 나가고 産業技術情報院으로 하여금 DB산업에 대한 支援機能을 강화시키도

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통합(SI)산업의 육성을 위해 「綜合情報시스템事業者 臺帳登錄」制度를 시행할 것이며, 첨단정보빌딩시스템(IBS)산업도 본격 육성하여 나갈 것이다. 특히 현재의 「工業發展法」 및 限時法인 「中小企業經營安定 및 構造調整에 관한 特別措置法」(商工部)과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科技處)만으로는 情報處理産業分野(情報處理, DB)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치단계의 情報處理産業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法律의 制定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法律의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II. 産業情報化政策 推進現況

지금까지 추진한 機能別, 部門別 産業情報化 추진상황을 보면 첫째, 中小企業情報化事業은 지금까지 560억원을 中小企業의 個別情報化事業 및 범용 S/W, DB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둘째, 流通情報化事業은 유통정보센터를 설립 運營하였으며 POS 시스템 도입을 擴大하였고 셋째, 무역자동화사업은 1991년 12월에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어 무역자동화 시범사업 준비 및 한국 EDI FACT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넷째, 地域情報化事業은 9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運營하고 있으며 地域情報化 추진협의회 및 지역별 연구회도 산발적으로 構成되어 있는 상태이다.

금년에는 이러한 각종 기능별, 부분별 情報化事業을 綜合的으로 조정(Coordination)하고 업종별로 情報化政策 추진시 발생할 중복투자 및 정보미속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情報化政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 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商工部, 業種別 단체, 情報産業 團體 등으로 구성되는 情報化政策協議會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個別情報化 사업별로 금년도 推進計劃을 살펴보면 첫째, 「中小企業情報化事業」은 中小企業情報化 5개년계획의 4차년도 사업을 240억원지원규모로 추진할 것이며 둘째, 「流通情報化事業」은 製造業體의 표준상품코드등록 및 소스마킹 실시를 유도하고 POS시스템 도입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POS기기 설치 및 POS기기 국산화에 대한 支援을 강화할

계획이며 세제, 「貿易自動化事業」은 貿易業務自動化 促進에 관한 法律의 施行令 및 施行規則 制定을 1992년 7월까지 완료하여 무역자동화 전담회사를 설립하고 1992년 하반기부터는 貿易自動化業務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네째, 「地域情報化事業」은 기존의 9개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地域情報化 추진협의회 및 지역별연구회 운영도 활성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第 3 節 商工部의 情報化 關聯政策에 따른 法的 課題

I. 情報化政策 關聯法規 現況 및 問題點

1. 現況

우선 현행의 소위 電子情報產業에 관한 法律內容을 정리·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상 공 부〉

<p>공업발전법</p>	<p>(목적) 공업의 균형발전 도모 및 합리화 촉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상공부장관은 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 추진 (공업발전기금) 공업의 균형발전과 합리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p>
<p>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p>	<p>(목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기술개발과 정보화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촉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설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1992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 - 기술도입에 의한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 생기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기술개발사업 -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지원 (중소기업정보화사업) 과기처,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촉진계획 수립·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정보화 기술개발 - 중소기업정보화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p>(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설립)</p>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p>(목적) 무역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정보의 신속화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p> <p>(무역자동화사업자)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로서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사업 영위</p> <p>(무역자동화망의 구성과 이용) 무역자동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용</p> <p>(전자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부장관이 수립 고시 ○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것과 같은 효력 ○ 위조 및 변조와 내용누설 방지

〈체 신 부〉

전기통신 기본법	<p>(목적)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발전촉진</p> <p>(전기통신기본계획수립)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 수립·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p>* 연구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 가능</p>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p>(목적) 전산망 개발보급과 이용 촉진을 통한 정보화사회 기반 조성</p> <p>(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사업의 지원 육성 -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p>(기술개발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p>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 양성 <p>(전문단체의 지도 육성)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양성, 홍보 등을 하는 단체를 지원·육성</p> <p>* 지원방법(시행령 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망사업자 및 다른 전문단체의 기술 및 기기의 활용알선 -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제공 - 외국의 전문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알선
<p>전기통신 공사법</p>	<p>(목적)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도모</p> <p>(제 13조의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출자한 주식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중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공제한 금액을 별도로 적립 2. 체신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투자 또는 출연하게 한다.

〈과학기술처〉

<p>기술개발 촉진법</p>	<p>(목적)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p> <p>(특정연구개발사업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처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시행 - 동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 <p>(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처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출연금 지급 가능
---------------------	--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p>(목적)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널리 이용하게 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p> <p>(시책의 기본방향) 과기처장관은 상공부장관, 체신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원활한 수요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을 강구한다.</p> <p>(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정부는 소프트웨어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전산망기술개발사업(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실시</p> <p>- 정부는 동사업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p>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p>(목적)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p>

2. 問題點

情報産業에 대한 현행의 法律體系를 유심히 분석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法的 體系가 미흡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결국은 法的 體系 미흡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분야에서의 關聯法規가 重複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분명하게 소관이 정해진 法律의 미비로 말미암아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는 類似法律의 援用을 불러일으키고 이 경우 여러 가지 法律의 重複 援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 문제점인 법적 정비의 미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情報處理産業分野에서 나타난다. 미래 정보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情報處理産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情報處理産業을 총괄하는 새로운 法律의 制定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일본의 경우에 「情報處理促進에 관한 法律」을 운영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괄적이고 綜合 的인 法律의 制定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法律은 制定되

지 못하고 개별산업의 수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法律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도에 상공부가 소위 「情報産業發展基盤造成에 관한 法律」을 입안하여 制定을 추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同法案이 關係부서의 완강한 반대로 立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후에 同法案 추진과정이 서슬되고 금년에도 그러한 형태의 法律의 立法이 추진될 것이나, 이제는 情報産業 關係부서의 대응적 협조로 명실상부한 情報化社會에 대응하는 法律이 制定되는 것이 시급하다.

II. 지금까지 立法推進事例 및 檢討內容

1. 情報處理産業 關聯立法 推進事例

최근 情報産業에 관한 立法을 추진한 내용중 情報處理産業 분야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에 과학기술처가 추진한 「情報化社會促進法」, 1990년 체신부가 추진한 「情報·通信振興法」, 1991년에 상공부가 추진한 「情報産業發展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등이 있으나 이러한 法律은 關係부처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科技處의 「情報化社會促進法」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처장관이 情報化社會 促進 基本計劃을 수립·공고하고 同情報化 推進을 위하여 상공부, 체신부 등 각 關係기관은 자신이 管理하는 資源의 일정을 情報化 事業費로 充당하게 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法律內容은 기초과학기술진흥의 주무부처인 科技處가 개별산업의 육성을 총괄하게 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용이었다.

遞信部의 「情報·通信振興法」의 주요내용은 체신부가 정보통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신부차관 주재하에 情報通信振興委員會를 구성·운영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 시책의 수립공고, 정보통신설비 현대화 시책의 수립 공고, 정보화 추진시책의 수립공고, 정보통신전문인력양성시책의 수립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체신부 산하에 情報通信振興事業團을 설립하고 情報通

信振興基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同法案은 체신부 고유업무영역을 일탈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시책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나, 稅制·立地·産業技術·輸出등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이 결여되어 종합적인 情報産業育成法이 되지 못하여 여타 부처의 별도 法制定 推進을 수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政策의 일관성 결여·기능중복·정책혼선등을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었다. 또한 遞信部長官이 조정기능(정보통신진흥위원장)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商工部の 「情報産業發展基盤造成에 관한 法律」의 입법추진내용을 살펴보면 情報化社會 기반조성의 기본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수립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와 아울러 情報化社會 기반조성 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으로서 情報産業政策의 종합조정기능을 갖게 하였다. 아울러 情報産業 관련 부처의 기능을 商工部는 情報産業振興政策 수립·시행, 産業情報化 推進, 遞信部는 정보통신 고도화를 통한 對國民 고도서비스 제공, 關聯設備 확충 및 利用技術開發, 科技處는 정보화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基礎科學 기술정책의 수립·시행, 기타 관련부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처기능에 적합한 情報化 시책 추진 등으로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존의 설치운영은 經濟企劃院으로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관련부처협의 과정에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아 立法이 좌절된 바 있다.

2. 기타 情報化關聯 立法推進事例

한편 商工部에서는 1991년에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과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등 두 개의 정보화관련 法律을 입법 추진하였는 바, 먼저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의 입법추진 배경, 필요성, 주요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입법추진배경〉

貿易業務自動化라 함은 무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통적인 文書의 작성과 전달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식 대신 文書에 기록된 情報를 전자문서화하여 컴퓨터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함으로써 文書 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貿易業務自動化事業은 현행의 전통적인 무역업무처리방법에 의해서는 貿易節次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인력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되어 우리 무역업계의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하여 貿易業務를 처리함으로써 무역절차를 簡素化 하고 수출입 처리시간·비용및 인력을 절감하여 무역업계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총수출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 등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홍콩, 대만 등 우리의 경쟁국들도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국 무역업계의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貿易業務自動화網을 완성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무역업무자동화 추세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 상품의 輸出競爭力을 약화시켜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며 이러한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은 이제 우리 수출산업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정부가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56회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貿易業務自動화促進에 관한 法律」을 제정·공포(法律 제4479호, 1991.12.31)하게 되었다.

〈입법필요성〉

첫째, 전자문서에 대한 法的인 效力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의 文書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 대신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 방식을 도입하려면 우리나라와 같은 成文法國家에서는 우선적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法的效力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바, 아무리 기술적으로 전자문서교환방식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모든 貿易業務를 문서와 서명날인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現行貿易關聯法令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업무자동화 방식이 도입될 수 없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한 法的效力을 부여하여야 하였다. 또한 전자문서로 무역거래를 하는 당사자간 분쟁예방과 분쟁발생시기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到達時期와 그 내용의

眞實性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도 요구 되었다.

둘째,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 保安管理가 필요하였다. 무역업무 자동화망을 통해 流通되는 전자문서와 무역정보는 무역업체의 營業秘密과 무역유관기관의 機密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와 무역정보의 偽造, 變造를 방지하고 그 秘密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안심하고 무역업무 자동화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세째,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지정 및 적절한 法的地位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무역자동화서비스를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에게 제공하는 무역자동화사업자의 資格要件과 指定節次를 정하고 동사업자의 權限과 義務를 명확히 하여야만 무역 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역자동화에 필요한 무역제도를 개선하여야 하였다. 현행 무역절차에서는 약 400여종 이상의 서류가 流通되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서류를 모두 標準化하여 전자문서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書類의 提出을 면제하거나 문서나 전자문서 이외의 간이한 방법 즉, 팩시밀리나 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여러기관에 중복 사용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있어야하며 이러한 무역제도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法的根據가 필요하였다.

〈法律의 주요내용〉

이렇게 입법된 同法律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무역업무에 대한 자동화사업은 商工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商工部長官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역자동화망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한 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토록 한다.

- ③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현행 문서에 의한 무역업무처리방법 대신 商工部長官이 고시하는 전자문서의 標準化計劃에 의하여 標準화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자동화방식으로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는 것은 貿易關聯法令 등에서 정한 文書에 의하여 무역업무를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 ⑤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者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⑥ 商工部長官은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중 전자문서로 전송 등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타 簡易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
- ⑦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의 偽造 또는 變造와 그 내용의 漏泄 등을 방지하여 전자문서 流通에 따른 法的 安定性을 확보하고 무역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한다.

또한 상공부는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의 입법도 추진 하였는바, 동법은 각종 산업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Layout Design)를 별개의 知的財産權 次元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다.

同法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立法壓力도 강하였고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9년 이후 商工部를 중심으로 立法이 추진되었으나 법에서 보호대상의 범위, 보호요건,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國際的인 論議가 진행중(UR의 TRIPS 협상)인 바, 동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立法內容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 1992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同法은 향후 국제협상의 타결 결과를 반영하여 立法이 성사될 전망이다.

Ⅲ. 立法推進課題 및 政策方向

지금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부처의 소관이 분명한 특정분야의 입법은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으나(科技處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商工部の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 등) 전체 情報產業, 특히 情報處理產業을 총괄하는 法律의 입법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情報產業의 육성에 관한 綜合的인 法律의 입법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들이 분명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情報產業育成的 綜合조정기능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情報產業分野에서 相關부처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情報產業政策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綜合조정기능을 法律로 명시하여 그러한 조정행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소홀히 한 法律의 입법은 또 다른 영역 논쟁을 불러 일으켜 綜合 조정을 목적인 法律이 개별사안을 다루는 法律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둘째, 相關부처의 기능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法律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칙상 法律로 명시하여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셋째, 情報產業育成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활용계획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최소한 綜合조정기능을 갖는 부서주도하에 기금이 설치 운영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다양화 하는 情報產業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個別立法의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1991년도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法律이 制定된 것의 후속조치로서 무역자동화 추진에 따른 細部施行令을 철저히 검토·수립하여 무역자동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同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標準化 問題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國內 情報產業의 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知的財産權 保護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情報產業分野의 知的財産權 次元의 보호

를 규정하는 立法 必要性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도 향후 우루과이 라운드의 知的財産權 協商이 타결되어 그 결론이 도출되면 세계적으로는 인정된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아직 국내에서는 幼稚段階에 있으나 향후 산업활성화가 된 이후에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知的財産權 지원에서의 保護法律도 사전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第 5 章 遞信部の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김 준 호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기획과 사무관)

第 1 節 序 言

증기기관 등 동력의 발명으로 農業社會가 産業社會로 발전되었는데 컴퓨터기술과 通信技術이 결합되면서 産業社會는 情報社會로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情報社會」란 컴퓨터와 通信技術이 결합하여 情報의 蓄積處理, 傳達能力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情報의 價値가 産業社會에서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해지는 사회로서 情報와 知識이 중요한 財貨로 인식되고 情報技術이 家事, 企業活動, 行政 등 인간의 갖가지 활동에 도입되어 人間의 諸般 社會·經濟生活樣式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급격하게 情報社會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遞信部の 情報化 推進政策과 立法的 對應方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第 2 節 情報社會와 情報通信

I. 情報社會의 特徵

1. 産業社會의 問題解決

産業社會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고갈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오는 環境汚染 등 각종 公害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

므로 이를 치유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情報社會는 다양한 情報技術을 통하여 物質資源과 에너지의 사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各種 公害排出을 抑制할 수 있어 산업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公害問題 등을 해결할 수 있다.

2. 情報의 價値增大

現代社會는 과거의 農耕社會나 産業社會에 비해 너무나 복잡한 구조로서 관련지어져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個人, 企業 나아가 國家를 막론하고 目標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情報를 수집하고 또 이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情報社會로 진전될수록 情報의 價値는 더욱더 증대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情報社會와 情報通信

情報通信은 情報社會에서 가장 효율적인 情報의 流通·傳達媒體이며 國家 經濟社會發展을 선도하는 사회기반구조로서 풍요로운 國民生活의 실현, 經濟活動의 효율화 및 활성화, 社會的 諸機能의 효율화 및 國際間的 協力과 交流를 촉진하고, 가치있는 情報를 축적하고 情報의 流通을 원활히 함으로써 새로운 價値와 富를 창조하는 情報中心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구조이다. 또한 컴퓨터와 결합하여 단순한 情報의 傳達機能으로부터 고도의 情報蓄積 및 處理機能을 갖게 됨으로써 情報社會實現의 核心的 機能을 담당하므로 통신망의 고른 보급, 다양하고 경제적인 通信 서비스를 제공 및 하나의 통신망내에서 모든 情報를 처리할 수 있는 綜合 情報通信網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컴퓨터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각종 다양한 형태의 情報를 쉽게 수집·가공·저장·처리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情報를 빠르고 값싸게 그리고 멀리 전달할 수 있는 광대역 高速通信技術이 발달하면서 이들 양자가 相互結合하게 됨에 따라 情報의 利用이 손쉬워지고 그 活用度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情報通信技術과 컴퓨터技術의 革新과 融合으로 발전된 情報通信은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각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지금의 産業社會를 情報社會로

변모시키는 社會變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情報通信을 기반으로 한 情報通信産業은 종래의 電信·電話 등의 通信技術에 컴퓨터, 반도체, S/W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성장한 산업으로서 그 자체가 高附加價值産業일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生産性과 能率性을 향상시키는 基盤産業이므로 이 산업은 앞으로 高度成長이 예측되는 資源節約的이고 知識集約的인 尖端技術産業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國家에 있어서는 집중적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아시아 新興工業國家인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情報通信産業을 國家의 核心戰略産業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EC의 「Green Paper」에 의하면 200년경에는 情報通信關聯産業從事者가 全體 雇用人口의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情報通信産業이 여타 산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바와 같이 情報社會에서 情報通信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第 3 節 情報社會와 遞信部の 役割

I. 韓國의 與件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부존자원이 극히 빈약하고 投資財源도 부족한데 國內市場은 협소해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로의 진출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래서 그동안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政策을 추진하여 온 결과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 高賃金, 高物價, 國際原資材 價格의 上昇 등으로 國際收支가 크게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國家經濟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한 尖端技術 및 尖端産業에서의 國際競爭의 첨예화와 국가간 技術隔差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과구를 모색해야 하는 二重의 負擔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 가장 적합한 부문이 情報通信産業이다. 情報通信産業은 에너지와 자원의 저소비 및 高附加價值를 창출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과급효과가 지대하고, 公害問題 등 産業社會病幣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戰略産業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情報社會의 發展主體로서 情報通信

1. 産業의 生産性 增大 및 競爭力 強化

情報通信技術은 要素技術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情報通信技術의 발달은 타 商品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情報通信의 高度化는 情報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企業의 生産, 管理, 販賣 등의 計劃 및 意思決定을 효율화하여 준다. 또한 情報通信은 企業의 立地選擇 및 企業內部的 部署配置에 있어 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산업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生産要素 및 資源의 使用에 效率性을 증대시켜주며, 전반적으로 生産체제를 원활하게 하여 줌으로써 급격한 市場變化 및 與件變化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2. 새로운 社會間接資本으로서의 情報通信

情報社會의 進전에 따라 情報通信은 새로운 社會間接資本으로 生産공장으로부터 소비자의 가정까지를 신속하게 연결함으로써 商品이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창고·도로·항만 등에서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 流過程에서 병목현상을 상당히 완화해 주고, 교통수요의 상당부분을 대체하여 도로·항만·철도 등의 전통적인 社會間接資本의 부족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3. 成長主役으로서의 情報通信

이와 같이 前산업이 情報化하고 情報通信이 社會間接資本으로서 重要性이 커짐에 따라 情報通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情報通信産業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情報通信産業의 발전은 情報化를 통하여 다른 산업의 生産性과 競爭力을 제고하여 주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핵심부문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情報通信産業이 國民經濟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4. 國民生活의 質 向上과 福祉增進

급속히 발달하는 情報通信은 원격검침, 홈킹, 홈오토메이션 등 家庭의 情報化, 원격진단, 원격교육 등 醫療 및 教育의 情報化, 金融電算化, 行政의 情報化 등을 통하여 공동서비스와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社會經濟 衡平性 提高

情報通信의 發達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사회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관련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사회,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형평을 提高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地域情報化는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수단으로서 地方自治制의 實施와 함께 地域住民의 情報利用 能力을 提高시키고 地域間의 情報隔差를 해소하며,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地域均衡 發展手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Ⅲ. 遞信部の 役割

世界的인 情報化 물결은 멀지 않는 장래에 情報社會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情報社會는 資源, 에너지와 함께 知識과 技術이 조화된 情報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기능하게 되는 사회로서 情報通信의 役割은 더욱 증대되게 될 것이다. 情報化는 情報通信 技術의 發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해 줌으로써 모든 國家社會의 領域에 자율화를 촉진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근래에 겪고 있는 국제화의 물결도 情報化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情報化와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조류로서 情報社會가 도래하게 되며 그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情報通信은 經濟社會흐름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의 基盤構造일 뿐만 아니라 情報社會의 核心要素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情報通信 部門을 관장하는 부처가 遞信部인데 지금까

지는 情報社會에 대한 認識의 不足과 전통적인 儒敎思想의 영향때문에 遞信部의 役割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情報社會로의 진전에 따라 遞信部는 情報化를 주도하는 부처로서 國家經濟發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第 4 節 遞信部의 情報化推進政策

I.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

情報通信은 철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이 物質의 流通을 위한 社會基盤 構造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遞信部는 情報社會의 核心基盤施設인 基本通信施設을 확충하고 通信網의 高度化와 綜合情報通信網(ISDN)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1. 基本通信施設의 擴充

1991년도에 약 1,700만회선이던 전화회선을 7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이 끝나는 1996년에는 2,470만회선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장거리통신 시설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여 전국기간전송로의 광케이블화와 1995년까지 國內衛星通信網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國際通信施設側面에서는 國際交換施設의 지속적 擴充, 國際電送路 施設의 現代化 및 多元化, 國際海底管通信網 建設에 적극적인 참여와 衛星通信施設의 보강 및 확충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2. 通信網의 高度化

通信網의 知能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通信網 運用능력을 확보하고, 공동선 신호방식(No.7 : 情報交換用回線과 信號處理回線을 분리하여 신호를 별도의 專用網에서 처리하므로 통화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기 및 전송로의 제어기능이 향상되므로 고도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信號方式)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능망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할 계획이며, 個人携

帶通信網을 구축하여 音聲·非音聲級 상용서비스를 1996년까지 제공하고 企業通信網의 高度化를 위하여 서비스別 專用通信網을 구축하며, 公衆企業通信網(Co-LAN) 및 고속디지털 전용회선망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3. 綜合情報通信網(ISDN)의 構築

韓國型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의 조기완성을 위하여 1994년까지 ISDN단말기의 開發普及 및 ISDN번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광대역ISDN基盤造成을 위하여 광대역ISDN交換·電送技術開發을 추진할 예정이다.

4. 事業의 競爭體制 確立

장기적으로 시내전화를 제외한 通信事業 全領域에 경쟁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미 1991년도에 국제전화사업에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移動通信 事業領域에는 1992년도에 경쟁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고, 장거리분야의 경쟁은 국제전화 및 移動通信事業의 경쟁성과를 고려하여 추후 그 경쟁도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경쟁의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情報通信基盤을 확충함으로써 情報社會의 基盤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II. 國家社會 情報化의 促進

國家經濟社會 전반의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國家基幹電算網의 完成, 產業 및 地域情報化의 擴充·새로운 서비스의 開發 普及·情報化適應能力을 제고하기 위하여 情報文化擴散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1. 國家基幹電算網의 完成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은 공공기관의 電算化를 촉진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行政機關, 金融機關, 教育機關 등 국가의 중심이 되는 각급 공공기관등을

電算網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생활과 기업의 높은 생산성을 도모하며, 작고 효율적인 情報를 구현하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표이다.

〈국가기간전산망 추진 기본전략〉

구분	추진대상기관	중점추진방향
행정전산망	행정기관 (7천여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관리 등 6개 우선추진업무의 운영관리 및 부처별 전산화 확대 ·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향상의 효과가 큰 신규사업의 추진 · 금융편의 및 자본시장 개방 대비, 대고객 전산망 구축
금융전산망	금융기관 (1만4천여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간 공동이용시스템 확충에 중점 · 제2금융권의 전산망 구축 · 분산처리(기능분산/지역분산)방식도입
교육·연구 전산망	대학, 연구기관 (1만2천여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컴퓨터보급확대 및 이용활성화 도모 · 최신정보의 즉시 활용체제 구축
국방전산망	국 방 관 련 기 관	· 국방관련 통합정보관리체제 구축

그동안 國家基幹電算網 構築을 위한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86년에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 관한法律이 制定되었으며 감리 및 표준을 담당하는 한국전산원, 자금지원을 위한 通信振興(주), 전담사업자로서의 (주)데이콤, 金融決濟院, 시스템공학센터등 電算網事業 推進機關이 설립·운용되고 있다. 또한, 중형급주전산기의 개발에 있어서는 도입기종인 주전산기 I의 생산 및 성능을 개량함과 아울러 독자기종으로서 주전산기 II를 순수 우리 기술로 '91년 7월에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다기능 사무기기, 한글 및 한자S/W, 教育用 컴퓨터 등의 標準化를 추진하였고, 行政電算網 分野의 住民登錄, 不動產, 自動車, 通關, 雇用, 經濟統計 등 6개 우선사업에 대하여 전국 온라인망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現金自動

引出機의 共同利用, 銀行間 資金決濟, 자동응답서비스, 當行환시스템 등 金融電算網 分野의 銀行間 電算網을 구축하였으며, 敎育·研究電算網 分野의 基盤構築을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설치함과 아울러 學校敎育用 컴퓨터의 보급을 시작하였다.

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國家基幹電算網構築을 완성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國民의 情報利用을 촉진하고 企業의 生産性을 높이고자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行政電算網分野에서는 7천여개 行政機關 등을 대상으로 國民便宜增進을 위한 기관간의 情報의 共同活用事業을 확충하는 한편, 住民登錄管理 등 6개우선 추진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部處別 電算化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金融電算網 分野는 1만4천개 金融機關을 대상으로 金融便宜를 증진하고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해서 對顧客電算網을 구축하며, 金融機關間 共同利用시스템擴充에 중점을 두고, 投資金融, 證券, 保險 등 第2金融圈의 電算網 구축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分散處理(機能分散, 地域分散)方式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1만2천개 大學 및 研究機關을 대상으로 敎育·研究電算網을 추진하여 敎育·研究機關間 情報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컴퓨터의 보급 확대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최신 정보의 즉시활용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國防電算網 分野는 國防關聯機關間 統合情報管理體系를 구축하여 국가방위체제의 先進化를 추진할 계획이다.

2. 産業 및 地域情報化의 擴充

人口, 産業施設 등 모든 經濟活動 基盤의 中央集中化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産業 및 地域情報化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産業情報化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나, 企業의 98%의 이르는 中小企業의 대부분은 産業情報化를 위한 物的·人的資源이 부족하므로 産業情報化를 지원하고 촉진시킬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또한 情報의 均衡적 配分과 産業 및 地域情報化의 特性化가 미흡하기 때문에 産業 및 地域別 特性情報의 체계적인 확보와

이를 위한 원활한 流通體系를 구축하는 일이 긴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情報化에 대한 認識이 저조하고 추진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므로 情報化 推進機構와 地域情報센터構築을 통한 단계적인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産業情報化를 지원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産業分野 情報시스템의 보급을 확장함과 동시에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專門分野別 특성에 맞는 S/W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産業情報 DB開發에 소요되는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投資力이 미흡한 中小企業의 情報化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有望 中小企業 및 冒險企業에 産業情報化의 技術諮問과 情報提供을 확대하고, 情報通信事業者 육성에 연계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 및 稅制支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地域情報化의 基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情報시스템의 보급을 확장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DB개발을 지원하고 地域通信網을 구축하며, 公衆用 情報端末機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 거점도시에 단계적으로 情報化推進機構와 地域情報通信센터를 설치하여 地域情報化를 선도하고, 신축되는 地域情報通信센터는 인텔리전트빌딩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地域情報通信센터 構築後 관련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합 수용토록 하며, 성숙단계에서는 民間團體 및 地方自治團體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郵遞局을 行政網 등과 연계하여 地域情報센터化 함으로써 종합봉사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를 중심으로 情報通信團地의 構築을 추진하며, 通信衛星의 確保 및 運營計劃과 연계하여 텔리포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3. 情報文化 弘報強化

일반국민의 情報文化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情報마인드 擴散을 위하여 公영방송, 민간방송, 교육방송 및 기타 言論機關의 言論媒體를 통한 弘報活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정기발간지 등의

홍보매체의 활용과 정보문화 드라마의 제작, 기타 정보문화에 대한 國民 認識의 提高를 위한 특집물을 기획 방영하는 등 정례적으로 情報文化 弘報放送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해 온 “情報文化의 달” 행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범국민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행사를 분산 개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地域情報化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것을 범부처적 행사로 추진하여 산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韓國情報文化센터 주관으로 情報文化賞 制定 및 運營을 擴大·施行할 예정이며 논문, 글짓기, 포스터, 표어 등의 공모행사 개최와 S/W 및 H/W설계대회, W/P 경진대회등을 실시하고 기타 심포지움, 세미나, 강연회,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범국민적 情報文化 認識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을 대상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情報機器 利用能力提高를 위한 試演會, 展示會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III. 情報通信技術의 開發

1. 情報通信技術의 先進化

情報通信 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學, 研究所, 企業 등의 個別 研究機關間의 機能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연구개발과제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重複投資를 방지하여 投資의 效率化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通信事業者別로 賣出額의 一定比率을 研究開發費로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情報通信서비스의 利用擴散 및 競爭體制 導入 등에 의한 通信網間 상호접속의 필요성의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情報通信 技術의 標準化 體系를 정립하고 標準化의 세부 中長期 計劃을 樹立·施行할 計劃이다.

2. 情報通信 專門技術人力の 養成

情報社會의 進전에 따라 情報通信 分野의 人力需要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고급전문기술 分野의 人力不足이 심각한 형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대학의 관련학과 정원의 증원과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필요시 새로운 教育機關의 設립을 지원하여 人力供給의 양적 확대를 꾀하며, 人力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大學教育을 산업현장에 직접 活用할 수 있도록 情報通信關聯 敎科課程을 改편하여 대학과 산업현장을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情報通信技術의 産業化

情報通信市場은 高度成長을 계속하고 있고 기술개발의 속도가 점차 加速化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通信先進國들은 技術移轉의 回避 및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技術導入料의 急增으로 商品의 價格上昇要 因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技術水準이 낙후되어 있 으므로 앞으로 研究所나 企業 등이 개발한 新기술을 産業화하는데 자금지 원 등 多方面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IV. 電波利用의 活性化

通信分野에 있어서 電波의 利用은 그동안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으 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移動電話 및 無線呼出 서비스의 普及 과 더불어 移動通信 分野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遞信部에서도 電波利用을 活性化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電波利用 環境造成

지금까지의 전파활용기술 및 서비스의 상대적인 낙후는 관련사업의 위 축과 專門技術人力の 不足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國內의 通信市場 개방 및 경쟁체제로의 구조변경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어지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所要技術의 自立化 努力을 통한 競爭力의 強化와 다양한 電波利 用 通信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變化가 요구되

고 있으며 1990년대의 個人通信時代 진입에 필수적인 전파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電波利用環境을 대폭 개선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遞信部는 電波利用을 종래의 규제위주에서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이용촉진 정책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無線通信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情報利用의 便宜 增進과 大衆化를 촉진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보급·확대를 추진하며 안정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련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2. 電波利用 技術의 高度化

다양한 電波利用 서비스의 欲求增大에 따라 電波資源의 需要가 급증하고 있으며, 有限한 자원인 전파스펙트럼의 포화상태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전파감시시스템 기능이 취약하고 국내의 전파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周波數資源의 利用效率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무선국의 증가와 새로운 通信方式의 실용화에 따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파감시시스템을 현대화 하면서, 情報電送의 高速化와 디지털화로 안정된 電波利用 環境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移動通信서비스 高度化 및 擴大

移動通信 電話서비스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도” 즉시 통화할 수 있는 個人通信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범위확대와 양질·저가의 서비스제공이라는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 시스템의 개발과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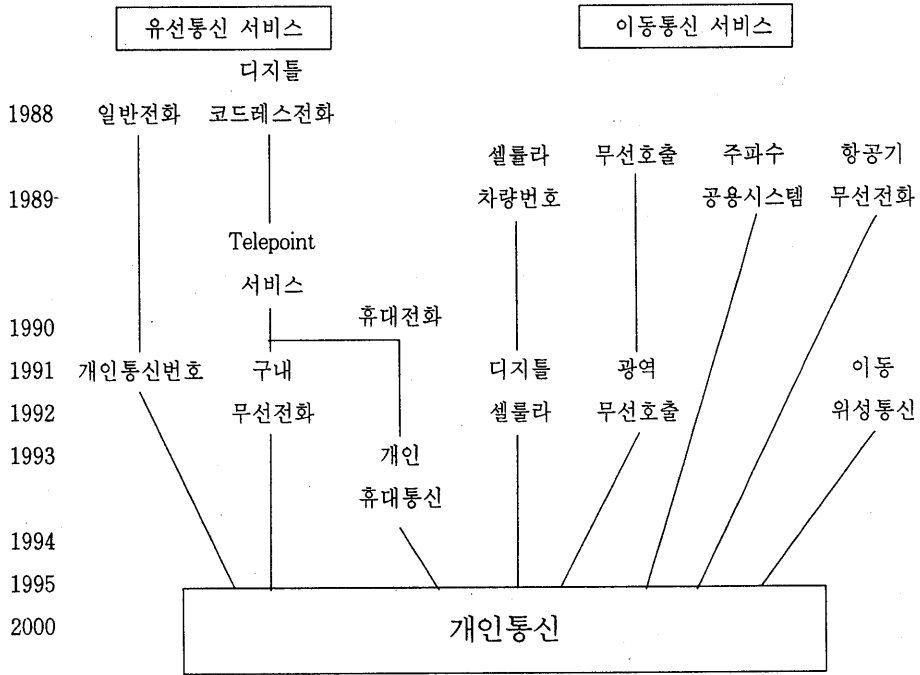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디지털移動通信시스템등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4. 通信·放送衛星의 確保

經濟社會의 發展과 情報社會로의 進入에 따른 각종 다양한 情報通信欲求를 충족하고 전파장애를 받지 않는 高品質 通信서비스의 提供, TV 可視聽地域 擴大, 그리고 광대역 高速通信環境의 具備을 위하여 입체적인 綜合情報通信網으로 구축하고자 國內通信·送用の 무궁화위성을 確保·運

營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전화서비스의 발전추세



5. 放送技術의 高度化

高度情報化社會의 진입에 즈음하여 각종 방송서비스의 다양화 요구가 늘어나며, 放送과 通信이 결합되어지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 7차계획기간중 有線放送 (CATV)서비스의 普及 擴大와 高鮮明TV(HDTV) 電送技術 등의 開發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의 방송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FM 다중방송이나 AM Stereo방송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放送電波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송주파수 再配置計劃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V. 電波技術研究 活性化

선진각국의 技術開發 競爭의 加速化와 技術保護의 強化에 따라 전파관련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電波分野의 國內技術 自立化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여러 기관별로 나누어져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능을 조정하여 그 역할을 특성화하고 產·學·研·官의 研究開發 協力體系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파기술 연구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파연구소의 기능을 보강하여 基礎基盤 技術研究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第 5 節 遞信部の 情報化 關聯政策에 따른 立法的 課題

I. 遞信部の 所管法律 現況

현재 遞信部の 所管法律로서는 ①「電氣通信基本法(1983년 12월 30일 制定된 法으로서 電氣通信技術의 振興, 電氣通信設備의 管理 등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通信委員會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電氣通信事業法(1983년 12월 30일 制定된 法으로서 電氣通信事業의 許可, 電氣通信事業者의 管理 및 電氣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電波法(1961년 12월 30일 制定된 法으로서 無線局의 許可, 無線設備管理 등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電波利用 및 電波에 관한 技術開發의 促進에 대한 사항을 규정)」, ④「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1986년 5월 12일 制定된 法으로서 電算網의 보급확장과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情報社會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⑤「情報通信研究·開發에 관한 法律(1991년 12월 14일 制定된 法으로서 情報通信에 관한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情報通信의 振興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情報通信을 育成·發展시키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 ⑥기타「韓國電氣通信公社法」, 「通信開發研究院法」, 「電氣通信工事業法」등이 있다.

II. 立法的 對應方案

1991년 8월에는 「電氣通信基本法」 및 「公衆電氣通信事業法」을 전면개정하여 電氣通信事業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였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관계를 규율한 사항등은 사업자 이용약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도록 하였고, 「電波管理法」을 改正하여 電波利用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情報通信研究·開發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여 情報通信技術開發을 체계적·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電算網普及擴張 및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을 改正하여 情報社會의 基盤을 다졌다. 1992년도에는 1991년에 改正한 法律의 施行令의 制定 및 改正을 추진하고 「電氣通信工事業法」등을 改正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遞信部에서는 情報社會를 조기에 구축하고 情報通信基盤을 충실히 다지기 위하여 기존 法律의 改正과 새로운 法律의 制定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첫째로, 國家社會 전반의 情報化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法律의 制定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둘째로, 기존의 電氣通信事業法과 放送法이 규율하기 곤란한 衛星通信事業 分野가 존재하기 때문에 衛星通信事業을 규율할 法律을 制定하여 衛星通信事業 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는 情報通信事業分野가 各種 稅制減免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稅法 改正時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情報通信事業의 活性化를 촉진할 계획이다.

기타 情報社會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關聯法律의 制·改正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情報社會로의 진입이 제대로 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 國家發展이 좌우되므로 遞信部는 우리나라의 情報化 基盤을 조기에 구축하고 情報社會로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하여 關聯法律을 적기에 改正하고 또한 情報化 基盤造成을 위한 새로운 法律의 制定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第 6 章 總務處의 政策課題와 立法的 對應

김 태 경
(총무처 능률기획과장)

第 1 節 情報化社會에서의 行政의 役割

I. 情報化社會와 行政

情報化社會란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情報가 중요한 자원으로서 情報의 生産, 貯藏 및 分配가 주요한 활동으로 되며, 컴퓨터가 人間의 發明體로써 核心的인 기능을 수행하는 社會的 狀態”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情報化 社會의 특성 으로서는 ①사회적 과업해결의 無人化 傾向, ②사회적 과업해결의 卽時化, ③사회적과업해결방식의 시스템化 및 ④사회적 과업해결의 統合化 등을 들 수 있다.

情報化社會의 달성을 위해서는, 先決課題로서 ①人工的인 情報機械·裝備의 활용 확대, ②社會的 課業解決에 적절한 使用樣式의 개발 완성, ③저에너지·無公害 社會의 구현, ④새로운 通信媒體의 구축, ⑤高度의 知識產業의 개발 촉진 및 새로운 社會的 價値의 창조와 지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로 다가오고 있는 情報化社會에 대하여 일부 선진제국들은 이미 情報化社會가 도래하였다고 하거나, 적어도 情報化社會 進入의 문턱에 있다고 말하여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을 電算機 普及臺數라는 지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先進國들의 70년대 상황과 비슷한 제1차 情報化 段階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行政機關面에

서 보면 다수의 국가에서 行政組織은 최대의 컴퓨터 利用機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政府機關의 컴퓨터 보급비중은 전체 보급수준의 6.4%에 그치고 있다.

政府는 우리나라가 해결하여야 할 5대 當面課題로서 民生治安의 確保, 教育改革, 科學技術振興, 環境保存 및 交通難 解決을 설정하고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當面課題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高度의 行政 및 各 分野의 情報化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우리 經濟의 중요한 當面問題로 經濟構造 調整問題가 대두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核心產業으로서 情報產業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情報化產業 育성과 情報化社會 促進을 도외시 하고서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세계 10위권의 技術先進國으로 21세기를 주도하여 간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급하게 情報化社會를 촉진시켜야 하는 課題에 더하여 情報化社會가 도래한 후 일어날 수 있는 副作用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 나가야 한다. 예상되는 대표적인 情報化過程에서 과생될 수 있는 個人에게 불리한 情報의 入力, 잘못된 資料의 사용 및 컴퓨터 조희의 남용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侵害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情報化社會에서는 일부 계층만이 情報를 獨占함으로써 民主化에 역행할 수도 있다. 그외 다른 문제로서는 情報獨占과 그 격차의 발생이다. 情報의 利用이 전반적으로 擴大되어 새로운 계층간의 격차가 생겨나 情報의 소유여부, 情報利用 기회의 정도, 情報利用能力的 정도 등에 따라서 계층간 대립이 커다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 社會는 後發走者로서의 이점을 살려 先進國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보다 조속히 情報化社會에 진입하여야 한다는 課題와 동시에, 머지않아 맞게될 情報化社會에서의 새로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만 하는 二重의 課題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行政機關은 社會 전반적 수준에 비하여 뒤져 있는 情報化·電算化 水準을 제고하고 이에 알맞은 制度整備를 통하여 內部能率을 提高하여야 하면서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社會全般의 情報化를 선도하여 국가발전을 기하여야 하며, 情報化社會에서 逆機能을 대처하기 위한 法·制度를 완비

하여야 하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II. 情報化 社會에서의 總務處의 役割

지금까지 總務處를 중심으로 政府가 추진해온 關聯政策을 살펴봄으로서 情報化社會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課題중에서 總務處가 하여야 役割이 무엇인지에 대한 檢討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行政電算網 事業의 추진으로 政府는 1987년 부터 1991년까지의 제1차 行政電算網 事業期間 중 部處別로 추진한 獨自의 電算化 추진이외에 전국 규모의 國民便益增進을 기할 수 있는 住民登錄管理業務 電算化 등 6개 주요업무의 電算化를 추진하여 그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行政電算網 事業은 各 部處別·地域別로 산재되어 있는 行政業務를 綜合 電算化하고, 전국을 하나의 通信網으로 연결, 高度 情報社會에 부응하는 行政情報體系를 구축함으로써 單一 行政權을 形成한다는 기본개념하에 추진되었다. 이러한 行政電算網의 구축완료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 273개 시·군·구 및 3600여개 읍·면·동을 연결하는 全國的 電算網이 구축되어 居住地 單位의 民願서비스에서 全國單位의 民願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住民登錄發給이 10분에서 2분, 自動車登錄이 20분에서 1분으로 處理時間이 단축되는 등 民願서비스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土地所有權 變動處理가 10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드는 등 民願處理節次의 簡素化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국민서비스 차원의 개선외에 凡部處的 全國的 電算網이 구성됨으로써 行政情報 共同活用을 통한 合理的 政策決定에 일조하였으며, 동 사업에 의해 창출된 情報產業需要를 基盤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 중형컴퓨터 生産技術을 確保할 수 있게 되는 등 情報產業 육성에 간접적인 기여가 가능하였다.

또한 1986년에 標準多機能事務機器 사양을 制定하여 1990년말에 과당 1臺 수준으로 기기를 보급하였으며 1993년말까지 中央行政機關에 계당 1臺 수준을 목표로 보급을 확대해 감으로써 行政事務處理의 能率을 제고하고 水準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情報化社會에 대비하기 위한 制

度補完으로서 1991년 6월 사무관리규정을 制定하여 電算網에 의한 文書受發根據을 마련하였으며 標準多機能事務機器 사양 외에도 각종 行政業務處理를 위한 표준소프트웨어의 표준의 制定추진으로 行政機關間 情報共同活用の 기반을 조성하였다.

제1차 行政電算網 사업완료로 조성된 情報化社會의 기반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2차 行政電算網 事業期間중 保健社會部の 國民福祉業務, 遞信部の 우체국종합서비스業務 등 7개부처의 7개업무를 重點開發하고 政府電子計算所를 중심으로 行政機關間 情報共同活用體制 擴充을 위한 行政綜合情報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그러나 住民登錄管理業務電算化 등 1차 行政電算網 구축에 있어서 個人身上資料의 濫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었고, 방대한 行政機關內 情報蓄積에 따른 정부의 情報獨占 및 利用階層制限에 의한 情報隔差發生에 대한 관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이 兩者의 문제는 情報의 公開 또는 非公開 기준과 절차,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의 救濟節次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總務處는 個人情報保護에 대하여는 1991년 5월 總理訓令으로 電算處理되는 個人情報의 保護를 위한 管理指針을 시행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立法을 추진중이다.

또한, 行政情報公開에 대해서도 制度化를 추진중에 있으며 兩者에 대한 法的 對應方案은 별도의 節로 구분하여 상술한다. 이외에 검토가 필요한 問題로 天災地變이나 인위적인 加害로 全國的인 電算網이 정지되어 생길지 모르는 被害에 대한 對備策과 컴퓨터 犯罪行爲에 대한 規制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이미 行政電算網 安全管理指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다양한 利用形態 및 機器構成과 技術發展動向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法制化보다는 指針에 따른 各機關의 自律的 措置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컴퓨터犯罪의 경우 刑事政策的 次元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생략하고 個人情報保護 및 行政情報公開을 위한 法的對應方案을 節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第 2 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法的 對應方案

I. 法制定의 必要性

오늘날 격변하는 國內外 行政環境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화되는 行政需要를 충족시키는 한편, 21세기의 情報化社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行政의 역할은 보다 專門化·機械化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處理되는 行政의 領域이 확대되고 방대한 國民個個人的 身上資料가 行政機關에 축적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行政現實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行政機關에서 處理하고 있는 個人情報의 管理에 대한 統一的인 基準과, 蒐集된 情報를 行政行爲의 基礎資料로 사용하기 위한 적당한 節次를 마련하고, 個人情報의 蒐集 및 利用過程에서 일반국민에게 行政에 대한 統制權을 부여할 수 있는 制度를 갖추므로써, 보다 정확한 個人情報를 확보하여 政策의 樹立 및 執行上의 施行錯誤를 최소화 하는 한편, 不要不給한 個人情報의 蒐集을 제한하여 個人 私生活에 대한 간여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國民의 權益을 보호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先進國들은 個人情報保護法을 制定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制定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國際機構에서의 관심도 높아 1980년에는 經濟協力機構(OECD)와 歐洲協議會 등에서 個人情報의 자유로운 國際的 流通을 확보하고 個人的 私生活을 보호하기 위한 國際的 規制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指針도 制定·施行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現行 憲法에서 個人的 私生活에 대한 秘密과 自由를 보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行政實體法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에 비하면, 個人的 私生活을 보호하기 위한 事前的 行政節次에 관한 法的規制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個人 私生活 保護를 위한 個人情報의 蒐集·利用에 관한 공통된 基準을 정하는 法律이 없고, 단지 일부의 個別法令에서 秘密維持의 義務 등 단편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違反者에 대한 處罰을 위주로 하는 事

後規制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行政機關의 電算化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國民私生活을 보호하기 위한 關聯法令의 制定은 다가오는 2000 년대의 情報化社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時代的인 要請이라 하겠다.

II. 法制定의 基本方向

個人情報保護法(案)을 성안함에 있어서 總務處가 구상한 法律制定의 基本方向은, 우리의 法律文化 및 法律體系에 맞으며, 우리의 行政與件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美國, 스웨덴 등 先進國에서 발전된 個人情報保護法을 基準으로 삼되, 우리의 行政現實과 社會·文化 등 行政環境이 유사한 日本의 制度을 研究·檢討하였으며, 오늘날 우리 行政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따르는 各級行政機關의 各양각색의 個人情報를 획일적인 方式과 節次에 적용시키는 施行錯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檢討을 하였다.

또한 국민 個個人的 權益保護와 적정하고 원활한 公共目的 遂行을 조화 시킴으로써, 지나치게 國民의 權利·利益의 보호를 강조함에 따르는 公共業務遂行의 차질 또는 비능률을 막고 公益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行政目的만을 내세워 국민 權益保護에 소홀함도 없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制度의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政治·經濟·社會的인 與件등을 고려하여 現行法體系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改善되도록 신중을 기하였다.

III. 法案의 主要內容

이 法案은 총5장 2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나누어 보면, 제1장 總則, 제2장 個人情報의 蒐集 및 處理, 제3장 個人情報의 閱覽·訂正, 제4장 補則, 제5장 罰則 그리고 附則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제1장 總則에서는 用語의 定義와 本法의 適用範圍 등 統一的 適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公共機關등에서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處理되는 個人에 관한 일체의 情報를 그 適用對象으로 하고, 對象機關은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 전 行政機關과 政府投資機關등 公共機關을 대상으로 하되, 民間機關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法律과의 關係를 정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本法에 따르도록 하였다.

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本法은 行政機關을 중심으로 한 公共機關을 그 직접적용의 對象으로 하고 있어,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法律 명칭을 「公共機關의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처리되는 個人情報의 保護에 관한 法律(案)」으로 정하였으나, 편의상 個人情報保護法(案)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장 個人情報의 蒐集 및 處理에서는 公共機關은 法令 또는 定款에서 정하는 公共目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로 한정하여 個人정보를 管理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個人정보를 蒐集할 수 없도록 하고, 蒐集方法에 있어서도 情報當事者로부터 직접 蒐集함을 원칙으로 하여 個人정보의 蒐集·利用에 대한 국민의 豫測可能性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各級 行政機關 등 公共機關이 個人정보를 蒐集·管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요를 官報에 게재하여 일반에 公告하도록 함으로써, 公共機關에서 처리하는 個人정보의 範圍와 處理事實을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制度化 하였다.

個人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法令에서 정하는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利用 또는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個人私生活 침해의 우려가 적은 學術研究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個人的 權益保護와 公益目的의 달성에 조화를 도모하였다.

제3장 個人정보의 閱覽·訂正 등에서는 情報當事者의 權利를 규정하고 있으며, 外國 立法例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산으로 處理되고 있는 본인의 個人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入力·處理되고 있는 경우 訂正을 요구할 수 있는 閱覽·訂正請求權과, 그외에 請求結果 조치에 대한 불복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등을 인정하여 사후에도 個人的 權益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權利行使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措置期間, 代理請求, 手數料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4장 補則에서는 해당기관의 個人정보保護에 대한 자율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總務處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資料提出을 요구하거나 實態調査를 실시하고, 적절한 助言과 勸告를 할 수 있도록 하여 個

人情報保護制度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個人情報保護에 관련된 調查·研究, 公共機關의 의견조정 및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個人情報保護審議委員會를 設置·運營하도록 하여 制度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제5장 罰則에서는 個人情報를 不法的으로 蒐集, 閱覽 또는 流出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여, 個人情報保護制度의 實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個人情報保護法(案)의 제정필요성과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그동안 總務處에서 1989년말부터 법률시안을 작성하여 關聯部處와 여러차례의 협의를 하여 왔으며, 또한 학계·관련부처인사 간담회(2회)와 公開討論會 등을 통한 국민 各계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3차에 걸쳐 시안을 조정하여 왔다.

향후 立法 推進計劃은 立法豫告등의 節次와 법률안축조심의전문가 협의회의 조문별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法律案을 確定, 연말까지는 立法을 추진할 예정이다.

第 3 節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法的 對應方案

I. 一般的 考察

1. 行政情報公開制度의 意義

行政情報公開制度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政府가 보유하고 있는 各種 情報를 신청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閱覽·複寫하도록 하거나, 行政機關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情報를 公布 또는 公告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制度를 말한다.

위와 같이 情報公開에 관한 두 가지 形態는 政府가 保有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자는 公開對象정보를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수하는 것이고 후자는 政府의 意思·判斷 또는 法律規定 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택된 情報를 국민은 수동적으로 받아

들인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法的 性格과 質的인 面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情報公開制度를 논할 때에는 전자 즉 請求에 의한 情報의 公開制度가 그 초점을 이루게 된다.

2. 行政情報公開에 대한 社會的 要請

오늘날 첨단산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가히 情報通信의 革命이라 일컬을 만큼 情報의 大量蓄積과 신속한 流通·處理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高度情報化社會에서는 無形의 情報가 중요한 資產의 價値를 내재하고 있어, 필요한 情報를 적시에 충분히 소유하는 者와 그렇지 못한 者와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필요로 하는 情報가 政府에만 한정되어 있을 때 行政情報에의 접근가능성과 公開請求權의 허용은 基本權으로서의 알權利(The right to know)의 보장을 통한 국민의 行政過程에의 參與 및 國政監視·批判機能의 제고라고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民主化·自律化·開放化로 특정지워지는 現代情報社會의 추세에 부응하여, 政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行政情報의 迅速·正確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行政情報 接近欲求를 충족하는 한편, 情報의 資產的 效用價値와 活用效果를 증대하고, 行政의 非公開로 인한 情報흐름의 歪曲 또는 獨占을 시정하는 동시에 정책형성에의 참여촉진 및 집행결과에 대한 民主的 統制基盤을 조성하기 위한 公開行政體制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II. 情報公開制度의 現實

1. 立法實態

우리 憲法은 西獨基本法과는 달리 政府保有情報에 대한 국민의 알權利를 憲法으로 명문화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西獨基本法은 제5조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情報를 얻을 權利를 갖는다.”라고 하여 국민의 알權利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憲法上으로도 비록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별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국민의 알權利가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바, 그 根據로써 國民主權原理(제1조), 人間의 尊嚴과 幸福追求權(제10조), 表現의 自由(제21조), 學問의 自由(제22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제34조)등을 들고 있다. 한편 實定法律에서 구체적으로 情報公開制度를 인정한 사례로서 과거 言論基本法이 있었으나, 이는 국민의 알權利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言論機關에 한정하여 情報請求權을 인정한 것이고 더우기 이 法의 代替法인 「定期刊行物の 登錄에 관한法律(법률 제3979호, 1987년 11월 28일 制定)」에는 이에 관한 規定이 없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등이 制定되어 있으나, 이들 法은 情報公開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法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情報公開에 관한 一般法은 없는 실정이며, 사안에 따라 일부 個別法(都市計劃法 제10조의2등)에서 對象情報, 公開請求權者등을 한정하여 閱覽·公告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政府公文書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년 6월 19일 制定)」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성격과 내용에 관해서는 檢討의 여지가 있다.

2. 制度運營實態

현재 政府에서 行政情報를 제도적으로 公開하는 형태는 신청에 의한 公開나 閱覽외에 公表, 公告, 告示 등의 형태가 있고, 구체적으로 政府公文書 또는 政府記錄物自體를 閱覽·複寫하게 하거나 官報·公報 또는 政府刊行物 등을 통하여 公開하고 있다. 그 運營實態를 보면 국민이 해당기관에 직접신청을 하여 公開하고 있는 公文書의 경우외에, 官報의 경우 정부시책이나 각종 사업계획 등을 公告·告示하거나 法令의 公布 또는 일부 공문의 시행등을 하고 있는 바, 1991년도의 경우 13,000여건에 이르고 있다(入札公告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상회한다).

또한 政府記錄保存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記錄保存物の 閱覽·複寫現況을 보면 1990년도의 경우 8,6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기능의 多樣化·專門化에 따른 量的·質的 變化와 함께 情報化·産業化社會의 급격한 진전 및 국민의 알權利에 대한 意識變化 등에 따라 情報公

開 必要性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制度的 保障과 積極적 運營이 要請될 것이다.

3. 判例의 動向

情報公開請求權과 관련하여 서울高等法院에서 판시한 判例(서울고법 제3특별부 1988년 7월 7일 선고, 88 구 1344)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민은 國家機關에 대하여 機密에 관한 사항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國家機關이 保管하고 있는 文書의 閱覽 및 複寫를 請求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이 규정은 전술한 사무관리규정의 制定과 동시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동규정 제33조 제2항에서 規定되고 있다)도 “行政機關은 일반인이 당해 行政機關에서 保管 또는 保存하고 있는 文書を 閱覽 또는 複寫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秘密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文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하여, 行政機關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文書閱覽 및 複寫 申請에 대하여 機密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行政機關의 書類複寫 申請에 대한 拒否處分을 違法處分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判決은 그 논리로 들고 있는 정부공문서규정(사무관리규정)이 法律이 아닌 행정내부의 文書處理·保管에 관한 處理準則(이를 講學上 行政規則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정의 法的 性格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동규정을 근거로 하여 情報公開에 관한 구체적 法的 請求權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다.

Ⅲ. 行政情報의 公開를 위한 法的 對應方案

1. 法的 對應方案의 檢討必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民主權의 原理에 기초하여 국민의 알權利로서의 情報公開接近權 내지 請求權이 憲法의 개별조항 해석상 內在的 또는 默示的으로 憲法上的 권리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것이 實際的·具體的인 權利가 되기 위하여는

명확한 法律上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實定法上 알權利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法律根據가 없이 직접 憲法에 근거하여 情報公開을 請求할 수 있는, 환언하면 情報公開申請에 대한 公開拒否에 대하여 法院에 그 구제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權利는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情報公開에 관한 필요성과 요청이 사회발전에 따라 점증할수록 憲法上의 權利가 구체적인 權利로 制度化되기 위한 法的·制度的 裝置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行政情報公開에 관한 外國의 立法現況

情報公開에 관한 立法類型을 살펴보면, 구체적 사안별로 情報公開을 個別法에 규정하고 있는 形態와 公開에 관한 일반사항 즉 公開請求對象, 公開節次, 公開拒否에 대한 私法的 救濟節次 등을 一般法으로 규정하고 있는 形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유형중 어느 유형이 적합한 것이냐는 국가의 立法政策과 運營形態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자는 公開請求對象과 公開與否등에 대한 判斷이 한정되거나 行政機關의 裁量에 위임되는 등 情報公開의 적극적 보장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後者の 立法形態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情報公開法의 嚆矢는 1766년에 憲法典의 일부로서 制定된 스웨덴의 「出版自由法(Freedom of The Press Act)」이다. 그러나 당시 이 制度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法制度를 가능한 한 공통적으로 하고자 한 네델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제국에서 조차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制度가 일반적으로 도입하게 된것은 1960년대 이후 즉, 1966년에 制定된 美國의 「情報自由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었고,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유럽제국에서도 立法이 계속 이루어져 그 결과 덴마크(1971년), 노르웨이(1971년), 프랑스(1978년), 네델란드(1978년), 오스트레일리아(1981년), 캐나다(1982년), 뉴질랜드(1982년) 등이 情報公開法을 制定·시행하고 있다. 한편, 西獨에서는 情報公開에 관한 一般法은 없으나 「行政節次法」, 「西獨行政裁判所法」, 「州出版法」등을 통하여 言論機關 및 利害關係人에게 일정한 範圍內에서 情報公開請求權을 인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公的記錄에 대한 接近의 權利는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國家機密漏泄과 관련하여 1911년 「公共機密法(The Official Secrets Act)」이 制定되어 있고, 아울러 政府記錄은 30년이 지나면 公開하도록 하고 있다(The Public Records Act).

3. 情報公開法 制定을 위한 推進方向

情報公開에 대한 外國입법추세와 더불어 성숙된 民主化 社會로의 발전을 위한 制度的 裝置의 하나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情報公開法 制定에 대한 社會的 要請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總務處에서는 情報化社會의 진전에 따른 行政情報에 대한 一般국민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行政情報公開에 관한 法的 對應方案의 하나로 情報公開에 관한 일반법의 制定問題를 검토중에 있는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公開對象情報의 範圍이다. 行政機關이 公務上 作成·取得한 公文書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記錄을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公開基準과 관련하여 非公開 對象情報의 範圍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外國 立法例로 비추어 國家安保와 外交상의 秘密, 個人의 私生活에 관련된 情報, 企業의 營業秘密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情報公開請求 主體의 範圍問題이다. 自國民에 한정할 것인가, 外國人에게도 인정할 것인가, 自國民에 한정할 경우에도 利害關係人에게만 허용할 것인가가 檢討對象이다. 이와 아울러 公開義務者를 行政機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國家機關, 나아가 公共團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公開拒否에 대한 救濟問題이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情報公開 審査委員會를 신설하여 활용하는 방안, 法院에 의한 司法救濟制度를 활용하는 방안, 行政內部의 不服審判制度를 활용하는 방안등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각급 行政機關과 學界·法曹界등 各계의 意見を 널리 수렴하고 外國의 立法例도 참고하여 심도있게 檢討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制度가 효율적으로 定着·運營되기 위하여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立法的 對應

는 行政機關 내부적으로 公開을 위한 事前準備段階로서 公開對象情報의 database 체제가 구축되고, 정보공개창구의 整備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政府에서 情報公開에 관한 法的對應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檢討한 여러가지 검토사항과 함께 行政情報 公開制度和 國家機密 保護制度와의 관계, 行政節次法 및 個人情報保護法등 關聯法令과의 관계, 行政情報公開法和 既存 情報公開關聯法令과의 관계도 상호유기적인 關係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行政環境과 法律文化에 적합한 法制度로 立法이 추진되어 國民의 基本權으로서의 알權利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行政의 민주성과 实效性이 調和·運營될 수 있도록 研究가 되어야 할 것이다.

研究報告 92-1

情報化社會의 展開와 立法的 對應

1992年 2月 20日 印刷

1992年 2月 29日 發行

發行人 李世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韓國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